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704-01

6차 산업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 간 연계방안 연구



(사)한국농업경제학회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6차 산업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 간 연계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간: 2014년 9월 ~ 2014년 12월

연구책임자: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부교수

연구참여자: 박동진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김지현 목원대학교 향토자원개발센터 선임연구원

이도경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연구조교

명수환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연구조교

2014년 12월

한국농업경제학회장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2
3. 연구의 내용	4
4. 연구 범위와 분석 방법	5

제2장 농업 6차 산업화의 개념 및 현황

1. 개념	7
2. 역할 및 필요성	10
3. 6차 산업화 현황	16

제3장 6차 산업 관련정책 지원사업 분석

1. 정책 개황	20
2. 기관별 사업 현황	25
3. 항목별 사업 분석	108
4. 추진실태 분석	132

제4장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분석

1. 사업개요	159
2. 추진실태 분석	175
3. 개선 사항	183
4. 우수 사례	189

제5장 6차 산업 관련 정책의 발전 방안

1. 기본 방향	194
2. 부문별 세부 전략	200
부록 1. 설문 조사표(6차 산업)	229
부록 2. 설문 조사표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239
부록 3. 사업단 중심 6차 산업화 장기사업의 구조 조정	242
부록 4. 공동가공 지원센터의 모델과 기능	247
부록 5. 6차 산업형 농공단지 리모델링	250
부록 6. 6차 산업형 생산자 직판장	252
참고 문헌	254

표 차 례

제2장

표 2-1. 역대 정부의 농정 패러다임	11
표 2-2.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13
표 2-3. 우리나라의 일자리 · 종사자 추이	14
표 2-4. 6차 산업화의 유형 및 대표 사례	16
표 2-5. 농가의 6차 산업화 참여 현황	17
표 2-6. 6차 산업화 경영체의 유형별 현황	19

제3장

표 3-1.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사업	26
표 3-2. 식품 · 외식종합자금사업의 세부 사업별 목적	28
표 3-3. 식품 · 외식종합자금사업의 세부 사업별 내용	29
표 3-4. 식품 · 외식종합자금사업의 세부 사업별 지원 기준	30
표 3-5. 식품 · 외식종합자금사업의 세부 사업별 재정 투입 계획	31
표 3-6. 식품 · 외식종합자금사업의 세부 사업별 성과 지표	33
표 3-7.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세부 사업별 내용	35
표 3-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36
표 3-9.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37
표 3-1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세부 사업별 성과 지표	38
표 3-11.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40
표 3-12.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성과 지표	41
표 3-13.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	42
표 3-14.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성과 지표	43

표 3-15.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의 세부 사업별 재정 투입 계획	44
표 3-16. 일반농산촌개발사업의 성과 지표	45
표 3-17.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의 성과 지표	47
표 3-18.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별 목적	49
표 3-19.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별 내용	50
표 3-20.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별 사업 대상자	51
표 3-2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별 사업 지원	52
표 3-22.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별 성과 관리	53
표 3-23.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의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55
표 3-24.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의 성과 지표	56
표 3-25.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내용	58
표 3-26.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59
표 3-27.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예산 규모	60
표 3-28.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성과 지표	63
표 3-29. 말산업육성사업의 세부 사업별 내용	64
표 3-30. 말산업육성사업의 세부 사업별 지원 기준	65
표 3-31. 말산업육성사업의 세부 사업별 재정 투입 계획	66
표 3-32. 말산업육성사업의 사업별 총사업비 및 지원 한도액	67
표 3-33. 말산업육성사업의 성과 지표	68
표 3-34.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의 성과 지표	71
표 3-35.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의 성과 지표	73
표 3-36. 농촌진흥청의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사업	76
표 3-37.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	77
표 3-38.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의 성과 지표	78
표 3-39.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	79
표 3-40.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의 성과 지표	80
표 3-41. 농촌교육농장의 재정 투입 계획	81

표 3-42.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	83
표 3-43.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의 성과 지표	84
표 3-44.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 지역별 재정 투입 계획	85
표 3-45.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 성과 지표	87
표 3-46.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	88
표 3-47. 산림청의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사업	90
표 3-48.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사업별 성과 지표	91
표 3-49.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	93
표 3-50.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사업별 성과 지표	94
표 3-51. 지자체의 6차 산업화 정책 사업 현황	95
표 3-52.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	97
표 3-53.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	98
표 3-54.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의 성과 지표	99
표 3-55.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	100
표 3-56.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107
표 3-57. 사업별 유사·중복성 분석 기준	109
표 3-58. 사업 유형별 분석 결과	111
표 3-59. 사업 대상별 분석 결과	112
표 3-60. 사업 지원 대상별 분석 결과	114
표 3-61. 사업 지원 규모별 분석 결과	117
표 3-62. 사업 지원 국고 보조율별 분석 결과	119
표 3-63. 사업 지원 체계별 분석 결과	121
표 3-64. 사업 성과 지표 내용별 분석 결과	124
표 3-65. 사업 사후 관리 내용별 분석 결과	126
표 3-66. AHP 분석 문항별 대상자 및 유효자 현황	138
표 3-67. 사업추진 대상의 우선순위	138
표 3-68. 사업 시행 주체의 적절성	145
표 3-69. 정책 추진 방향	147

표 3-70. 사업의 구조 조정 방향	148
표 3-71.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의 응답자 특성	149
표 3-72.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설문조사 결과 비교	156

제4장

표 4-1. 2013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유형 및 내용	163
표 4-2. 2014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유형 및 내용	164
표 4-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172
표 4-4.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분석: 사업 유형 및 지원대상	177
표 4-5.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분석: 사업기간 및 지원방식	179
표 4-6.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분석: 지원규모	180
표 4-7.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분석: 예산지원 방식	182
표 4-8. 전북 농촌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의 마을 지원 사례	191

제5장

표 5-1. 사업단 단위 운영 예	203
--------------------------	-----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 추진 방향	4
------------------------	---

제2장

그림 2-1. 농업의 6차 산업화 개념	8
그림 2-2. 6차 산업화의 성립 기본 조건	9
그림 2-3. 농업의 인구 구조 변화 추이	12
그림 2-4. 쌀과 쌀 가공식품의 가격 및 부가가치 사례	15
그림 2-5. 6차 산업화 경영체의 지역별 분포	18

제3장

그림 3-1.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정책 방향	21
그림 3-2. 농촌산업육성 및 지원법의 주요내용	22
그림 3-3. 6차 산업의 발전 방향과 중점 정책 과제	24
그림 3-4. AHP 이론의 개요	135
그림 3-5. 세부 사업별 필요성: 2차 산업	140
그림 3-6. 세부 사업별 필요성: 3차 산업	142
그림 3-7. 세부 사업별 필요성: 복합 산업	144
그림 3-8. 사업 육성 대상	150
그림 3-9. 육성 주체	151
그림 3-10. 예산 우선 투입 지역	152
그림 3-11. 주요 자원	153
그림 3-12. 예산 투입 단계	154

제4장

그림 4-1. 충남의 두레기업 육성 사업 개요	190
그림 4-2. 모시떡과 제조업체	192
그림 4-3. 서천군의 모시식품산업화 사업의 추진 단계	193

제5장

그림 5-1. 6차 산업화 정책사업간 비교	196
그림 5-2. 6차 산업화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	200
그림 5-3.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기존과 개선안 비교도	201
그림 5-4.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꼬리표 문제	202
그림 5-5. 지자체 허브를 중심으로 한 연계 시스템	205
그림 5-6. 플랫폼 중심 사업 운영 개념도	206
그림 5-7. 규슈 히타시 코노하나가르텐의 활성화단계	208
그림 5-8. 로컬푸드 직판장 중심 사업 운영 개념도	208
그림 5-9. 대학 농촌협력단의 구조	210
그림 5-10. 6차산업에서의 6차산업 코디네이터 역할	211
그림 5-11. 충남대학교 특성화 사업단의 학부생 양성 계획	212
그림 5-12. 재무제표 예	215
그림 5-13. 산업연관분석의 개념	217
그림 5-14. 6차 산업화 정책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220
그림 5-15. 오오야마유메공방의 사업효과	228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6차 산업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정 목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1차 생산업인 농림축산업에 2차 식품가공산업 등을 결합시켜 농가 수취소득 증대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¹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산림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다양한 관련 정책 사업들을 시행 중에 있음.
- 그러나 기관별로 6차 산업 정책들을 추진하다보니,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조율되지 못하고 사업 성격이 중복되는 등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1 6차 산업화의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일본(今村奈良臣 동경대 명예교수)에서 주창되었는데, 농업이 1차 산업(농축산물의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2차 산업(농축산물의 가공 및 식품제조업) 및 3차 산업(도·소매업, 음식업, 정보서비스업, 관광 등)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농기업의 다각화와 농업의 종합산업화(1차 × 2차 × 3차 = 6차)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취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의미함.

- 또한, 6차 산업화의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부서에서도 부서 간 칸막이 등으로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6차산업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별로 통합적인 장기계획이 부재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제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6차 산업 관련정책 지원 사업을 종합하고 분석한 다음, 전체적인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6차 산업 관련 정책지원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다음, 우리나라 6차 산업화의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함.

2. 선행 연구 검토

- 우리나라의 6차 산업 관련 연구는 일본에서 6차 산업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기 전에 자체적인 농업과 2·3차 산업과의 연계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음. 이동필 외(2001)는 산지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국산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차별화 전략을 제시하였고, 최지현 외(2007)는 농업과 식품산업(과즙음료산업, 한식프랜차이즈외식산업, 두부산업, 돈육산업)간의 연계 실태를 분석한 다음, 세부적인 연계 강화 방안들을 제시하였음.

- 다음으로 일본의 6차 산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원진과 전찬익(2009)은 일본의 농상공 연대를 개관하고 농협이 담당하는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음. 김용렬 외(2011), 김용렬(2011), 유학열(2011)은 일본의 농림수산업과 경제산업성이 2008년부터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상·공 연대와 2010년 12월에 관련법이 통과된 6차 산업화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음.
- 이상의 연구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6차 산업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정명운(2009)은 농어업과 2·3차 산업의 주체인 중소기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법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일본의 연계강화 사례를 주요 예시로 제시함. 장현동 외(2011)는 농업과 2·3차 산업이 융합된 농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과 2·3차 산업융합 경영모델을 제시하였음.² 가장 최근의 연구인 김성훈 외(2013)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6차 산업화 정책을 분석하고, 충청남도의 6차 산업화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본 연구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6차 산업화에 대한 개념 분석과 전반적인 관련 정책 수립·적용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6차 산업 정책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2 I 유형(1차 농업 + 2차 식품가공산업), II 유형(1차 농업 + 3차 관련 서비스산업), III 유형(1차 농업 + 2차 식품가공산업 + 3차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구분함.

3. 연구의 내용

- 본 연구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짐. 우선 우리나라 6차 산업 관련 정책 지원 사업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의 추진 실태를 각각 분석하고, 정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제기함.
-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6차 산업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세부정책 개선방안 등을 제시함.

그림 1-1. 연구 추진 방향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먼저 제 2장에서는 6차 산업화의 개념과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 구체적으로는 농업에 적용되고 있는 6차 산업화의 개념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6차 산업화 현황에 대해 유형별로 제시함.

- 제 3장에서는 6차 산업 관련 정책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함. 구체적으로 그 동안 정부(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가 시행 중인 6차 산업 관련 정책 지원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 제 4장에서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함.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시행 중인 각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 제 5장에서는 앞서 도출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6차 산업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세부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4. 연구 범위와 분석 방법

4.1. 연구 범위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6차 산업 관련 정책 지원 사업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함.

4.2. 분석 방법

- 문헌 및 인터넷 조사
 -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 및 기타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FGI: Focus group interview) 개최
 - 6차산업 관련 정책지원 사업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개선 방안 도출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

- 출장조사 및 설문조사
 -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방문 및 심층면담 조사(In-depth interview) 실시
 - 6차 산업화 정책 관련 전문가(정책 시행자, 연구자, 정책 대상자 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진행

- 이론적 방법론
 - 우리나라 6차 산업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우선순위 도출 등을 위한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분석을 적용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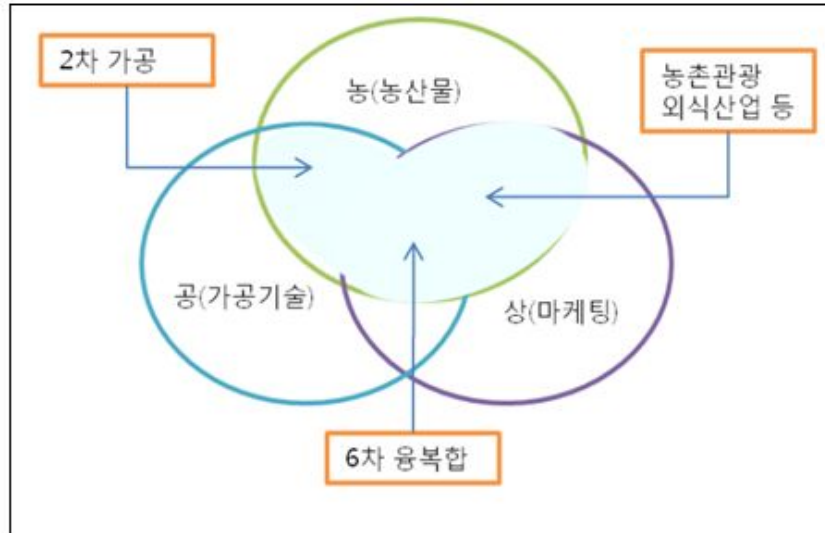
농업 6차 산업화의 개념 및 현황

1. 개념

- 6차 산업화는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 주창된 개념으로 1차 산업인 농림 축수산물의 생산업과 2차 가공산업 또는 3차 서비스업을 융합하여 농업의 다각화(diversification)와 종합 산업화(1차 × 2차 × 3차 = 6차)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함.³
- 6차 산업화는 농업이 1차 산업(농축산물의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2차 산업(농축산물의 가공, 식품제조업) 및 3차 산업(소·도매업, 요식업, 정보 서비스업, 관광 등)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취업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을 내포

3 今村奈良臣 동경대 명예교수.

그림 2-1. 농업의 6차 산업화 개념



자료: 김용렬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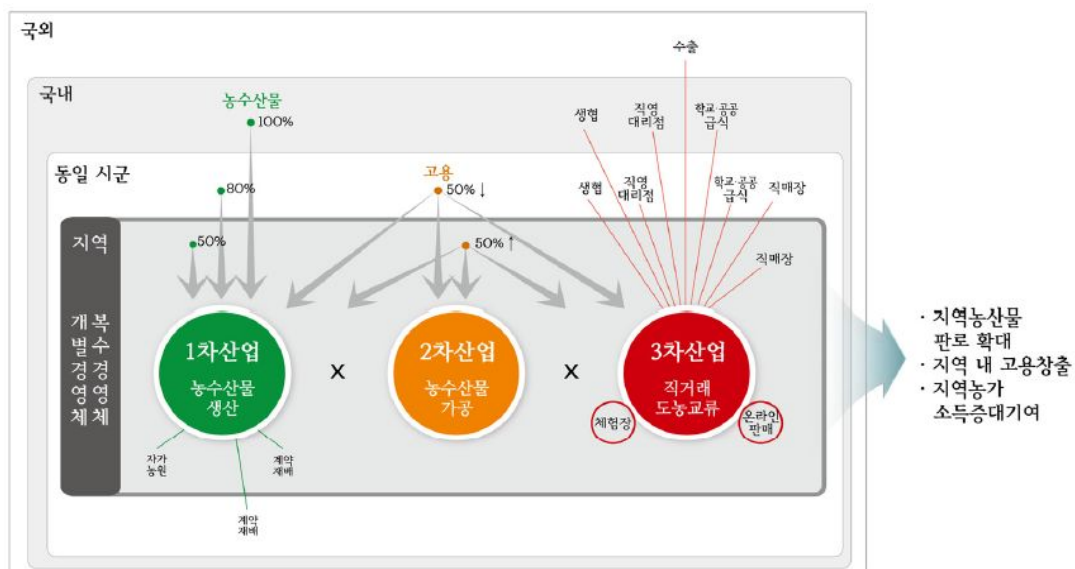
- 한편, 농업의 6차 산업화 개념으로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에 부존하는 다양한 자원(농림축수산물, 자연 자원, 인재·역사·문화 등)을 활용하여, 생산에서 가공·판매·교류 등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생태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로 지칭하기도 함.⁴
- 일반적으로 6차산업화는 소규모의 분산된 농지에 기반한 농업경영이라는 농업 내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시장개방의 압박 속에서 영세 분산 소농 경영의 한계에 대응한 대안으로서 지역 단위에서의 농가 조직화를 통한 6차산업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음.
- 농업의 6차 산업화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유학열, 이영욱(2014)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 농업에 기반을 둘 것, 둘째, 6차 산업화로 창출되는 1·2차 산업의 일자리에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할 것, 셋째, 3차 산업

⁴ 김태곤 외(2013).

역시 지역 내 6차 산업 경영체가 주도할 것, 넷째, 6차 산업 경영체의 지속 가능한 자립 능력을 부여할 것 등이 포함됨.

- 6차 산업화가 지역 농업에 기반을 두기 위해서는 2차 가공 원료가 6차 산업 경영체가 위치한 지역(시·군) 내에서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가 생산이나 지역 내 농가와의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유도
- 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은 6차 산업화로 신규 창출되는 1차 및 2차 노동력의 50% 이상을 지역 주민이 고용되도록 전제
- 3차 산업인 유통, 홍보, 서비스 등의 산업도 6차 산업 경영체가 직접 관리·운영을 하여야하는데, 특히 유통은 직매장, 온라인 판매, 체험 등과 연계된 직거래를 원칙으로 진행
- 6차 경영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체 경영 역량 증진을 통한 수익구조 창출을 모색

그림 2-2. 6차 산업화의 성립 기본 조건



자료: 유학열, 이영옥 (2014).

- 이상의 논의들에 기초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첫째, 농업인 등 농촌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둘째, 지역에 부존하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셋째, 2차 내지는 3차 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와 농가 소득(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업·농촌으로 내부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6차 산업화와 유사한 개념인 농공상 연대 또는 상생협력과는 개념상의 차이를 제시⁵
 - 현장에서 농업의 6차 산업화 주체들이 1·2·3차 산업이 고르게 융복합된 사례는 아직 많지 않기에 정부는 최종 목표로 6차 산업화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

2. 역할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들을 보면,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경쟁력 농정, 친환경 농정, 소득 농정, 글로벌 농정 등을 제시하여 농업의 규모화 내지는 전문화를 통해 WTO나 FTA 등으로 야기되는 시장 개방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데에 초점을 두어왔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의 산업적 경쟁력은 향상되고 있으나,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응하기 어려운 영세농 및 고령농 등은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물론, 우리나라 농정의 또 다른 축인 농민 정책이나 농촌 정책을 통해 영세농이나 고령농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왔으나, 현실적인 한

⁵ 농공상 연대는 “농업과 공업·상업이 직접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을 창출하고, 각각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시너지를 높이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상생협력은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 활동”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차이를 보임.

계에 봉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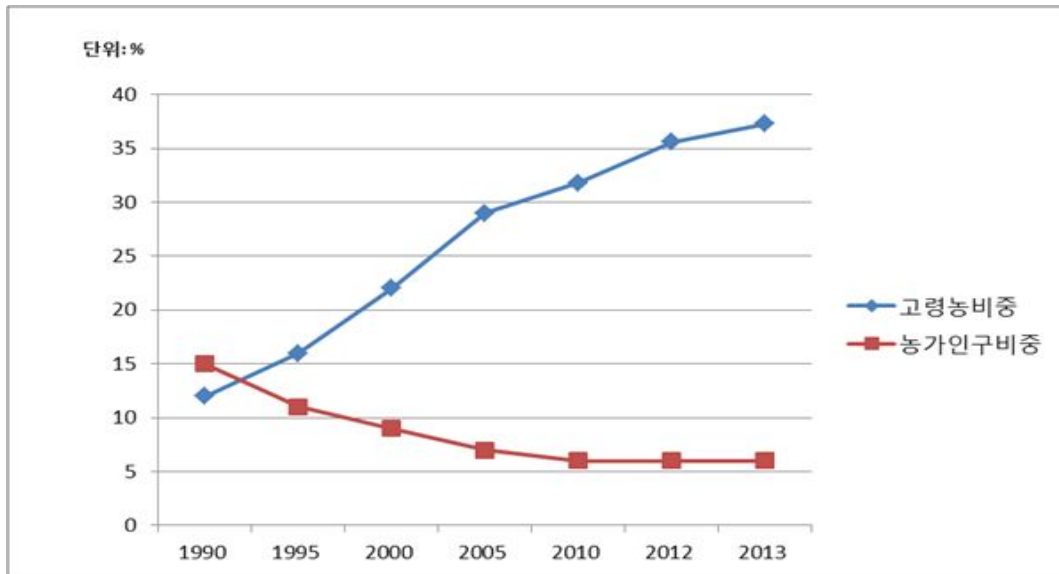
표 2-1. 역대 정부의 농정 패러다임

정부	주요 농정 패러다임
김영삼 정부 (경쟁력 농정)	- 전업농 육성을 통한 규모화 - 정책 사업 투명성 제고
김대중 정부 (친환경 농정)	- 친환경 농업 육성 - 고품질, 가족농 강화
노무현 정부 (소득 농정)	- 소득 보전 직불제 확충 - 마을 종합 개발 등 농촌 삶의 질 제고
이명박 정부 (글로벌 농정)	-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 연계 - 농식품 수출 및 한식 세계화 강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수정

- 농업의 6차 산업화는 타 산업에 비해 침체되고 있는 농업에 활력소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남아있던 영세농 및 고령농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는 정책임. 즉, 농업인 1차 산업을 2차 내지는 3차 산업과 연계하고, 그 지역의 자원(자연, 문화, 인적 자원 등)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농외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6차 산업화는 현 시점의 우리나라 농업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정책 중의 하나임.
- 특히 아래 그림과 같이 농가 인구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고령농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6차 산업화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

그림 2-3. 농업의 인구 구조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 먼저,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은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는 농업 여건을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임. 2013년 기준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에 불과한데, 이는 지속적인 농업 소득 증가율의 정체에 기인한 현상임. 농업 소득 증가율 정체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경지 규모가 0.5ha ~ 1ha인 중소농은 농가 소득으로 가계비지출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농업소득의 평균 증가율은 -0.52%에 불과
- 같은 기간 동안 도·농간 소득 격차(농가소득/도시가구 소득비)는 82.5%에서 68.4%로 악화
- 0.5ha ~ 1ha인 중소농은 전체 농가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규모의 농가들보다 농가 소득이 적은 상황

표 2-2.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단위: 천원

경지 규모	농가 소득
0.5 ha 미만	34,524
0.5 ha ~ 1 ha	32,220
1 ha ~ 1.5 ha	27,992
1.5 ha ~ 2 ha	34,830
2 ha ~ 3 ha	37,568
3 ha ~ 5 ha	36,987
5 ha 초과	41,62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 6차 산업화의 농가 소득 창출은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짐.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일자리는 도시에 비해 증가율이 저조한데, 특히 농업 관련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이에 따라,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특히, 농업의 6차 산업화의 3차 서비스 부문은 농업을 직접 하기에 힘이 부치는 고령·여성 농업인, 아직 농업 전문성이 떨어지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 가능
- 고령·여성 농업인과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6차 산업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⁶

⁶ 우리나라의 귀농·귀촌가구 수는 2001년 880호에서 2011년 10,503호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32,424호(56,267명)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2-3. 우리나라의 일자리 · 종사자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구분	도시	농촌
2000	일자리	11,346	4,666
	농업 종사자	282	2,126
	사업체 종사자	11,064	2,540
2005	일자리	12,667	4,602
	농업 종사자	303	1,819
	사업체 종사자	12,364	2,783
2010	일자리	14,676	4,817
	농업 종사자	299	1,541
	사업체 종사자	14,377	3,270
평균 일자리 증가율 (2000 ~ 2010)		2.60%	0.32%

자료: KREI

- 나아가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농업 생산자들의 소득을 높여 도·농간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 즉, 수확한 농산물을 시장에 파는 대신 직접 가공·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높은 농가 수익을 취득할 수 있게 됨.
- 부가가치 증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쌀 가공품을 들 수 있는데, 쌀을 가공한 식품들의 시장 가격이 쌀의 5 ~ 10배에 달하여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 가능

그림 2-4. 쌀과 쌀 가공식품의 가격 및 부가가치 사례



- 이러한 6차 산업화의 필요성에 따라 주변국들도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먼저 6차 산업화의 개념을 가장 먼저 논의한 일본의 경우, 6차 산업화 정책을 농공상 융합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규정하고, 2007년부터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과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이 공동 시책으로 공표하여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였음. 이어 2011년 3월에 6차 산업화법을 제정하고, 6차 산업 인증제도, 지산지소(地產地消: ちさんちしょう) 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국 또한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6차 산업화를 “농업의 산업화 경영”으로 규정하고 영세농가를 조직화하여 생산·가공·판매를 일체화하여 농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음.

3. 6차 산업화 현황

- 우리나라의 농업 6차 산업화는 중심사업의 유형에 따라 2차 산업(가공) 중심형과 3차 산업(외식, 유통, 관광 서비스) 중심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다시 참여 범위에 따라 개별 농가, 법인이나 경영체, 마을 공동체, 시군 및 광역 지자체로 세분할 수 있음.
- 부문별 6차 산업화 대표 사례는 다음 표와 같은데, 6차 산업화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2-4. 6차 산업화의 유형 및 대표 사례

구분	가 공	음 식	유통	관 광
개별 농가	·서산 참샘골호박농원 ·제주 청정원 ·양평 다물한과	·안동 화련 ·서산 소박한 밥상 ·공주 미마지	·봉화 파머스마켓 ·홍성 풀무우유&평촌 목장 ·남원 인터원 목장	·여주 은아목장 ·횡성 에텐양봉원 ·영동 사도미소
법인 등 단체	·평택 미듬영농조합 ·보령 돼지미블로즈 ·영주 미소머금고	·함양 상림영농조합 옥연가 ·당진 신평 양조장 ·새종 닭양박고을	·과주 장단콩연구회 ·인나네 텃밭 ·김포 엘리트농부	·예산 사과외인 ·제주 굴림성 ·원주 돼지문화원
마을 단위	·양양 송천떡마을 ·서천 달고개모시마을 ·횡성 금나루무지개마을	·남원 흥부밥상 ·삼례 비비정마을 ·진도 윤림예술촌	·상주 승곡마을꾸러미 ·안동 삼배마을유통 ·파인토피아 봉화꾸러미	·아산 외암민속마을 ·창원 감미로운마을 ·단양 한드미마을
시군 및 광역 단위	·김포 인삼쌀맥주 ·문경 오미자 ·고창 복분자	·제천 약채락 ·문경 산채비빔밥	·완주 로컬푸드조합 ·고창 황도배기유통 ·진안 로컬푸드사업단	·양평 농촌나드리 ·화천 산천어축제 ·고창 청보리밭축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우리나라 농업인의 6차 산업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으나,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전체 농가의 12% 정도가 농업 6차 산업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부문별로 보면, 농산물 가공의 비중이 0.7%인 반면 관련 서비스의 비중이 10.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6차 서비스 부문 중에서 농산물 직거래·직판장의 유통 부문이 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표 2-5. 농가의 6차 산업화 참여 현황

단위: 명, %

분야		농가수	비중
6차 산업화	농산물가공	8,564	0.7
	식당경영	9,043	0.8
	농촌관광	4,468	0.4
	농산물 직거래·직판장	89,843	7.6
	농기계 작업 대행	23,331	2.0
	소계	135,249	11.5
전체 농가		1,177,318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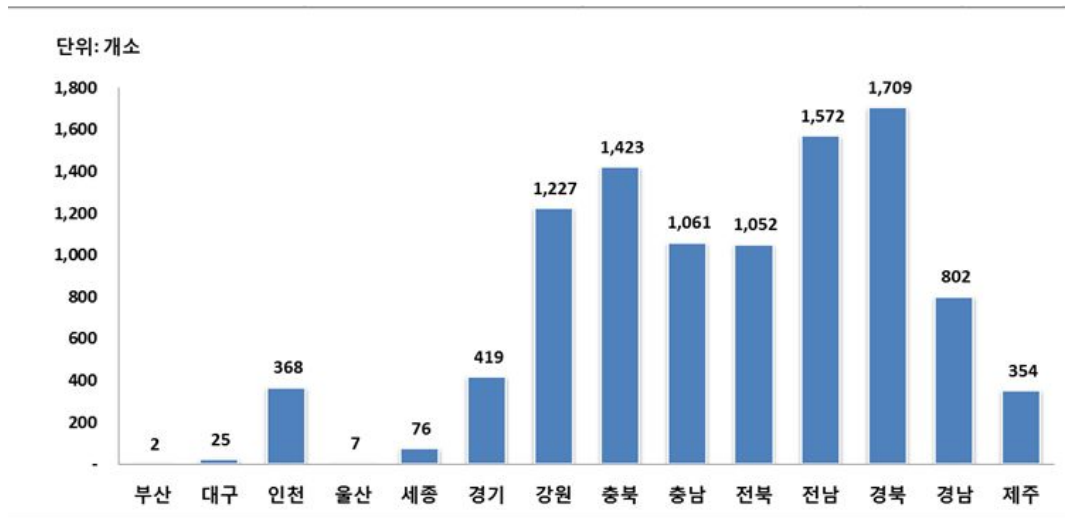
자료: 농촌진흥청 일부 수정

- 한편 최근 조사가 완료된 6차 산업화 경영체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10,097개의 농가 및 법인경영체가 6차산업화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709개소(16.9%)로 가장 많았고, 전남 1,572개소(15.6%), 충북 1,423개소(14.1%), 강원 1,227개소(12.2%), 충남 1,061개소(10.5%), 전북 1,052개소(10.4%) 순으로 조사됨.⁷

⁷ 6차 산업화 경영체 조사는 행정조사로 통계적 신뢰도가 낮아 향후 추가 실태 조사가 필요하나, 전반적인 형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함.

그림 2-5. 6차 산업화 경영체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개소



자료: 농촌진흥청

-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1×3차형이 5,447개소(53.9%)로 가장 많아 서비스업으로의 융·복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음을 보여줌. 이어 1×2차형이 1,019개소(10.1%)였고 1×2×3차형이 3,631개(36.1%)로 조사되었음.
 - 1×3차형에서는 관광이 전체의 33.4%로 가장 높았고, 유통(17.5%)과 외식(30.%)의 순
 - 1×2×3차형에서는 유통이 전체의 18.2%로 가장 높았고, 복합(16.1%), 관광(1.3%), 외식(0.4%)의 순

표 2-6. 6차 산업화 경영체의 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 %

유형		업체수	비중
1차×2차		1,019	10.1
1차×3차	유통 (직거래·직판)	1,777	17.5
	관광	3,369	33.4
	외식	301	3.0
	소계	5,447	53.9
1차×2차 ×3차	복합	1,630	16.1
	유통	1,839	18.2
	관광	132	1.3
	외식	30	0.4
	소계	3,631	36.0
계		10,097	100.0

자료: 농촌진흥청

제 3 장

6차 산업 관련정책 지원사업 분석

1. 정책 개황

1.1. 배경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7월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방안 공표를 통해 6차 산업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2017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6차 산업화 주체 1,000개 육성과 지역 일자리 매년 5천개 창출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음.
-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함께하는 우리 농촌운동”과 연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6차산업화 모델 확산, 농촌의 부족한 인적 역량을 귀농·귀촌, 재능기부 등 외부전문가로 보완, 마을의 발전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
- 주요 정책과제로는 지역·주민 주도의 발전단계별 6차 산업 육성체계 구

축,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6차산업화를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

- 2014년에는 6차 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선정하고, 6차 산업화 현장밀착 지원 강화, 귀농·귀촌 조기 정착 지원 강화, 농촌관광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그림 3-1.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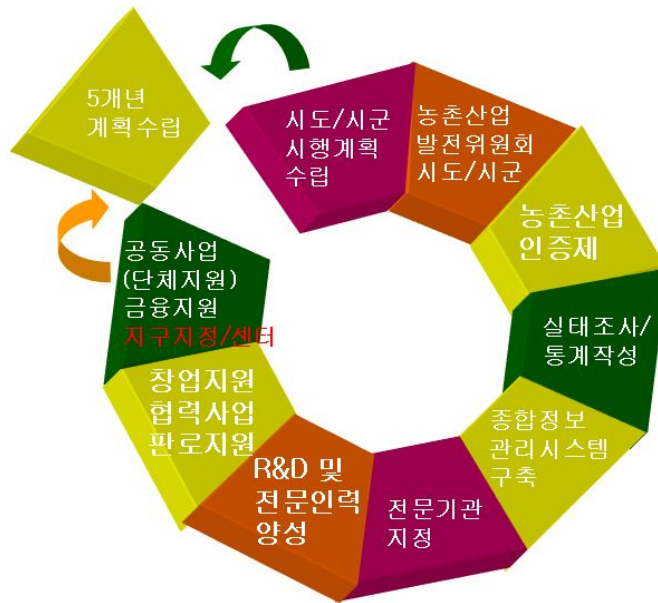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한편, 농업의 6차 산업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6차 산업육성 관련 지원법(농촌산업육성 및 지원법)이 제정되었음.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5개년 계획수립, 시·도/시·군 시행계획수립, 농촌산업발전위원회 구성(시·도/시·군), 농촌산업인증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전문기관 지정, R&D 및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협력사업, 판로지원, 공

동사업(협회 등 단체지원), 금융지원, 6차산업지구지정 및 센터설립지원 등이 포함됨.

그림 3-2. 농촌산업육성 및 지원법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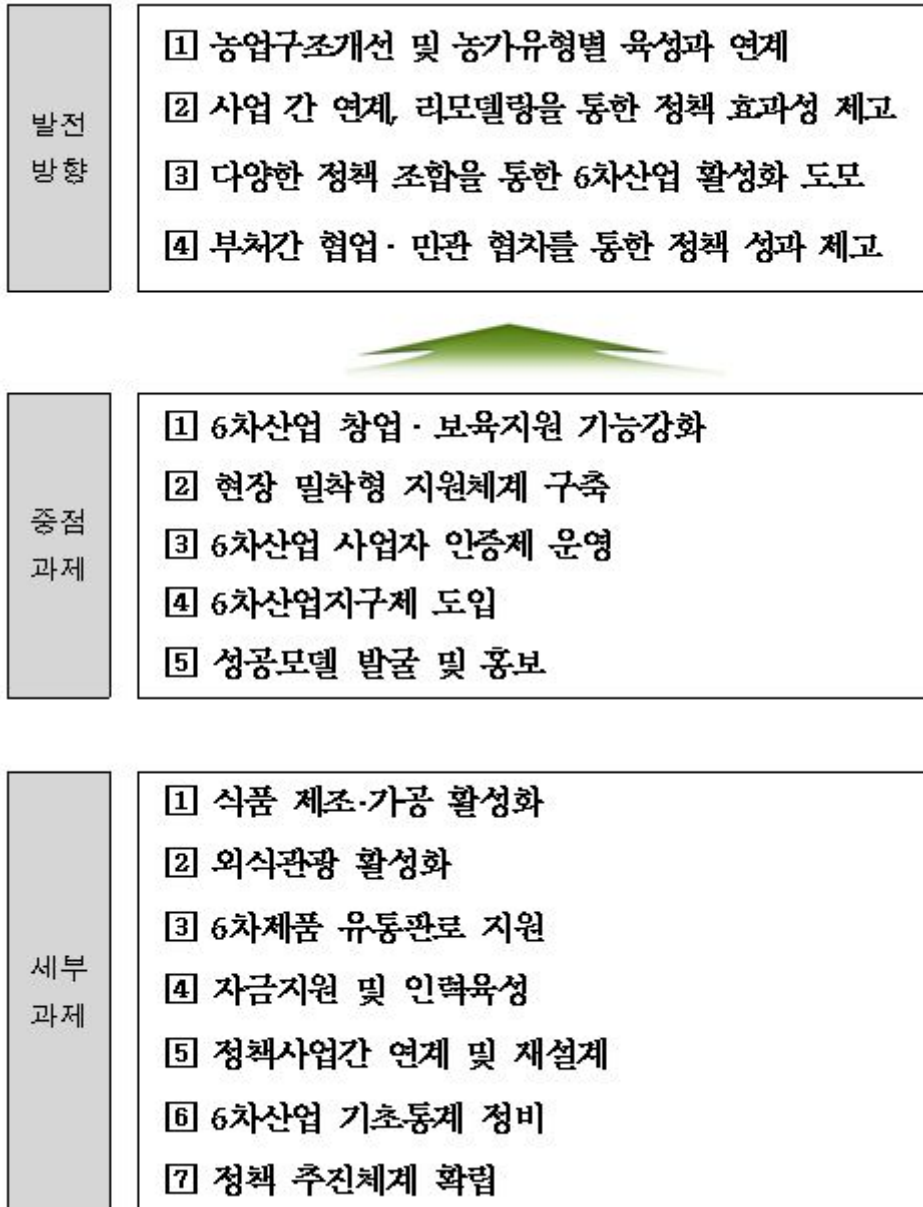
1.2. 발전 방향 및 추진 과제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6월 농업의 6차 산업화 달성을 위한 발전 방향을 선정하였는데, 농업구조개선 및 농가유형별 육성과 연계, 사업 간 연계·리모델링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한 6차 산업 활성화 도모, 부처 간 협업·민관 협치를 통한 정책성과 제고임.
- 농업구조개선 및 농가유형별 육성과 연계를 위해 중소농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의소득원 창출, 들녘별 경영체 육성을 추진⁸

⁸ 들녘별 경영체는 5 ha 규모로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생산·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절감된 자원은 6차산업화에 투입하여 추가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함.

- 사업 간 연계·리모델링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는 그동안 기관별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종합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 도모는 이중 산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제도개선에 초점
 - 부처 간 협업·민관 협치를 통한 정책성과 제고는 부처별 사업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 극복과 관 주도 사업 추진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
-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 산업 발전 방향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개 중점 정책 과제와 7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하여 부문별로 추진하고 있음.
- 5개 중점 정책 과제로는 6차산업 창업·보육지원 기능강화,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 구축,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운영, 6차산업지구제 도입, 성공 모델 발굴 및 홍보가 해당
 - 7개 세부 정책 과제에는 식품 제조·가공 활성화, 외식관광 활성화, 6차 제품 유통판로 지원, 자금지원 및 인력육성, 정책사업간 연계 및 재설계, 6차산업 기초통계 정비, 정책 추진체계 확립이 포함

그림 3-3. 6차 산업의 발전 방향과 중점 정책 과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기관별 사업 현황

2.1. 농림축산식품부

2.1.1. 개황

- 농림축산식품부는 양 청(농촌진흥청, 산림청)과 함께 농업 6차 산업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6차 산업화 추진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사업과 각 분야별 6차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들은 2014년 기준으로 총 14개 사업이 있는데, 2차 식품가공, 3차 서비스, 1·2·3차 산업 부문이 서로 융합된 복합 지원 사업을 유형별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 2차 식품가공 지원 사업으로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과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일반농산촌 개발사업이 해당
 - 3차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과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이 포함
 - 복합사업으로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말산업육성사업,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과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

는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이 시행 중

표 3-1.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사업

분류	사업명	세부 사업
제조·가공 (2차)	식품·외식 종합자금사업	- 농식품 시설현대화 -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육성 - 외식업체 육성 -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 - 향토산업 육성사업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일반농산촌개발사업	-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제조/가공)
음식·관광 ·유통 (3차)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사업	- 농촌관광휴양단지 - 관광농원 - 농촌민박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	
복합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체험·관광 지원(농촌테마공원조성) -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말산업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마시설(공공/민간) - 승용마 구입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제주마 혈통보존 - 전문인력양성기관 - 말산업 특구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주 1) 사업 분류는 사업의 주요 취지와 세부 사업이 주로 지원하는 분야를 기준으로 진행함.

2) 6차 산업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세부 사업은 제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수정

2.1.2. 사업별 현황

가.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은 세부 사업으로 농식품 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육성,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을 포함함.

(ㄱ) 사업 목적 및 대상

-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2.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의 세부 사업별 목적

세부 사업	사업 목적
농식품 시설현대화	- 식품제조·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외식업체 육성	- 외식업체 지원을 통해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육성	- 생산자와 중소기업이 융합한 기업 육성으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 도모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 국내산 농산물 유통 및 가공원료 매입지원을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 가격안정화, 농가 판로 확보 및 식품산업과의 연계강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 사업 대상은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식품 시설현대화(H/W+S/W), 외식업체 육성(H/W+S/W),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육성(H/W+S/W),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은 (S/W)사업에 해당됨.

표 3-3.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의 세부 사업별 내용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사업 대상
농식품 시설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식품·외식업체의 시설신축·증축· 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 - 운영자금: 가공용 국내 농산물 원료구입, 저 장 등 기업경영비용 등 지원 	(H/W+ S/W)
외식업체 육성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육성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금: 가공용 국내 농산물 원료구입, 저 장 등 기업경영비용 등 지원 	(S/W)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ㄴ)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공통적으로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가공업체, 외식업체, 지역농협, 농업법인 등이 해당됨.

(ㄷ) 지원 내용

- 지원 기준은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인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은 지원금액의 125%이상 국내농산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지원

표 3-4.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의 세부 사업별 지원 기준

세부 사업	지원 기준
농식품 시설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액: 50억 원(연차별 투자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원합계액) - 대출금리: 3~4%(일반업체는 4%,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는 3%) - 대출기한: 시설자금 10년 이내(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외식업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액: 운영자금 5억 원, 시설자금 1억 원 - 대출금리: 3~4%(일반업체는 4%,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는 3%) - 대출기한: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액: 40억 원 - 대출금리: 3% - 대출기한: 시설자금 10년 이내(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액: 30억 원 - 대출금리: 3~4%(일반업체는 4%,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는 3%) - 대출기한: 시설자금 10년 이내(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의 세부 사업별 재정 투입 계획(용자)은 2014년 기준 합계액이 147,500백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 투입 예산은 농식품 시설현대화가 36,300백만 원,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육성이 17,200백만 원, 외식업체 육성이 3,000백만 원,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이 91,000백만 원임.

표 3-5.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의 세부 사업별 재정 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70,000	160,000	167,500	147,500	147,500
용 자	70,000	160,000	147,500	147,500	147,500
농식품 시설현대화					
- 용 자	57,200	44,800	36,300	36,300	20,000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육성					
- 용 자	4,000	17,200	37,200	17,200	17,200
외식업체 육성					
- 용 자	8,800	7,000	3,000	3,000	3,000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 용 자		91,000	91,000	91,000	9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㉔) 지원 체계

-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지침을 작성하여 사업 주관기관에 시달하도록 명령하고,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 지원기관(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지원계획의 공고 및 홍보를 추진함.

- 사업 지원기관(농식품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사업 주관 기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세부지원계획을 검토 조정 및 시행 승인하여야 함.

(㉔)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지원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대출취급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반기(1회씩, 연간 2회)별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함.
 -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추진상황을 분기별 작성하여 매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 용자금 상환 시 까지를 사후관리기간으로 취급하여 사후관리 기간 내 사업목적에 벗어나는 용도로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승인이 필요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는데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사업시행기관에서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운영실태 및 관련 업체(종사자)들의 실제 만족도를 설문지 및 인터넷·우편 등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고 정책 및 시행지침에 반영
 - 매반기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 등은 사업 과정 및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며 익년도 시행지침에 반영

(h)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시설현대화 지원업체 수,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지원 업체 수, 외식업체 육성 지원업체 수, 가공원료매입 지원업체당 평균 매출액 증가율로 성과를 측정함. 사업의 2014년 목표치와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6.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의 세부 사업별 성과 지표

단위: 개소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시설현대화 지원업체수(개소수)			17	24	익년3월	'14년 지원업체 개 소수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지원 업체수(개소수)			3	17	익년3월	'14년 지원업체 개 소수
외식업체육성 지원업체수 (개소수)			6	3	익년3월	'14년 지원업체 개 소수
가공원료매입지원 업체당 평균 매출액 증가(%)	5%		-	-	익년3월	측정연도 매출액 천 년도 매출액×100-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세부 사업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포함함.

(ㄱ) 사업 목적 및 대상

- 2005년부터 실시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목적은 광역단위 (2개 이상 시군) 특화자원을 2,3차 산업과 연계하여 사업단을 구성하고, 전문경영인 지원, 제품개발지원, 공동마케팅, 제품가공시설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임.
 - 지역에 특화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농축산업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일환으로 식품사업단 육성

- 2007년부터 실시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목적은 시군단위 특화자원을 2,3차산업과 연계하여 사업단을 구성하고, 전문경영인 지원, 제품개발지원, 공동마케팅, 제품가공시설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임.

- 사업 대상은 세부 사업별로 보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모두 하드웨어(H/W) 지원과 소프트웨어(S/W) 지원을 아우르는 패키지형(package type: P) 사업에 해당됨.

표 3-7.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세부 사업별 내용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 전문경영인 지원 - 참여주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 네트워킹 구축 등 - 브랜드 개발 및 관리 - 유통전문조직 구축 - R&D 지원 - 홍보 및 공동마케팅 -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S/W -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 등 공동이용 시설(H/W) 	(P)
향토산업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 -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네트워크 구축 등 	(P)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ㄴ) 사업 대상자

- 사업의 대상자는 세부사업 별로 상이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 사업단
 -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ㄷ) 지원 내용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사업 재원은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국가 직접편성사업)인데, 사업단별 평균 30억 원(국고) 내외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은 국비 50%, 지방비 50%(단,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20% 부

과)임. 지원 기간은 5년으로 매년 평가를 통해 기본점수에 미달하거나 부당집행 적발 시 사업 중단 조치함.

- 국고지원 : 8억 원(1년차), 10억 원(2년차), 7억 원(3년차), 3억 원(4년차), 2억 원(5년차)

표 3-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269,030	55,510	36,440	29,680	18,528
보 조	135,800	27,910	18,380	15,000	9,408
지방비	133,230	27,600	18,060	14,680	9,120
자부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사업 재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발전계정인데, 지원기간은 4년, 지원한도액은 사업추진단별 30억 원 이내이며, 지원기준은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자부담 20%이상)임.
 - 연차별 국고지원액 : 3.5(1년차), 5.5(2년차), 4(3년차), 2(4년차)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의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예시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표 3-9.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233,796	81,800	87,600	79,300	527,200
국 고	116,898	40,900	43,800	39,650	263,600
지방비·자부담	116,898	40,900	43,800	39,650	263,6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㉔) 지원 체계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하는데 세부 사업별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전전년도 8~9월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전전년도 12월에 사업을 신청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심사·평가하여 전문평가단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로 통보함.

(㉕) 성과 관리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 사업단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

- 향토산업 육성사업: 시·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h) 성과 목표 및 지표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성과 지표는 세부 사업별로 상이한데,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단 영업이익율과 사업단 년차별 누계 자담확보 비율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참여업체 매출액 증가율과 일자리 증가율로 성과를 측정함.

표 3-1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세부 사업별 성과 지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사업단 영업이익율 (%)	3.75%	-	-	-	익년 2월	사업단 손익계산서 조사
	사업단 년차별 누계 자담확보 비율(%)	70%	-	-	-	익년 2월	사업단 자담집행 직접조사
향토산업육성사업	참여업체 매출액 증가율 (%)	13	△10.6	△41.5	-	2014.1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일자리 증가율 (%)	5	-	△37.2	-	2014.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다.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단일 사업임.

(㉑) 사업 목적 및 대상

-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목적은 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관광 분야의 6산업 창업 촉진, 사업 확장 및 시설·장비 개선지원 등을 통해 6차산업화 활성화 도모하는 것임.
- 주요 사업 대상은 시설자금(H/W), 리모델링 자금(H/W), 운영자금(S/W)으로 사업 전체로는 단순지원(H/W+S/W) 사업에 해당됨.

(㉒)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자가 또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 체험관광 관련된 6차산업 창업 또는 경영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 법인으로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군 농림축산심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여야 함.

(㉓) 지원 내용

- 사업 재원은 금융자금 100%(이차보전)로,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자금의 경우,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 적용되고, 운영자금의 경우 연리 3%, 2년 일시상환이 적용됨.
 - 시설자금 대출 한도액: 총사업비의 100%(개소 당 최대 30억 원)
 - 리모델링 자금 대출 한도액: 총사업비의 100%(개소 당 최대 30억 원)
 - 운영자금 대출 한도액: 소요자금의 100%(개소 당 최대 3억 원)
- 사업의 용자방식은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에 따른 사후대출이 원칙이나, 소요자금내역을 증빙하고 대출희망금액에 상응하는 채권보전이 가능한 경우 전체 대출금의 30% 범위 이내에서 선급이 가능함.
 - 다만,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물 증빙서류, 사업공정률을 증빙하는 주관기관에서 사업추진실적 확인

서를 발급받아서 제출

표 3-11.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	2013	2014	2015년 이후
합 계	-	-	-	30,000	30,000
용 자				30,000	30,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ㄷ) 지원 체계

-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특광역시도와 시군 등에서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6차산업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함.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인이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심사, 현장심사를 통해 지원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통보하여야함.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대출금 취급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함

(ㄹ)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지원대상자를 방문하여 용자금이 사업계획 이외의 타용도 전·유용 등이 없도록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대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용자금 지원연도부터 용자금 상환일 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용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용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h)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창업자금 지원실적(금액)인데, 자금 지원실적의 지원 건수를 통해 성과를 측정함. 사업의 2014년 성과 목표치는 아래와 같음.

표 3-12.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성과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 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창업자금 지원실적 (억원)	300	-	-	-	2014.12 월말	자금 지원 실적 (지원 건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라.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은 단일 사업임.

(1) 사업 목적 및 대상

-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은 농림축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식품경영체 육성 및 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임.
 - 정부(농식품모태펀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자펀드(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성장가능성 있는 다양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
- 사업 대상은 자펀드(농식품투자조합)를 결성하고, 성장가능성 있는 다양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패키지형(package type: P) 사업에 해당됨.

(ㄴ)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사업자, 농식품 관련사업자 등의 농식품경영체가 해당됨.

(ㄷ) 지원 내용

- 지원 기준은 출자(정부와 민간 매칭), 투자(100%)으로 지원형태는 출자(자펀드)와 투자(농식품경영체)의 형태임.
-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사업기간은 2010 ~ 2040년(30년 간)까지 이고, 13년까지 2,097억 원을 조성하였음.

표 3-13.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

단위: 억 원

구 분	'12 예산	'13 예산 (A)	'14 예산 (B)	증 감 (B-A)	%
농식품모태펀드출자사업	500	500	600	100	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ㄹ) 지원 체계

-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정부재정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조성하면 모태펀드와 민간이 매칭펀드(농식품투자조합) 결성하고,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재투자하는 방식임.

(ㅁ) 성과 관리

- 해당 관련 내용 없음.

(h)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결성 수로 성과를 측정함. 사업의 목표치와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4.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성과 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09	'10	'11	'12	'13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결성 수(개)	목표	신규	3	3	5	6	농식품모태펀드에 서 출자받아 결성된 자펀드의 수	농식품투자 조합 결성총회 개최 여부
	실적	신규	5	6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마. 일반농산촌개발사업⁹

- 일반농산촌개발사업은 세부사업으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기초생활 인프라정비(농촌생활환경정비, 농어업 기반정비, 지역창의아이디어)를 포함하는데 6차 산업과 가장 관련이 깊은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만을 논의함.

(ㄱ) 사업 목적 및 대상

- 일반농산촌개발사업의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발굴·확산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임.
-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의 주요 사업 대상은 경관개선사업(H/W), 지역공

⁹ 일반농산촌개발사업의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은 2014년 이후 “창조적 마을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동체사업(S/W), 기타 아이디어사업(S/W)으로 사업 전체로는 단순지원(H/W+S/W) 사업에 해당함.

(ㄴ)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일반농산촌개발사업의 사업비(보조금, 자부담)를 집행·수령하는 기관·단체이고, 사업시행자는 일반농산촌 117개 시장·군수 또는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임.
- 보조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 간접보조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위원회, 법인, 단체, 업체, 위원장 등

(ㄷ) 지원 내용

-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의 지원 기준은 국고 70%, 지방비 30%이고, 지원 한도는 세부사업별로 상이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5.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의 세부 사업별 재정 투입 계획

구 분	경관개선 사업	지역공동체사업		기 타 아이디어사업
		마을공동 소득창출	마을공동 문화조성	
지원금액	20억 이하	5억 이하	2억 이하	20억 이하
사업기간	2~3년간	2년간	2년간	1~3년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ㄹ) 지원 체계

- 일반농산촌개발사업은 사전 계획서를 공모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주민 또는 시·군이 시장·군수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도록 함.

(㉔)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시·군(시·도)는 전자시스템(E호조)과 연계하여 예산집행을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기적으로 시·군(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 및 전자시스템을 통한 집행상황을 수시 관리함.

(㉕)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주민만족도와 신규인구 유입목표 달성률인데, 리서치 전문기관활용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와 시군별 목표 및 실적을 통해 측정함. 사업의 2013년 성과 목표치와 최근 3개년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6. 일반농산촌개발사업의 성과 지표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3개년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10	'11	'12		
주민만족도(%)	80.5	77.9	78.7	79.0	'13.1월(매년말기 준)	리서치 전문기관활용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신규인구 유입목표 달성률(%)	100	118	100	100	'13.1월(매년말기 준)	시군별 목표 및 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은 단일 사업임.

(㉠) 사업 목적 및 대상

- 2013년부터 실시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의 목적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및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하는 것임.
- 주요 사업 대상은 사업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인테리어·장비·시설 등을 지원(H/W)과 교육·홍보를 지원(S/W)으로 사업 전체로는 패키지형(package type: P) 사업에 해당함.

(㉡)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생산자단체(농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및 사회적 기업임.

(㉢) 지원 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은 국고 30%, 자부담 70%이며, 참여농가의 교육 및 홍보비는 국고 100%지원임. 2014년도 예산 총액은 4,450백만 원으로 시설지원에 3,750백만 원, 교육 및 홍보에 700백만 원이 배정되었고, 30개소에 지원될 예정임.
 - 시설(개소 당 1.5억 원내외)외 교육·홍보(25백만 원) 별도지원
 - 2016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100개소 설치 추진

(㉣) 지원 체계

-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림수산업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보하고,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하면, 한국농수산물

품유통공사는 농림축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함.

(㉔)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시설 및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점검하고,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함.

(㉕)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농산물 직매장 설치 수로 성과를 측정함. 사업의 2014년 목표치와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17.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의 성과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농산물 직매장 설치	40 (누계)	2	32	62	2014.10	∑ 전국 직매장 개소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사.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단일 사업임.

(㉖) 사업 목적 및 대상

- 2013년부터 실시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전통주 생산에서 관광·체험까지 연계된 복합공간으로 개발 지원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의 6차산업화 추진하는데 있음.

- 주요 사업 대상은 전문가 활용(S/W), 품질관리(S/W), 관광·체험 연계(S/W), 홍보(S/W), 환경개선(H/W)으로 사업 전체로는 패키지형(package type: P) 사업에 해당

(ㄴ)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특별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양조장에 대해 농업과 연계(국산, 지역농산물사용), 시설의 역사성, 사업주 의지, 술 품질, 지자체와 연계, 주변여건(농촌체험마을, 관광지), 발전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함.

(ㄷ) 지원 내용

- 지원 최대한도는 8천만 원으로 업체당 총액의 80%를 지원하고, 20%를 의무적으로 자부담(지원 금액의 25%)함. 2014년도 사업 계획은 900백만 원을 10개소에 분배지원하고, 신규 개소별로는 72백만 원, 기타 운영비 276백만 원을 지원함.

(ㄹ) 지원 체계

-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지침을 작성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하도록 명령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전문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선정업체와 협약체결을 진행함.

(ㅁ)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전문기관은 지원업체의 추진상황 정기 점검 및 워크숍을 통한 사례 공유 등을 격월 1회 보고하고, 연말마다 평가회를 실시하여 차년도 개선방안을 도출함.

(h)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지표는 찾아가는 양조장 개소 수, 찾아가는 양조장 당 방문객 수, 찾아가는 양조장 당 매출액 증가율로 성과를 측정함.

아.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은 세부사업으로 농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촌민박을 포함함.

(ㄱ) 사업 목적 및 대상

-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의 공통 목적은 농어촌지역의 소득 증대인데 세부 사업별로 사업의 목적이 일부 차이가 있음.

표 3-18.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별 목적

세부 사업	사업 목적
농촌관광휴양단지	-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 증대 기여
관광농원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소득을 증대 기여
농촌민박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 사업 대상은 세부 사업별로 보면, 농촌관광휴양단지(H/W), 관광농원(H/W), 농촌민박(H/W+S/W)에 해당함.

- 사업 대상이 하드웨어(hardware: H/W)와 소프트웨어(software: S/W)를 지원하는 단순지원(H/W, S/W, H/W+S/W) 사업으로 구분

표 3-19.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별 내용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사업 대상
농촌관광휴양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 단지조성,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농림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자유키 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H/W)
관광농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시설: 영농체험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 승인면적의 20%이상 조성 - 자유키 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 시설 등-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 	(H/W)
농촌민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과 개수·보수자금, 운영자금 등 	(H/W+S/W)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ㄴ)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세부 사업별로 상이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20.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별 사업 대상자

세부 사업	사업 대상자
농촌관광휴양단지	- 제한 없음
관광농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고, 사업 주관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
농촌민박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고, 사업 주관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ㄷ) 지원 내용

- 사업의 지원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상이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2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별 사업 지원

세부 사업	사업 지원 내용
농촌관광휴양단지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없으며, 전액사업자가 부담
관광농원	- 지원방식: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 융자한도는 15억 원 이내에서 지급되나 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 총대출금 포함 7억 원 미만으로 융자 한도 - 시설자금 :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 개수·보수자금 : 3%, 2년 거치 3년 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 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상환, 1억 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3%, 변동), 2년 이내 상환
농촌민박	- 지원방식: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융자)으로 지원 - 시설자금 :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 개수·보수자금 : 3%, 2년 거치 3년 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 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상환, 1억 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3%, 변동), 2년 이내 상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ㄹ) 지원 체계

-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은 사전 계획서를 공모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신청 대상이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지정·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함.

(㉔)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고, 조취를 취해야 하는데 세부 사업별로 일부 내용이 상이함.

표 3-22.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별 성과 관리

세부 사업	성과 관리
농촌관광휴양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1회 이상 공정계획 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허가 취소 등 조치)
관광농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 1회 이상 사업취지 부합·건전운영 실태, 작목입식·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제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기준 관광농원사업 추진현황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촌민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 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으로 위생, 소방안전 및 친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장 폐쇄 시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h)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농촌관광휴양단지의 경우, 시·도지사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함.

자.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

-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은 단일 사업임.

(㉠) 사업 목적 및 대상

- 2014년부터 실시된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의 목적은 6차산업을 추진하는 주체간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마케팅, 제품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임.

- 사업 대상은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지원(S/W), 구성원 역량강화(S/W), 신제품 및 품질 관리시스템 개발 지원(S/W),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지원(S/W) 등으로 사업 대상이 소프트웨어가 연계된 패키지(package type: P) 사업임.

(㉡)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6차산업 다각화 추진을 위해 원칙적으로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법인 등이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격이 있는 컨소시엄 또는 향후 법인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컨소시엄 사업단임.
 - 컨소시엄 사업단 참여자간 업무협약을 체결(공증 등 법적효력이 있는 협약에 한함)한 컨소시엄 사업단 또는 사업선정 1개월 이내 법인화될 수 있는 사업단

(㉢) 지원 내용

- 사업의 지원 기준은 국고보조 50%, 자부담 50%이고, 사업 기간 1년 동안

의 지원 한도는 총사업비 100백만 원~400백만 원이며 자부담의 일부는 지방비로 지원 가능하지만 자부담율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금액 50백만 원: 8개소
- 지원 금액 100백만 원: 4개소
- 지원 금액 200백만 원: 1개소

표 3-23.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의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50백만 원	100백만 원	200백만 원
사업량(개소)	13	8	4	1
사업비 (백만 원)	1,000	400	400	2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 사업의 지원 조건은 사업계획서(프로젝트)에 의한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자금 사용용도의 사용제한 및 별도 통장 개설에 의한 투명한 자금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용도별 증빙에 의한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공동조직 탈퇴 및 협약 파기 시 국고 미지급 또는 환수

(ㄹ) 지원 체계

-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내용, 사업신청요령,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을 수립·통보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도에 지역컨소시엄사업단지 지원 사업계획을 안내하면,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에서는 지원 사업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 등을 통해 6차산업화 컨소시엄 사업단, 지자체에 안내하

여야 함.

(㉓)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연 2회(8월·11월)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실적 정산 완료 후에도 사업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여야 함.

(㉔)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인데, 사업단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체를 대상으로 측정함.

표 3-24.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의 성과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매출액 증가율(%)	-	-	-	-	2014.12 월	- 조사대상 : 사업단 참여 모든 경영체 - 조사시기 : '13.12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차.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¹⁰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세부 사업으로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축산물 제

¹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4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임.

조·가공 지원,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농촌체험·관광 지원(농촌 테마공원조성),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을 포함함.

(1) 사업 목적 및 대상

- 2010년부터 실시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목적은 농촌부존자원을 제조, 가공, 유통, 관광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 설치 지원하는 것임.
- 사업 대상은 세부 사업별로 보면,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S/W), 농촌체험·관광 지원(H/W),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P)에 해당함.
 - 사업 대상이 하드웨어(hardware: H/W) 지원과 소프트웨어(software: S/W) 지원을 아우르는 패키지형(package type: P)¹¹ 사업으로 구분

¹¹ 농림축산식품부에 명시된 지침은 패키지형(package type: P) 사업을 권유하지만, 실제로는 H/W에 치중되어 진행됨. 구체적인 내용은 4장 참조.

표 3-25.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내용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시도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 지원	(S/W)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 및 교육·기 술 네트워크 구축	(P)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 교육R&D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특허 지원	(P)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체험·전시·공동판매장 시설 지원, 교육R&D 네트워크 구축, 홍보 및 컨설팅·특허 지원	(P)
농촌체험·관광 지원(농촌테마공 원조성)	- 기반시설, 체험·휴양시설 지원	(H/W)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농공단지 부지조성 및 노후단지 시설 개·보 수 지원,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 영	(P)
생산·유통·제조· 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 관련 시설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교육 프로그램,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사업단 운영비 지원	(P)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나)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이고, 사업 시행 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임.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㉔) 지원 내용

- 사업 재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인데, 지원 기준은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임.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 결정
 -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사업(농공단지조성사업)은 정액지원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은 2014년 기준 총액이 352,586백만 원인데, 국고보조가 176,293백만 원으로 50%, 지방비·자부담이 176,293백만 원으로 50%임.

표 3-26.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 계	958,114	406,190	421,120	352,586	계속
국고보조	479,057	203,095	210,560	176,293	계속
지방비·자부담	479,057	203,095	210,560	176,293	계속

주 1)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 자율사업(포괄보조)으로 시·도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15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2) 2013년 이후는 해양수산부 소관 미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 사업 기간은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생산·유통·제조·가공시설 설치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단년도 사업추진을 지양하도록 함.
- 사업 대상자별 예산 규모는 세부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데,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과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 당 10억 원까지 국고 지원이 가능하며,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은 총사업비 5억 원 미만으로 지원
- 체험·관광 중심의 산업화 지원의 경우, 농촌체험·관광 지원은 3~5년간 지구당 50억 원까지 국고 지원
-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의 경우,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부지조성비는 단지면적 3.3㎡당 30~70천원을 지원
- 1차·2차·3차 융복합 사업화 지원의 경우,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사업화 지원은 2015년 기준 21개소 8,014백만 원을 지원 예정

표 3-27.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예산 규모

세부 사업	예산 규모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6개소, 353백만 원 지원(2014년)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보조사업자 당 10억 원까지 국고 지원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 보조사업자 당 10억 원까지 국고 지원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총사업비 5억 원 미만
농촌체험·관광 지원(농촌테마공원조성)	- 3~5년간 지구당 50억 원까지 국고 지원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단지면적 3.3㎡당 30~70천 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 21개소, 8014백만 원 지원예정(2015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㉔) 지원 체계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사전 계획서를 공모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을 신청하도록 함.
-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상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을 하고,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예산을 신청함.
 - 단, 총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가 필요
- 사업 대상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공모제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보조사업자 선정 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매입하는 우수한 업체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우선 선정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㉕)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부진·부실 사업에 대한 조치를 취함.
 - 시·도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을 주기적(분기별 1회)으로 점검하고,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함.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농어촌기업 매출액·참여농가 소득증가 등 경제성과와 주민교육이수실적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로 인센티브(예산 추가지원) 및 페널티(예산 삭감) 등을 부여

(h)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참여업체 매출액 증가율과 일자리 증가율인데,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성과를 측정함. 사업의 2013년 성과 목표치와 최근 3개년 실적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28.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성과 지표

단위: 억 원, 명, 개소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참여업체 매출액 증가율(%)	28.4	26.2	28.1		'14.1월	지자체 행정조사
일자리 증가율(%)	34.2	-	34.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카. 말산업육성사업

- 말산업육성사업은 세부 사업으로 공공승마시설, 민간승마시설, 승용마 구입,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제주마 혈통보존, 전문인력 양성기관, 말산업 특구를 포함함.

(ㄱ) 사업 목적 및 대상

- 말산업육성사업의 목적은 말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 사업 대상은 세부 사업별로 보면, 승마시설(H/W), 승용마구입(H/W),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H/W), 제주마 혈통보존(H/W), 전문인력양성기관 설립(S/W) 등 단순지원(H/W, S/W, H/W+S/W) 사업으로 구분됨.

표 3-29. 말산업육성사업의 세부 사업별 내용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승마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관리사,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및 관련시설,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외승주로 개설 및 설치, 승마길 조성 등 * 부지 구입비, 외승주로 및 승마길 조성을 위한 땅 구입비는 제외 - 민간승마시설 : 공공승마시설과 같음 * 다만, 승마길 조성은 지원 제외 	(H/W)
승용마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마(등록된 말에 한정함) 구입비 	(H/W)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 	(H/W)
제주마 혈통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마 혈통보존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등 	(H/W)
전문인력 양성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S/W)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ㄴ) 사업 대상자

- 말산업육성사업의 사업 대상자 및 자격요건은 세부 사업별로 상이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공공승마시설 : 지자체, 대학
 - 민간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용마구입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승용마구입 사업대상에 공공시설 운영자는 제외)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지자체, 농축협
- 제주마 혈통보존 : 제주도(축산진흥원)
- 전문인력양성기관 :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말산업 특구 : 「말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자체

(ㄷ) 지원 내용

- 말산업육성사업의 지원 기준은 각 세부 사업별로 상이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30. 말산업육성사업의 세부 사업별 지원 기준

내역 사업명		보 조	지방비	용 자	자부담	용자조건
승마시설	공 공	40	40	2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연리 4%(농업인 3%) - 용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민 간	20	20	30	30	
승용마(번식용 포함) 구입		-	-	70	30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50	50	-	-	
	농축협	50	-	-	50	
제주마 혈통보존		50	50	-	-	
전문인력양성기관		50	50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 말산업육성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은 각 세부 사업별로 상이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31. 말산업육성사업의 세부 사업별 재정 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내역 사업명		총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고보조	지방비	용자		
승마시설	공공	2,000	800	800	400	-	총사업비 한도 - 공공시설 개보수 : 7억 원 이내 - 민간시설 개보수 : 3억 원 이내 총사업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추진
	민간	700	140	140	210	210	
승용마(번식용 포함) 구입		100	-	-	70	30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3,000	1,500	1,500	-	-	
	농축협	3,000	1,500	-	-	1,500	
제주마 혈통보존		500	250	250	-	-	
전문인력양성기관		600	300	300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 말산업육성사업의 사업별 총사업비는 2013년 기준 15,811백만 원인데, 보조 6,163백만 원, 용자 2,245백만 원, 지방비 6,163백만 원, 자부담 1,240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함.

표 3-32. 말산업육성사업의 사업별 총사업비 및 지원 한도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255,917	12,350	15,811	미정	미정
보 조	27,451	4,000	6,163	-	-
용 자	104,814	2,745	2,245	-	-
지방비	27,451	4,000	6,163	-	-
자부담	96,201	1,605	1,240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ㄹ) 지원 체계

- 말산업육성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연도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하면 시·도는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하고, 시·군·구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하는 체계임.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하고,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함.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사업의 경우 신청 한도 사업량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함.
 - 공공승마시설: 신규설치 1개소, 개보수 1개소
 - 민간승마시설: 신규설치 1개소, 개보수 2개소
 - 승용마 조련시설: 신규설치 1개소
 - 승용마 구입: 신규설치 1개소

- 공통적으로 신청 대상이 제외되는 지자체로는 제주시만 해당

(㉞)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승마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㉟)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지표 평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로 전년도 평가 지표 등을 감안하여 평가지표를 확정하는데 주요평가 지표로는 신규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를 활용함.

표 3-33. 말산업육성사업의 성과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신규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20개소	-	-	20	매년 2월	매년말 신고되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타.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은 단일 사업임.

(ㄱ) 사업 목적 및 대상

- 2011년부터 실시한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의 목적은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여 농촌 활력증진에 기여하는 것임.
 -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19조의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주요 사업 대상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을 위한 제품 개발·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관련 비용(S/W), 브랜드 개발비(S/W), 홍보·마케팅비(S/W) 등으로 사업 전체로는 소프트웨어(software)를 지원하는 단순지원(S/W) 사업에 해당함.

(ㄴ)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시도의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 법인·단체가 해당됨.

(ㄷ) 지원 내용

-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의 총 예산은 2014년 기준 1,500백만 원으로 60개소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함. 지원 기준은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임.
 - 2013년 실태조사 결과, 농촌공동체회사 성격의 조직은 725개소로 총 매출액 규모는 약 8천억 원 수준(농식품산업형 : 399개소(55%), 도농교류형 : 204개소(28%), 사회서비스형 : 37개소(5%), 지역개발형 : 38개소(5%), 혼합형 : 47개소(7%))

- 2014년부터 사회서비스형 농촌공동체 회사에 대한 지원 확대

(㉔) 지원 체계

○ 해당 관련 자료 없음.

(㉕) 성과 관리

○ 해당 관련 자료 없음.

(㉖)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평균 매출액 증가율, 고용 증가율, 만족도 조사로 성과를 측정함. 사업의 2014년 목표치와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34.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의 성과 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농촌공동체회사	평균 매출액 증가율(%) * 가중치 20%	-	10%	13.4%	14.7%	'13년 지원된 농촌공동체회사 매출액 증가 추세를 감안 '14년 목표치 설정	$[(\text{당년도 평균 매출액} - \text{전년도 평균 매출액}) / \text{전년도 평균 매출액}] \times 100$	당년도 사업 지원대상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행정조사 * 매출액이 없는 사회서비스사업 유형 농촌공동체회사는 제외
	고용 증가율(%) * 가중치 60%	-	-	22.9%	22.9%	'13년 지원된 농촌공동체회사 고용 증가 추세를 감안, '14년 목표치 설정	$[(\text{당년도 총 고용인원} - \text{전년도 총 고용인원}) / \text{전년도 총 고용인원}] \times 100$	당년도 사업 지원대상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행정조사
	만족도 조사 * 가중치 20%	-	-	-	68.2점 이상	'13년 농식품부 주요(41개)정책 고객만족도 평가지수(68.2점)	조사 대상 농촌공동체회사 구간별 만족도 점수* 합계/조사 대상 농촌공동체회사 개소수 * 매우만족(90), 만족(80), 우수(70), 보통(65), 미흡(60)	현장조사(모니터링 등) 혹은 행정조사 조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파.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은 단일 사업임.

(㉠) 사업 목적 및 대상

- 2012년부터 실시한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의 목적은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색과 품격을 갖춘 선진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지원하는 것임.
- 주요 사업 대상은 우수 외식업 지구에 대해 종사자 교육(S/W), 경영개선(S/W), 마케팅·홍보사업비 등 소요경비 지원(S/W)으로 사업 전체로는 소프트웨어(software)를 지원하는 단순지원(S/W) 사업에 해당함.

(㉡)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구 중에서 농업·관광 등이 연계된 농촌 또는 도농복합 중심으로 육성이 필요한 외식업 지구를 선정·지원함.

(㉢) 지원 내용

-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의 지원 기준은 지자체경상보조로 지원 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50%임. 총 사업비는 2014년 기준 800백만 원으로 전체 4개소별 100백만 원씩 2년간 총 200백만 원을 지원함.

(㉣) 지원 체계

-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외식업지구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하면, 시·도는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 사업계획서를 신청함.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심사위원회 심의 후 지원 대상 선정·통보하고 선

정 지구 집중육성 및 사후 관리함.

(㉔)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자체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시행함. 지구 운영상황 평가 결과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사업 홍보 및 지원을 유인함.

(㉕)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우수 외식업지구 만족도 조사로 성과를 측정함. 사업의 2014년 목표치와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35.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의 성과 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우수 외식업지구 만족도 조사	-	-	70.4	72	우수 외식업지구 사업 추진 확대에 따라 '14년 목표 설정	방문이용객 대상 개별 면접조사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조사자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하.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은 단일 사업임.

(㉖) 사업 목적 및 대상

- 2014년부터 실시한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집적화하여 지역경제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이용시설, 기타 인프라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임.

- 주요 사업 대상은 6차산업 공동 인프라 조성(H/W),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 강화(S/W),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 브랜드화(S/W) 등으로 사업 전체로는 패키지형(package type: P) 사업에 해당함.

(ㄴ)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시·군·구로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산업 사업자 간 연계를 통해 특화하여 농촌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의 신청으로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이 해당됨.

(ㄷ) 지원 내용

-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의 지원 기간은 3~5년으로 지원 기준은 국고 50%, 지방비 50%이며, 지원 금액은 지구당 총사업비 20억 원임.

(ㄹ) 지원 체계

-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이 사업주관기관(시·도)으로 시달되면 시·군·구는 지구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발전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후보 지구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함.
- 사업지구 선정은 지구 공간구성의 적합성, 6차산업화 여건, 사업의 창의성·독창성·합리성, 연계사업의 실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사업지구 선정·지정함.
 - 지구발전계획 서면 평가(50%)
 - 신청 지구를 대상으로 해당 시·군의 발표 평가(50%)

(㉔) 성과 관리

- 농식품부 및 시·도는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추진상황 및 애로사항 확인, 개선 추진하는 현장중심, 성과중심의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함.
 - 농식품부, 시·도, 전문가 등으로 팀 구성하여 컨설팅 지원
 -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㉕) 성과 목표 및 지표

- 해당 관련 자료 없음.

2.2. 농촌진흥청

2.2.1. 개황

- 농촌진흥청은 기존 기술·지도사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농가 단위 중심의 시범사업 위주로 6차 산업화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들은 2014년 기준으로 총 6개 사업이 있는데, 2차 가공, 3차 서비스, 1·2·3차 산업 부문이 서로 융합된 복합 지원 사업을 유형별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 2차 가공 지원 사업으로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시범지원,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이 해당
 - 3차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교육농장,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이 포함

- 복합사업으로는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 6차 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이 시행 중

표 3-36. 농촌진흥청의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사업

분류	사업명
제조·가공 (2차)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
음식·관광·유통 (3차)	농촌교육농장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복합	지역농업특성화사업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자료: 농촌진흥청 자료 재정리

2.2.2. 사업별 현황

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단일 사업임.

(1) 사업 목적 및 대상

- 2006년부터 실시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경제활동 역량 향상과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사회의 활력 부여가 목적임.
- 주요 사업 대상은 기반조성(H/W), 경쟁력 향상(S/W), 컨설팅 등(S/W)으

로 사업 전체로는 패키지형(package type: P) 사업에 해당

(ㄴ)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 등 2농가 이상 공동참여자임.

(ㄷ) 지원 내용

- 사업비는 국비 1,500백만 원(2014년)으로 개소별 100백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기준은 국비·지방비 각 50%이며, 2014년에는 15개소를 지원 예정임.

표 3-37.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

단위: 개소, 백만 원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15	3	2	1	1	2	2	1	2	1
사업비	1,500	300	200	100	100	200	200	100	200	100

주: 개소 당 사업비 단가: 100백만 원(국·지방비 각 50%)

자료: 농촌진흥청 자료 재정리

(ㄹ) 지원 체계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자를 공고하면, 사업희망 경영체·공동체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청하여야 함.

(ㅁ)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하여 차년도 사업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h)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사업장 매출액 증가율(3년차 사업장)로 성과를 측정함. 사업의 2014년 목표치와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38.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의 성과 지표

단위 : %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사업장 매출액 증가 율(3년차 사업장)	25.2	-	-	24	연말	{{(전년도 매출액 당 해년도 매출액)/전 년도 매출액}*100

자료: 농촌진흥청 자료 재정리

나.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

-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은 단일 사업임.

(ㄱ) 사업 목적 및 대상

- 2010년부터 실시한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도모하며, 농산물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 보급·확산과 공동기기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 주요 사업 대상은 농업인 가공활동을 통한 농외소득 개발 종합지원(P)으로 사업 전체로는 패키지형(package type: P) 사업에 해당함.

(ㄴ)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임.

- 지원 자격 및 요건은 농산물가공장비가 일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농식품 가공 관련 연구개발 또는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도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지방 농촌진흥기관임.

(ㄷ) 지원 내용

- 사업비는 국비 2,000백만 원(2014년)으로 개소별로 2년간 500백만 원을 지원 하고, 지원 기준은 국비 50%, 지방비 50%, 2014년에는 4개소를 지원 예정임.

표 3-39.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

단위: 개소, 백만 원

구 분		시군 및 사업비				합계
1년차 (‘14신규)	시군	공주	홍성	장성	칠곡	4
	사업비	500	500	500	500	2,000
2년차 (‘13계속)	시군	원주	삼척	논산	영광	4
	사업비	500	500	500	500	2,000
합계						8개소 4,000백만원

자료: 농촌진흥청 자료 재정리

(ㄹ) 지원 체계

-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코칭 농업인을 확정·통보하여 계약을 체결함.

(㉔)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하여 차년도 사업지침에 반영하고 자체 성과 평가함.

(㉕)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신규창업 증가율로 성과를 측정함. 사업의 2014년 목표치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40.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의 성과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신규창업 증가율	7%	연말	(당해년도 신규창업자수/전년도 신규창업자수)*100

자료: 농촌진흥청 자료 재정리

다. 농촌교육농장

- 농촌교육농장은 단일 사업임.

(㉖) 사업 목적 및 대상

- 2006년부터 실시한 농촌교육농장은 유아, 초·중·고교 등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가(농장)를 체계적으로 선발, 육성하여 현장 체험학습장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
- 사업 대상은 교육환경 조성 관련 시설 및 체험학습장 조성(H/W), 교육프로그램 및 워크북 개발(S/W), S/W관련 전문 컨설팅(S/W),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S/W)으로 사업 전체로는 패키지형(package type: P)

사업에 해당함.

(ㄴ)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가 또는 영농법인체임.

(ㄷ) 지원 내용

○ 사업비는 국비 1,200백만 원(2014년)이고, 지원 기준은 국비·지방비 각 50%, 2014년에는 48개 농장을 지원 예정임.

표 3-41. 농촌교육농장의 재정 투입 계획

단위: 개소, 백만 원

구 분	계	인천	대구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수	12	1	1	1	1	1	1	1	1	1	1	1	1
농장수	48	4	4	4	4	4	4	4	4	4	4	4	4
사업비	1,2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사업비 : 시군당 100백만 원(농장 당 25백만 원)

자료: 농촌진흥청 자료 재정리

(ㄹ) 지원 체계

○ 농촌교육농장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농촌진흥청이 사업방향 정립 및 사업계획 수립, 지침 시달하면,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사업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계획 검토 및 지원을 실시함.

(ㅁ)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중앙정부는 교육농장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운영상황 점검·지도·평가함.

(h)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체험학습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와 마을에 대한 기여도 및 마을과의 협약 상태, 교육기관과 MOU체결 등을 통해 성과를 측정함.

라.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단일 사업임.

(ㄱ) 사업 목적 및 대상

- 2007년부터 실시한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의 상품화 및 체험 공간 조성으로 우리 식문화 계승 및 확산에 기여하고, 향토음식 전문 인적자원 육성으로 향토음식 전승 및 농외소득 향상하는 것이 목적임.
- 사업 대상은 전문인력 육성(S/W), 교육 및 활동 지원(S/W),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메뉴와 연계된 반찬류·가공품 등 판매 품목의 다양화(S/W), 전문가 컨설팅 추진(S/W) 등으로 사업 전체로는 소프트웨어(software)를 지원하는 단순지원(S/W) 사업에 해당함.

(ㄴ)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농가공동 참여자임.
 - 농업기술센터: 향토음식 자원 발굴 및 자원화 의지가 강하고,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센터
 - 농가맛집 : 영농조합법인 등 2농가 이상 공동 참여자

(ㄷ) 지원 내용

- 사업비는 국비 500백만 원(2014년)이고, 지원 기준은 국비·지방비 각

50%, 2014년에는 5개소를 지원 예정임.

표 3-42.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

단위: 개소, 백만 원

구 분	계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세종
사업량	5	1	1	1	1	1
사업비	500	100	100	100	100	100

주: 개소 당 사업비 단가: 100백만 원(국·지방비 각 50%)

자료: 농촌진흥청 자료 재정리

(㉔) 지원 체계

-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 사업추진 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자를 공고하면, 사업희망 경영체·공동체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청하여야 함.

(㉕)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하여 차년도 사업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㉖)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사업장 매출액 증가율(3년차 사업장)로 성과를 측정함. 사업의 2014년 목표치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43.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의 성과 지표

(단위: %)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사업장 매출액 증가 율(3년차 사업장)	31	-	-	-	연말	{{(전년도 매출액 당 해년도 매출액)/전 년도 매출액}*100

자료: 농촌진흥청 자료 재정리

마. 지역농업특성화사업

-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단일 사업임.

(㉠) 사업 목적 및 대상

-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 목적은 시군 여건에 맞는 주도 사업(품목)에 기술·교육·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하고, 지역농업 특성화 우수시군에 대한 사업비 및 집중적인 기술지원으로 지역농업 특성화 촉진하는 것임.
- 사업 대상은 지역 특화품목(사업) 기반조성 및 육성(S/W), 전담조직 및 지역협의체 구성·운영(S/W), 참여 농업인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현장기술원 및 컨설팅(S/W), 생산, 가공·상품화, 브랜드·포장재 개발, 유통·마케팅·홍보 등 1·2·3차 산업을 연계 추진 (S/W), 특성화사업 운영·성과관리 및 지역농업 특성화 역량 강화(S/W) 등으로 사업 전체로는 소프트웨어(software)를 지원하는 단순지원(S/W) 사업에 해당함.

(㉡)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임.

(ㄷ) 지원 내용

- 사업비는 국비, 광역발전계정,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포함하여 16,231백만원(2014년)이고, 지원 기준은 시군센터 평가결과 반영하여 50~70% 차등 지원하는데 1년차(국비·지방비 50%), 2년차(국비 70% 지방비 30%)이며, 2014년에는 75시군(1년차 49, 2년차 26)을 지원 예정임.

표 3-44.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 지역별 재정 투입 계획

단위 : 개소, 백만 원

구 분	계		사업 1년차(신규)		사업 2년차(계속)	
	사업량	국 비	사업량	국 비	사업량	국 비
계	75	16,231	49	9,894	26	6,337
경기	11	2,379	7	1,330	4	1,049
강원	12	2,640	6	1,095	6	1,545
충북	6	1,329	3	580	3	749
충남	5	960	4	760	1	200
전북	5	970	5	970	-	-
전남	10	2,262	5	1,015	5	1,247
경북	7	1,378	4	680	3	698
경남	9	1,654	6	1,005	3	649

제주*		4	1,399	4	1,399	-	-
특광역시	서울	1	190	1	190	-	-
	대구	1	190	1	190	-	-
	인천	2	390	1	190	1	200
	울산	1	245	1	245	-	-
	세종	1	245	1	245	-	-

주1) 제주계정(4개소, 1,399백만 원) / 광역계정(71개소, 14,832백만 원)

2) 개소 당 단가 : 1년차(145~245백만 원), 2년차(200~300백만 원)

자료: 농촌진흥청 자료 재정리

(㉔) 지원 체계

-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면 도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사업추진 기본방향 및 중점 추진계획 등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대상자 선정,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자체 사업계획 수립함.

(㉕)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시군센터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확인하고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보조금 정산함.
- 평가대상은 사업추진 전 시군(사업 1·2년차)이며 사업연차별로 분리하여 현장·발표평가 실시 및 우수시군에 인센티브 제공, 시상 및 3년차 사

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미흡시군은 사업비 지원을 중단함.

(h)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농가소득 증가율로 성과를 측정함. 사업의 2014년 목표치와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45.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 성과 지표

단위: 개소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특성화 지원 농가 소득 증가율(%)	32.1	16.8	19.1	27.0	매년 11~12월	도농업기술원 또는 외부전문기관 위탁조사 {(금년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100

자료: 농촌진흥청 자료 재정리

바.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은 단일 사업임.

(1) 사업 목적 및 대상

-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의 목적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외식·체험분야 개발기술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농업소득 및 농업 관련소득 증대와 생산자와 소비자, 업종간 연계를 위한 인적·공간적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 조성하는 것임.
- 사업 대상은 효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S/W), 6차 산업 수익모델 기반구축(S/W), 기존 경영체 연계 시스템 구축(S/W), 공동체 활성화 지원(P), 특성화사업 운영·성과관리 및 지역농업 특성화 역량 강화(S/W), 지원조직 운

영(S/W), 컨설팅(S/W), 참여자 교육(S/W) 등으로 사업 전체로는 패키지형 (package type: P) 지원 사업에 해당함.

(ㄴ)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농촌마을, 품목반, 농업인단체 등 농업·농촌관련 공동체임.

(ㄷ) 지원 내용

- 사업비는 45억 원(2014년)이고, 지원 기준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개소당 500백만 원을 지원하며, 2014년에는 9개소를 지원 예정임.

표 3-46.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

단위 : 개소, 백만 원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개소)	9	1	1	1	1	1	2	1	1
사업비(억원)	45	5	5	5	5	5	10	5	5

주: 개소 당 2년간 10억 원 내외 지원(2년차 사업비는 1년차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자료: 농촌진흥청 자료 재정리

(ㄹ) 지원 체계

-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업 대상자 공모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면, 사업희망 경영체·공동체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함.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통하여 추천순위 결정하고, 사업 대상자를 도농업기술원으로 추천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도별 배정된 추천 사업량을 농진청으로 추천하는 체계임.

(㉔)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현장기술지원 및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하여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하여 차년도 사업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정부에서는 연차별로 사업추진과정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2년차 예산배정에 활용하고, 우수 시·군에 대하여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적용함.

(㉕)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연차별로 상이한데, 1년차에는 커뮤니티 활동실적과 네트워크 참여 경영체 수, 2년차에는 농가소득증가율(%), 일자리창출(명), 구성원 만족도, 네트워크 참여 경영체 수로 성과를 특정함.

2.3. 산림청

2.3.1. 개황

- 산림청은 전통적인 산림관리 이외의 분야(치유, 관광휴양)를 6차 산업화로 규정하여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 중에 있음.
-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들은 2014년 기준으로 총 2개 사업이 있는데, 3차 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 3차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는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시행 중

표 3-47. 산림청의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사업

분류	사업명
음식·관광·유통 (3차)	치유의 숲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자료: 산림청 자료 재정리

2.3.2. 사업별 현황

가. 치유의 숲 조성사업

-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단일 사업임.

(㉠) 사업 목적 및 대상

- 2007년부터 실시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숲의 치유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증가하는 산림치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적임.
- 사업 대상은 지역별 산림치유 환경과 수요·여건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S/W), 건강증진센터 및 치유숲길 등 산림치유 시설 조성(H/W)으로 사업 전체로는 단순지원(H/W+S/W) 사업에 해당함.

(㉡)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임.

(㉢) 지원 내용

- 사업비는 국비 14,400백만 원(2014년)으로 개소별 5,000백만 원을 연차별

로 지원하고, 지원 기준은 국립(국비 100%), 공립(국비 50%, 지방비 50%)이며, 2014년에는 29개소(4개소 운영, 25개소 조성)를 지원 예정임.

(ㄹ) 지원 체계

-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 산림청이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면, 시·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지특회계 예산범위 내에서 치유의 숲 조성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함.

(마)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음.

(바)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치유의 숲 이용자 수 및 만족도에 대한 목표 달성률로 성과를 측정함. 사업의 2014년 목표치와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48.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사업별 성과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산림치유 활성화 목표 달성률(%)	100	-	-	100	12월	치유의 숲 이용자 목표 달성률(80%) + 이용자 만족도 달성률(20%)
치유의 숲 이용자(만명)	60	15	31	45		-
이용자 만족도	95	-	-	98		-

자료: 산림청 자료 재정리

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단일 사업임.

(㉑) 사업 목적 및 대상

- 1988년부터 실시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태관광 수요를 산림에서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산림경관이 수려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목적임.
- 사업 대상은 국·공립 자연휴양림 조성(H/W) 및 사립자연휴양림의 운영(S/W)을 지원하는 단순지원(H/W+S/W)사업에 해당됨.

(㉒)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임.

(㉓) 지원 내용

- 지원 기준은 사업실행 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음
 - 국가 : 국비100%
 - 지방자치단체 : 국고보조 50%
 - 개인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용자(자부담 20% 이상)지원임. 휴양림 운영은 보조율 50%로 국고보조
- 지원 한도액 역시 사업실행 주체 및 예산 편성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음
 - 국가 : 매년 사업계획에 다른 예산편성 범위 내 운영
 - 지방자치단체 :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 사업으로 시·도의 예산 한도 내에서 신청하고 승인된 한도 내에서 정해진 보조율에 따라 예산을 지원
 - 개인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에 따라 지원한도액은 8억 원임. 대출

금리는 3%이고, 기간은 20년 이내(거치10년, 상환10년)로 하고 있음. 운영은 매년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보완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10개소에 지원하고 있음.

표 3-49.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71,600	74,977	81,926	95,442	104,733
국 비	46,000	46,927	56,651	58,700	62,287
지방비	25,200	27,250	24,475	35,942	41,646
용 자	400	800	800	800	800

자료: 산림청 자료 재정리

(㉔) 지원 체계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사전 계획서를 공모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 사유림은 산림소유자가 시장·군수에 신청하고, 공유림은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국유림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신청하면 산림청장, 환경부 장관,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가 발표됨.
-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휴양림 운영·보완의 경우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 예산 및 지방비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 매년 초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국고보조금을 지원함.

(㉕) 성과 관리

- 조성·운영중인 자연휴양림의 사후관리를 위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분기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매년 전년도 사업분에 대한 사업실행 내역 점검 및 정산을 실행하고 있음.

- 용자사업의 경우 대출실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에서 매년 2회 이상 실태를 확인하여 지원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h)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와 자용휴양림 이용자 만족도로 성과를 측정함. 사업의 2014년 목표치와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50.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사업별 성과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자연휴양림 이용객수(만명)	1,383	1,480	1,520	1,278	익년3월	국·공·사 자연휴양림 이용자수 합계
자연휴양림 이용자 만족도(점)	85.0	'14년 신규지표			익년3월	국립자연휴양림 만족도 조사결과 활용

자료: 산림청 자료 재정리

2.4. 지방자치단체¹²

2.4.1. 개황

-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개별 6차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

¹² 지자체의 6차산업화 정책은 농식품부, 양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과 6차산업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사업은 제외하였음.

고 중앙 정부와 함께 6차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들은 2014년 기준으로 총 8개 사업이 있는데, 2차 제조·가공, 1·2·3차 산업 부문이 서로 융합된 복합 지원 사업을 유형별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 2차 가공 지원 사업으로는 강원 지역의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 사업,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 경남 지역의 농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전남 지역의 마을반찬산업 육성사업, 제주 지역의 식품전용 파일럿 플랜트 운영지원,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이 해당
 - 복합사업으로는 전북 지역의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시행 중

표 3-51. 지자체의 6차 산업화 정책 사업 현황

지자체	분류	사업명
강원	제조·가공 (2차)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
경남	제조·가공 (2차)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전남	제조·가공 (2차)	마을반찬산업 육성사업
제주	제조·가공 (2차)	식품전용 파일럿 플랜트운영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전북	복합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주: 지자체의 6차산업화 정책은 농식품부, 양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과 6차산업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사업은 제외하였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정리

2.4.2. 사업별 현황

가. 강원도의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단일 사업임.

(㉠) 사업 목적 및 내용

- 강원도의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수요 및 생산량 증가에 따라 가공기반을 확대하여 안정적 판로확보, 다양한 친환경 가공식품 개발과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의 소득증대 도모와 지역주민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임.
- 사업 대상은 유기농산물 가공공장 및 시설물 설치를 통해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단순지원(H/W) 사업에 해당됨.

(㉡)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이 해당됨.

(㉢) 지원 개요

- 지원 기준은 개소 당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이고 총사업비는 4,000백만 원인데 개소 당 500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함.

표 3-52.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	2016	2017	2018년 이후
합 계	1,000	500	500	500	1,500
도 비	150	105	105	105	315
시군비	450	245	245	245	735
자부담	400	150	150	150	450

자료: 지자체 자료 재정리

(㉒) 지원 체계

-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사전계획서를 공모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에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사업을 신청하도록 함.

(㉓)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지도 관리를 실시하고 수시 현지 확인하여 공정별 이행실태 점검 함.

(㉔) 성과 목표 및 지표

- 해당 관련 자료 없음.

나. 강원외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

-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은 단일 사업임.

(㉠) 사업 목적 및 내용

- 강원도의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의 목적은 한우 저지방 부위를 가공육으로 제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축산의 6차 산업화 모델개발을 통해 한우농가 소득 및 경쟁력 증대하는 것임.
- 사업 대상은 육가공장 설치, 소시지충전기, 스팀 훈연기, 혼합기, 식당내 부시설 등을 지원하는 단순지원(H/W) 사업에 해당됨.

(㉡)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한우사육농가 협의회 및 영농법인임.
 - 농·축협 제외

(㉢) 지원 개요

- 지원 기준은 도비 15%, 시군비 60%, 자부담 25%임.

표 3-53.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	2013	2014	2015년 이후
합 계	0	0	0	334	668
도 비	-	-	-	50	100
시군비	-	-	-	200	400
자부담	-	-	-	84	168

자료: 지자체 자료 재정리

(㉣) 지원 체계

-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은 사전 계획서를 공모하는 사업

임. 희망 협의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도에 신청하여야 함.

(㉠)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는 분기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고, 조취를 취함. 구체적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공정계획 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등을 점검함.

(㉡)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시설 설치 완료 후 판매실적 등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로 성과를 측정함. 사업의 2015년 목표치와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54.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의 성과 지표

단위 : 백만 원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판매실적(금액)	150	-	-	설치 추진중	익년1월	-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

자료: 지자체 자료 재정리

다. 경남의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세부사업으로 일반농식품 가공산업, 전통주육성사업과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을 포함함.

(1) 사업 목적 및 내용

- 경상남도의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발전 잠재력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중소 식품가공업체를 발굴·육성·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6차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소규모 농식품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

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자원의 융복합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임.

- 사업 대상은 일반농식품 가공산업과 전통주, 전통발효식품의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공공장 신축·증축·개축, 시설현대화 사업 등 단순지원 (H/W) 사업임.

(ㄴ)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지역농산물을 50% 이상 이용하는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임.
 - 단, 자본금 5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소기업

(ㄷ) 지원 개요

- 지원 기준은 총 사업소요액의 50% 보조(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임.
- 지원 한도액은 일반농식품 가공산업은 300백만 원, 전통주육성과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은 각각 200백만 원임.

표 3-55.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	2013	2014	2015년 이후
합 계	5,927	3,033	3,033	3,033	6,066
보 조	5,927	3,033	3,033	3,033	6,066

자료: 지자체 자료 재정리

(ㄹ) 지원 체계

-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전 계획서를 공모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신청 대상이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 신청하고,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검토 후 도에 사업을 신청하고 도에서는 사업계획 심사평가표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함.

(ㅁ)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는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을 평가·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수립하여 추진함. 구체적으로는 분기별 1회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른 추진 지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교부 목적에 따른 사용 실태를 점검함.

(ㄴ) 성과 목표 및 지표

- 해당 관련 자료 없음.

라. 전남의 마을반찬산업 육성사업

- 마을반찬산업 육성사업은 단일사업임.

(1) 사업 목적 및 내용

- 전라남도의 마을반찬산업 육성사업은 여성단체 중심의 마을반찬 산업화를 통해 위생적이고 규모화 된 제조시설 구축으로 다양한 마을반찬업체를 육성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지역 우수 농·특산물 원료사용 확대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임.
- 사업 대상은 반찬제조·유통에 필요한 시설, 저온저장고, 위생처리시설, 포장기계 등 단순지원(H/W) 사업임.

(ㄷ)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마을부녀회, 작목반 등 기존 반찬 제조·판매 단체 및 신규 희망 단체, 녹색농촌체험마을, 행복마을, 정보화마을 등 관광객이 다수 왕래하는 마을, 지역 농특산물 부가가치 제고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단체 등임.

(ㄷ) 지원 개요

- 지원 기준은 개소 당 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로 100백만 원을 지원하고, 총 지원 금액은 1,000백만 원(도비 200, 시·군비 500, 자담 300) 임.

(ㄷ) 지원 체계

- 마을반찬산업 육성사업은 사전 계획서를 공모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신청 대상이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 신청하고, 도에서는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함.

(ㄷ)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마을단위 반찬사업 관련 시설물 및 장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실하게 관리하고, 사업 운영상황을 수시 확인·점검하여 부실운영 시 보조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함.

(ㄷ) 성과 목표 및 지표

- 해당 관련 자료 없음.

마. 제주의 식품전용 파일럿 플랜트(시험생산)운영사업

- 식품전용 파일럿 플랜트(시험생산)운영사업은 단일사업임.

(㉠) 사업 목적 및 내용

- 제주도의 식품전용 파일럿 플랜트(시험생산)운영사업은 최신 식품가공 인 프라 활용을 통하여 도내 식품업체의 제품생산을 지원하고 고품질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도내 식품기업체에 대한 컨설팅, 식품 정보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 사업 대상은 건조기, 착즙기, 농축기, 분쇄기 등 장비이용 신제품 제품 개발 및 생산지원 등 단순지원(H/W) 사업임.

(㉡)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있으나 생산설비가 없어 신제품 개발 과 생산이 어려운 도내 영세한 소규모 식품가공업체가 해당됨.

(㉢) 지원 개요

- 지원 기준은 도비 100%로 2개소에 120백만 원을 지원함.

(㉣) 지원 체계

- 식품전용 파일럿 플랜트(시험생산)운영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 임. 도에서 사업지침을 확정하고,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보조금 교부신청을 통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 성과 관리

- 해당 관련 자료 없음.

(㉥) 성과 목표 및 지표

- 해당 관련 자료 없음.

바. 제주의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사업

-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사업은 단일사업임.

(가) 사업 목적 및 내용

- 제주도의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사업은 식품제조과정의 위해요소 사전차단 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로 대형매장 납품, 수출 등 판로를 확대하고, 도내 열악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HACCP시설 지원으로 가동율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 사업 대상은 식품가공업체 HACCP 위생장비 지원하는 단순지원(H/W) 사업임.

(나)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이 해당됨.

(다) 지원 개요

- 지원 기준은 보조 60%, 자부담 40%로 2개소에 167백만 원을 지원함.

(라) 지원 체계

- 식품전용 파일럿 플랜트(시험생산)운영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 도에서 사업지침을 확정하면, 사업을 신청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마) 성과 관리

- 해당 관련 자료 없음.

(h) 성과 목표 및 지표

- 해당 관련 자료 없음.

사. 제주의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사업

-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사업은 단일사업임.

(㉠) 사업 목적 및 내용

-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사업은 식품제조에 필요한 시설·장비 보강 지원으로 식품업체의 초기부담 해소와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식재료 가공 및 식품제조업체의 시설지원으로 가동율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확대하는 것이 목적임.

- 사업 대상은 식품 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및 지원 등 단순지원(H/W) 사업임.

(㉡) 사업 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이 해당됨.

(㉢) 지원 개요

- 지원 기준은 보조 60%, 자부담 40%로 5개소에 250백만 원을 지원함.

(㉣) 지원 체계

-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 도에서 사업지침을 확정하면, 사업을 신청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㉓) 성과 관리

- 해당 관련 자료 없음.

(㉔) 성과 목표 및 지표

- 해당 관련 자료 없음.

아. 전북의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단일사업임.

(㉑) 사업 목적 및 대상

- 전라북도의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를 위한 산·학·관·연이 주도하는 시스템 농업을 구축하여 농식품산업 육성하고, 지역의 특화품목을 생산·가공·유통·R&D·체험관광이 결합된 지역농업 발전모델로 육성하여 향후 국가식품 클러스터(NFC)와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사업 대상은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S/W), 생산·유통·가공기반 구축 경쟁력 강화(H/W), 산업화 및 마케팅(S/W), 지역식품과 연계한 체험관광 활성화(S/W)으로 하드웨어(H/W) 지원과 소프트웨어(S/W) 지원을 아우르는 패키지형(package type:P) 사업에 해당됨.

(㉒) 사업 대상자

- 사업의 대상자는 시장·군수, 생산자단체(사업단), 가공업체 등이고, 사업 대상은 14개 품목(1시군 1품목)임.
 - '10년선정(9품목) : 남원 허브, 완주 감,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장수 오미자, 임실 치즈, 순창 장류, 고창 복분자, 부안 오디빵
 - '13년선정(5품목) : 전주 우리밀, 군산 흰찰쌀보리, 익산 기능성쌀, 정읍

지황, 김제 고구마

(㉔)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은 세부 사업별로 상이하나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전체 사업비가 931억 원 (광특 447, 도비 175, 시군비 175, 기타 134)이고, 2014년 예산이 24,512백만 원(광특 12,085, 도비 3,852, 시·군비 4,832, 기타 3,743)임.

표 3-56.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12까지	'13년	'14년 계획
사업비	계	93,121	47,681	20,928	24,512
	국고(광특)	44,685	22,550	10,050	12,085
	도비	17,471	9,842	3,777	3,852
	시군비	17,505	8,402	4,271	4,832
	자부담	13,460	6,887	2,830	3,743
사업량		14개품목	9개품목	14개품목	14개품목

자료: 지자체 자료 재정리

(㉕) 지원 체계

- 해당 관련 내용 없음.

(㉖) 성과 관리

- 선정된 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거당 설정 등을 확인함.

- 지원목적 대로 관리·운영여부 및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여부 확인

(b) 성과 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성과 지표는 일자리창출, 농식품기업 매출액 증대, 참여농가 소득 증대, 기업유치, 체험관광객 증대 등 경제적 성과 등으로 측정하는데 시군별 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자체 평가하거나 시군 자체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도 평가 후 심의 확정하는 방향으로 시행함.
- 생물산업진흥원 등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시군 자체평가서 평가

3. 항목별 사업 분석

3.1. 분석 기준

- 농식품부, 양 청(농진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6차 산업화 정책들의 유사성과 중복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 표와 같이 선정하였는데, 크게 사업 특성, 지원 방식, 성과평가로 구분됨.
 - 사업 특성에 따른 세부 분석 기준으로는 사업 유형, 사업 대상이 해당
 - 지원 방식에 따른 세부 분석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 지원 규모, 국고 보조율, 지원 체계가 포함
 - 성과 평가에 따른 세부 분석 기준으로는 성과 지표 내용, 사후관리 내용이 포함

표 3-57. 사업별 유사·중복성 분석 기준

기준		세부 유형
사업 특성	사업 유형	2차(제조·가공), 3차(음식·관광·유통), 복합
	사업 대상 ¹⁾	단순지원(H/W, S/W, H/W+S/W), 패키지형(package type)
지원 방식	지원 대상 ²⁾	농업인(조직), 농업법인, 민간업체, 마을단위 공동체, 지방자치단 체장 등 공공기관(사업단), 제한없음
	지원 규모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 1억 원, 1억 원 ~ 5억 원, 5억 원 ~ 10억 원, 10억 원 ~ 30억 원, 30억 원 초과
	국고 보조 율 ³⁾	30% 미만, 30% ~ 50%, 50% ~ 70%, 70% 초과
	지원 체계	중앙정부 선정 및 사업 주도, 사전 계획서 공모·심사
성과 평가	성과 지표 내용	매출액(소득액) 증가율, 일자리 증가율, 사업지원 대상 수, 영업 이익율, 연차별 누계 자담확보 비율, 주민만족도, 인구 증가, 체 험관광객, 창업자금 지원실적
	사후 관리 내용 ⁴⁾	실적 평가 후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사업목적 불일치 시 조 취, 부실 경영체 참여 제한, 차체적인 개선방안 모색

주 1) 사업 대상 중 단순 지원은 세부 사업들이 시설이나 장비 등의 하드웨어(H/W)를 지원하거나 조직 육성이나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S/W)를 지원하거나 혹은 양자를 지원하는 경우와 세부 사업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연계되어 지원하는 패키지형으로 구분됨.

2) 지원 대상 중 농업인(조직)에 농협이 포함되고, 농업법인에는 영농법인, 영농 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이 포함되며, 민간업체에는 개인기업, 주식회사, 단체, 농업과 무관한 NGO & 조합 등이 포함됨.

3) 국고에는 국비와 지자체가 포함됨.

4) 실적 평가 후 인센티브·패널티 부여의 세부 내용으로는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우수사업단 추가지원, 가산점 부여 등이 포함되고, 사업목적 불일치 시 조취에는 시정명령, 대출(지원)중지, 자격취소 등이 포함됨.

3.2. 분석 결과

3.2.1. 사업 특성

가. 사업 유형

- 사업들을 사업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가 다음 표에 제시되어있는데, 농식품부와 농진청 사업은 2차, 3차, 복합 사업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음. 한편, 산림청 사업은 3차 산업으로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자연휴양림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지자체는 2차와 복합 사업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 주체별 분포가 다른 모습을 보임.
- 사업 유형별로 해당 사업들을 분석하여보면 유사성 또는 중복성을 가진 사업들이 2차 산업 지원, 3차 산업 지원, 복합 지원 사업별로 각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가공업체의 시설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특성을 보임.
 - 2차 산업 지원사업 중 가공업체의 창업 지원 사업
 - 농식품부: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 농진청: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
 - 2차 산업 지원사업 중 가공업체의 시설지원 사업
 - 농식품부: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중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
 - 지자체: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 3차 산업 지원사업 중 관광상품 육성 사업

- 농식품부: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 복합 산업 지원사업 중 지구(클러스터) 조성 사업
 - 농식품부: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 지자체: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표 3-58. 사업 유형별 분석 결과

분류		사업명
2차	농식품부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일반농산촌개발사업(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농진청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마을반찬산업 육성사업, 식품전용 파일럿 플랜트운영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3차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농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촌민박),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
	농진청	농촌교육농장,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복합	농식품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농촌체험·관광 지원(농촌테마공원조성),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

		후단지 개보수 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 산업화 지원), 말산업육성사업 (승마시설(공공/민간), 승용마 구입,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제주마 혈통보존, 전문인력양성 기관, 말산업 특구),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 농촌공동체 회사 육성사업 ,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농진청	지역농업특성화사업 ,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지자체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주: 볼드체는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대표 사업명임.

나. 사업 대상

- 사업 대상은 크게 단순 지원과 패키지지원으로 구분되는데,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는 양쪽의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었음. 특히, 지자체의 경우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단순 하드웨어 지원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6차 산업화 정책 일선에 있는 지자체들이 시설 중의 하드웨어 지원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임.
- 상당 부분의 사업들이 단순 지원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들은 패키지 지원사업과 달리 단편적인 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전체적인 효과 제고에 한계를 가짐.

표 3-59. 사업 대상별 분석 결과

분류			사업명
단순지원	H/W	농식품부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농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농촌체험·관광 지원(농촌테마공원조성)), 말산업육성사업 (승마시설(공공/민간), 승용마 구입,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제주마 혈통보존)

	지자체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마을반찬산업 육성사업, 식품전용 파일럿 플랜트운영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S/W	농식품부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말산업육성사업(전문인력양성기관),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농진청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지역농업특성화사업
H/W + S/W	농식품부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육성), 일반농산촌개발사업(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농촌민박),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패키지 지원 (Package)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농진청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 시범사업, 농촌교육농장,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지자체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주: 볼드체는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대표 사업명임.

3.2.2. 지원 방식

가. 지원 대상

- 지원 대상별로 분류한 결과, 농업인(조직), 농업법인, 민간업체, 마을단위 공동체, 공공기관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어 지원 대상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사업별로 특정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가 적어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에서 특정 주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성은 크지 않은 한계가 지적될 수도 있음.

표 3-60. 사업 지원 대상별 분석 결과

분류		사업명
농업인 (조직)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관광농원, 농촌민박),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농촌체험·관광 지원(농촌테마공원조성)), 딸산업육성사업(승마시설(공공/민간), 승용마 구입,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농진청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 농촌교육농장,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산림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자체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농업법인	농식품부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말산업육성사업(승마시설(공공/민간)), 승용마 구입,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관광농원)
	농진청	농촌교육농장
	지자체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
민간업체	농식품부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농촌체험·관광 지원(농촌테마공원조성))
	지자체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식품전용 파일럿 플랜트운영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지역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
마을단위 공동체	농식품부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농진청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지자체	마을만찬산업 육성사업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기관(사업단)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일반농산촌개발사업(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 농촌자

		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농촌체험·관광 지원(농촌테마공원조성)), 말산업육성사업 (승마시설(공공/민간),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제주마 혈통보존, 전문인력양성기관, 말산업 특구),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사업
	농진청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자체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제한없음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농촌관광휴양단지)

주: 볼드체는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대표 사업명임.

나. 지원 규모

- 6차 산업화정책들을 지원 규모별로 분류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1억 원 ~ 30억 원 초과에 범위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 이를 통해 해당 정책 사업들이 사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지자체의 사업들은 전북의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원 대상별 5억 원 미만의 소형 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특성을 가짐. 이는 예산 규모에 제약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관내 민원을 해결해야하는 지자체 사업의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되지만, 사업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임.

표 3-61. 사업 지원 규모별 분석 결과

분류		사업명 ^{1) 2)}
2천만원 미만	농식품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2천만원 ~ 1억원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 단구성 지원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농촌공동체 회사 육성사업
	농진청	농촌교육농장,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지자체	마을만찬산업 육성사업, 식품전용 파일럿 플랜트운영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1억원 ~ 5억원	농식품부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말산업육성사업(승용마 구입),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농진청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 지역농업특성화사업,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산림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자체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5억원 ~ 10억원	농식품부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외식업체육성), 말산업육성사업 ³⁾ (승마시설(민간), 제주마 혈통보존, 전문인력양성기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농진청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
10억원 ~ 30억원	농식품부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일반농산촌개발사업(지역창의 아이디어

		어 사업),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관광농원), 말산업육성사업(승마시설(공공),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지자체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30억원 초과	농식품부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농식품시설현대화,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육성),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농촌체험·관광 지원(농촌테마공원조성))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

주1) 볼드체는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대표 사업명임.

2) 농식품부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과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농촌관광휴양단지, 농촌민박), 말산업 육성사업(말산업 특구), 지자체의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별 예산 규모 자료가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함.

3) 농식품부의 말산업 육성사업(승용마 구입)은 용자형태로 지급함.

다. 국고 보조율

○ 6차 산업화 사업들의 국고(국비 및 지방비)의 보조율을 보면 최소 30% 이상 사업부터 70% 초과 사업까지 분포하고 있음. 특히, 양청과 지자체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고 보조율이 50%를 초과하고 있어 농식품부의 사업들과 대조를 보임.

○ 한편, 보조가 아닌 용자사업으로는 농식품부의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관광농원, 농촌민박), 말산업육성사업(승용마 구입) 등이 있는데, 보조 사업에 비해 사업 개수나 규모가 적어 보조보다 용자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정책 사업 자금을 당해년도에 모두 소진하는 보조사업과 달리 용자사업

은 저리로 대상자에게 사업 자금을 융자하기에 동일한 사업 예산으로 보다 많은 사업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사용 후 자금을 다시 갚아야하는 특성으로 보다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장점을 보유

- 이에 따라 농식품부를 포함한 상당수의 정부 부처의 정책 사업을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

표 3-62. 사업 지원 국고 보조율별 분석 결과

분류		사업명 ¹⁾
30% 미만		해당 사업 없음
30% ~ 50%	농식품부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말산업육성사업(승마시설(민간))
	지자체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50% ~ 70%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농촌체험·관광 지원(농촌테마공원조성)), 말산업육성사업 ²⁾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농축협), 제주마 혈통보존, 전문인력양성기관)
	농진청	농촌교육농장,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지자체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마을반찬산업육성사업,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70% 초과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일반농산촌개발사업(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말산업

		육성사업(승마시설(공공),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지자체)),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농진청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 시범사업,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 ³⁾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⁴⁾
	지자체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 식품전용 파일럿 플랜트운영 지원사업,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주1) 볼드체는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대표 사업명임.

- 2) 농식품부의 말산업 육성사업(말산업 특구)은 지원 대상별 국고 보조율 자료가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함.
- 3) 산림청의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지원 대상별 국고 보조율이 국립(국비 100%), 공립(국비 50%, 지방비 50%)로 상이함.
- 4)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지원 대상별 국고 보조율이 국가(국비 100%), 지자체(국비 50%, 지방비 50%), 개인(용자 80%, 자부담20%)로 상이함.

라. 지원 체계

- 사업의 지원체계별로 분류한 결과, 중앙정부가 선정 및 주도를 하는 사업이 지자체에서 공모하여 상향식으로 진행하는 사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등이 주도하여 상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중 농식품부 추진 사업은 일반농산촌개발사업(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농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한정되고, 양 청의 사업으로는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전부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은 사업 기획 및 추진이 보다 빠른 장점이 있으

나, 농촌지역이 자생적으로 발전해나가는 6차 산업화 정책의 취지를 희석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사업 운영의 역할이 지나치게 중앙 부처에 집중되어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가 있음.

표 3-63. 사업 지원 체계별 분석 결과

분류		사업명 ^{1) 2)}
중앙정부 선정 및 사업주도	농식품부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 말산업육성사업(승마시설(공공/민간), 승용마 구입,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제주마 혈통보존, 전문인력양성기관, 말산업 특구),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농진청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 지역농업특성화사업,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시범사업, 농촌교육농장,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
	지자체	식품전용 파일릿 플랜트운영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사전 계획서 공모·심사	농식품부	일반농산촌개발사업(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농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농촌체험·관광 지원(농촌테마공원조성))

산림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자체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마을반찬산업 육성사업

주1) 볼드체는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대표 사업명임.

2) 농식품부의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전북의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3.2.3. 성과 평가

가. 성과 지표 내용

- 대부분의 6차산업화 정책 사업들이 성과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성과 지표별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사업 대상의 실질 성과지표(매출액 또는 소득액 증가율, 일자리 증가율, 영업이익율 등)를 적용하는 사업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성과지표와 사업의 연관성과 측정의 용이성에 의한 결과로 생각됨.
 - 다만, 지표의 근거 자료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회계학적 기법 등을 적용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
- 반면에 일부 성과 지표의 경우 현실적인 성과 반영 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지원 대상수와 창업자금지원실적 지표는 사업의 실제 성과보다는 사업 추진 결과에 치중한 지표라는 주장이 제기
 - 만족도와 이용자수 지표는 조사과정에서의 객관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연차별 누계자담확보 비율과 인구증가 지표는 사업 성과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 또한 사업들이 복수의 성과 지표를 적용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성과지표들이 나열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장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었음.
-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많아지면 관련 근거 자료 준비 등에 따른 사업 대상자의 부담이 커지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업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
- 다수의 사업들이 매출액(소득액) 증가율과 일자리 증가율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두 지표는 일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양자를 병행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또한 농진청의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은 사업 1년차에는 커뮤니티 활동실적과 네트워크 참여 경영체 수, 2년차에는 농가소득증가율(%), 일자리창출(명), 구성원 만족도, 네트워크 참여 경영체 수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과도하게 많은 지표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 중

표 3-64. 사업 성과 지표 내용별 분석 결과

분류		사업명 ^{1) 2)}
매출액(소득액) 증가율	농식품부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지역 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농촌체험·관광 지원(농촌테마공원조성)),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농진청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지자체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일자리 증가율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농촌체험·관광 지원(농촌테마공원조성)),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농진청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사업지원 대상 수	농식품부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말산업육성사업(승마

		시설(공공/민간), 승용마 구입,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제주마 혈통보존, 전문인력양성기관, 말산업 특구), 로 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농식 품모태펀드 출자사업
	농진청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지자체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영업이익 율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연 차 별 누계 자 담 확 보 비율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만족도 (주민, 이 용자)	농식품부	일반농산촌개발사업(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농촌공 동체회사 육성사업,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농진청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농촌교육농장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인구 증 가	농식품부	일반농산촌개발사업(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이용자수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농진청	농촌교육농장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자체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창업자금 지원실적	농식품부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주1) 볼드체는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대표 사업명임.

- 2) 농식품부의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농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촌민박),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강원도의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경남의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전남의 마을반찬산업 육성사업, 제주의 식품전용 파일럿 플랜트(시험생산)운영사업,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은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나. 사후 관리 내용

- 성과 평가 후 사후 관리하는 내용들을 유형별로 정리한 결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 그 중에서도 부실 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벌칙 규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6차 산업화 사업이 규제 중심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음.
- 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기존의 규제나 벌칙위주의 사후 관리에서 나아가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관리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 건설적인 사후 관리 방법으로 평가됨.
 - 예를 들어, 농식품부의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과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농진청의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등은 자체적인 워크샵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등의 노력이 진행 중

표 3-65. 사업 사후 관리 내용별 분석 결과

분류	사업명 ^{1) 2)}
실적 평가 후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농식품부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6차산업화 지역퀵소사업 사업단구성 지원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특화 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농촌체험·관광 지원(농촌테마공원조성)), 말산업육성사업(승마 시설(공공/민간), 승용마 구입, 거점 승용마 조련시

		설, 제주마 혈통보존, 전문인력양성기관, 말산업 특구),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농진청	지역농업특성화사업,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사업목적 불일치 시 자금조취	농식품부	일반농산촌개발사업(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말산업육성사업(승마시설(공공/민간), 승용마 구입,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제주마 혈통보존, 전문인력양성기관, 말산업 특구),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농진청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지자체	마을만찬산업 육성사업
부실 경영체 참여 제한	농식품부	일반농산촌개발사업(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자체 개선방안 모색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농진청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주1) 볼드체는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대표 사업명임.

- 2) 농식품부의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농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농진청의 농촌교육농장, 산림청의 치유의 숲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강원도의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 경남의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전남의 마을만찬산업 육성사업, 제주의 식품전용 파일럿 플랜트(시험생산)운영사업,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전북의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3.3. 검토 사항

3.3.1.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사업이 다양한 기관들이 추진하다보니, 일부 사업이 유사한 경우가 발견되어 조정이 필요함. 먼저 2차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농식품부의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과 농진청의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은 가공업체의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 유사성이 제기됨. 또한, 가공업체의 시설 지원 사업도 농식품부와 지자체들이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함.
 - 대표적으로 농식품부의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중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 지자체의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한우고기 가공·제조 판매시설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사업,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사업 등이 해당

- 3차 산업 지원사업에서도 농식품부의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과 산림청의 치유의 숲 조성사업, 자연휴양림이 서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또한, 복합산업 지원사업 중 지구(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의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과 지자체의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등이 해당

3.3.2. 하드웨어 지원 중심의 단순 사업 지양

- 지자체를 중심으로 업체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하는 단순 하드웨어 지원 사업이 다수 시행되고 있음. 또한, 하드웨어지원과 소프트웨어 지원이 병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개별 세부 사업들이 종합적인 목적성 없이 단순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전체의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창출하고 있지 못함.
 - 지자체 사업의 경우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단순 하드웨어 지원 사업에 치중
- 농업의 6차 산업화가 해당 농촌 지역의 부존 자원들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시키는 정책임을 감안할 때, 기존의 단순 지원사업들을 하나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패키지 지원 사업 형태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3.3.3. 지원대상별 맞춤형 사업 모색 필요

-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들은 농업인(조직), 농업법인, 민간업체, 마을단위 공동체, 공공기관별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개별 사업의 지원 대상의 폭이 매우 넓은 특징도 보임. 이는 지원 대상자들의 선택 폭이 넓은 장점을 가지지만, 역으로 사업별로 특정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맞춤형 사업이 적어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에서 특정 주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음.
- 또한, 사업의 대상별 지원 규모도 1억 원 ~ 30억 원 초과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사업별 특성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특히, 지자체의 사업들은 전북의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원 대상별 5억 원 미만의 소형 사업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 규모에 제약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관내 민원을 해결해야하는 지자체 사업의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되나 사업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 내포

- 이는 그동안 6차 산업화 정책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오는 과정에서 사전나열식으로 사업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에 치중해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 앞으로는 지원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들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3.3.4. 국고 보조율 조정과 용자 사업 확대

-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들의 국고(국비 및 지방비) 보조율은 최소 30% 이상 사업부터 70% 초과 사업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양 청과 지자체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국고 보조율이 절반을 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용자 보다는 보조 사업에 치중하는 면이 발견되고 있어 사업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과 지원 대상자들의 책임감과 자조 능력 배양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보조 사업의 경우, 용자 사업에 비해 사업 예산을 사업시기에 모두 소진시키고 지원 대상자의 수가 더 적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내포
 - 또한, 보조 사업 대상자들은 용자 사업 대상자들에 비해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자립하기 위한 동기 부여가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
- 농식품부를 포함한 상당수의 정부 부처 사업들이 보조 사업에서 용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도 용자 사업의 비중을 보다 높일 필요성이 있음.
 - 용자사업은 농식품부의 식품·외식융합자금사업(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

업체육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관광농원, 농촌민박), 말산업육성사업(승용마 구입) 등이 해당

3.3.5. 상향식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 개선

-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들의 지원 체계를 분석한 결과,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이 효율적이고 빠른 장점이 있지만, 농촌지역이 자생적으로 발전해나가는 6차 산업화 정책의 취지를 희석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사업 운영의 역할이 지나치게 중앙 부처에 집중되어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가 있음.
- 농업 6차 산업화 정책을 시작한지도 상당 시간이 지난 현 상황에서 6차 산업화 주체들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보다 현장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향식 사업 체계를 보다 많이 도입할 필요가 있음.

3.3.6. 성과 평가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개선

- 사업의 성과 지표들이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일부 지표의 경우 현실적인 성과 반영 정도가 떨어지거나 과도하게 많은 지표가 요구되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사업지원 대상수와 창업자금지원실적 지표는 사업의 실제 성과보다는 사업 추진 결과에 치중한 지표라는 우려가 있고, 만족도와 이용자수 지표는 조사과정에서의 객관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연차별 누계자담확보 비율과 인구증가 지표는 사업 성과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많아지면 관련 근거 자료 준비 등에 따른 사업

대상자의 부담이 커지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업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다수의 사업들이 매출액(소득액) 증가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자리 증가율을 성과지표로 병행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 중

- 사후 관리 시스템 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결과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규제 중심의 방식들이 더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현장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성과지표와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다행히 농식품부의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과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농진청의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등은 자체적인 워크샵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타 사업에서도 벤치마킹이 필요

4. 추진실태 분석

4.1. 조사 및 분석 개요

4.1.1. 조사 개요

-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에 대한 시행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2회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먼저 6차 산업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현장 면담 조사와 인터넷 메일을 통한 서면 조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음.¹³

- 설문조사 대상자는 광역 지자체와 양 청(농촌진흥청, 산림청)의 해당 사업 담당자, 관련 연구자, 사업 수혜자의 3개 그룹으로 나뉘서 각각 3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정
- 다음으로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 분석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면담조사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음.
 - 설문조사 대상자는 기초 및 광역 지자체의 관련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150명, 22명을 선정
- 2회에 걸쳐서 진행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설문지를 다시 걸러낸 다음 이를 대상으로 결과 분석을 진행하였음.
 - 6차 산업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은 AHP 분석과 빈도분석 (analysis of frequency)을 병행하여 적용
 -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는 빈도분석을 적용하여 분석 진행

4.1.2. 이론적 방법론

- 6차 산업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의 경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 도출을 위해 AHP 분석을 적용하였음. AHP 분석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고,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기법으로 1970년대 초 토마스 사티(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정성적인 다기준 의사결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

¹³ 설문조사표는 부록 1과 부록 2를 참고할 것.

- AHP 기법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평가요소들을 동질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다수의 수준으로 계층화한 후, 각 수준별로 분석·종합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함. AHP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계층화하고, 계층별 요소들에 대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는데 있음.
- 이 기법은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분해하고 구조화한다는 점, 그리고 평가요소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와 대안들의 선호도를 비율척도로 측정하여 정량적인 형태로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간결한 적용절차에도 불구하고 척도선정, 가중치 산정절차, 민감도 분석 등에 사용되는 각종 기법이 실증분석과 엄밀한 수리적 검증과정을 거쳐 채택된 방법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높게 평가받고 있음.
-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됨.
 - Step1) 의사결정요소들을 계층화하는 단계로써 최상위 계층에는 가장 포괄적인 의사결정의 목표가 주어지고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보다 상세한 의사결정 요소들이 분해됨. 이때 계층간의 의사결정 요소들은 종속적 관계, 같은 계층의 요소들끼리는 독립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Step2) 의사결정요소들을 두 개씩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하게 되는데 의사결정자의 선호(preference)정도를 Saaty에 의해서 제안된 9점 척도에 의해서 적절한 수치로 수량화함.
 - Step3) 고유 벡터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요소들 간의 상대적 가중치(weight)를 추정함. 즉, $A \cdot W = \lambda_{max} \cdot W$ (여기서 A 는 쌍대비교로 얻어진 정방행렬을 나타내고, λ_{max} 는 A 의 최대고유치(maximum eigenvalue), W 는 고유벡터이다)의 식을 통해 고유벡터 W 가 구해지면 W 의 각각의

성분을 $\sum W_i$ 로 나눔으로써 정규화(normalized)된 가중치를 얻을 수 있음.

- Step4) AHP의 마지막 단계는 최하위 계층에 있는 대안들의 상대적 비중 또는 우선순위를 구하기 위해 각 계층에서 계산된 평가기준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aggregation)하는 과정임. 최상위 계층에 있는 의사결정 문제의 가장 일반적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최하위 계층에 있는 대안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안들의 종합가중치(composite relative weights)를 구하는 단계임. 대안의 종합가중치는 $W_i = \sum(w_j)(u_{ij})$ 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음(W_i 는 i 번째 대안의 종합가중치이고 w_j 는 평가기준 j 의 상대적 가중치, u_{ij} 는 평가기준 j 에 대한 i 번째 대안의 가중치를 각각 의미한다). 이들 대안의 종합가중치는 대안의 상대적 비중 또는 우선순위라고도 하며, 대안 선택 또는 자원배분의 기초를 제공함.

그림 3-4. AHP 이론의 개요

AHP 분석에 있어서 이상적인 쌍대비교가 수행되었다면 a_{ik} , a_{kj} , a_{ij} 의 경우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함.

$$a_{ik} \times a_{kj} = a_{ij}$$

n 개의 요소를 고려하는 문제에서 AHP 고유치방법을 적용할 경우 이상적이라면 위의 관계를 정확히 만족시키는 비교로 쌍대비교를 수행하여 쌍대비교행렬 A 를 얻게 됨. 각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내는 고유벡터를 w 라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A \cdot w = n \cdot w$$

이때 $w = [w_1, w_2, \dots, w_n]$ 는 쌍대비교행렬 A 의 우측 고유벡터

실제의 쌍대비교에 있어서 상기의 관계를 정확히 만족하기는 어렵고 이상적인 쌍대비교에서 다소 벗어난 비교를 적용한 행렬을 A' 이라 하고 이 행렬의 가중치에 대한 추정치 w' 은 다음을 통해 구할 수 있음.

$$A' \cdot w' = \lambda_{\max} \cdot w'$$

λ_{\max} 는 A' 의 고유값 중 최대값

이상적인 경우와 이상적인 경우에서 벗어난 쌍대비교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n 과 λ_{\max} 를 비교하는 일관성 검토를 할 수 있음. 이때 적용되는 일관성지수는 쌍대비교의 조합들 중에서 비율척도의 관계가 이상적인 비교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대표적으로 나타냄. Saaty가 제안한 쌍대비교 행렬의 일관성 지수와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CI = \frac{\lambda_{\max} - n}{n - 1}$$

$$CR = \frac{CI}{RI} \times 100\%$$

CI 가 일관성 지수이며 CR 은 비일관성 비율임. RI 는 난수지수¹⁴이며 다음과 같음.

n	1	2	3	4	5	6	7	8	9	10
난수 지수	0	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49

비일관성 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일관성이 유지된 쌍대비교가 수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Saaty의 연구에 의하면 비일관성 비율이 10% 이내에 들 경우 쌍대비교행렬이 일관성이 있다고 규정하였고, 20% 미만일 경우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일관성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하였음.¹⁵

4.2. 분석 결과

4.2.1. 6차 산업화 정책

가. 샘플 현황

- 6차 산업화 정책에 대한 AHP 분석 결과 문항별로 7명 ~ 17명의 유효 샘플이 걸러졌기에, 이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음.¹⁶ 부문별로 보면 업계 샘플의 설문지 응답에 대한 유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AHP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결과로 추정됨.

14 Random Index.

15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에서는 일관성비율의 허용치를 0.15로 설정하였으며 0.15를 초과하는 응답자에 대해서는 환류과정을 통하여 응답일관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음.

16 AHP 분석 결과의 CR(consistency ratio) 값은 모두 0.1이하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일관성 유지에 문제가 없음.

표 3-66. AHP 분석 문항별 대상자 및 유효자 현황

		문항1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1	2	3	4	5	6		
업계	대상자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유효자	11	9	12	12	12	12	12	12	10	8
연구계	대상자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유효자	8	9	17	17	17	17	17	17	8	9
지자체	대상자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유효자	11	7	17	17	17	17	17	17	9	8

주: 문항 2는 단순 설문으로 AHP 분석이 아닌, 빈도 분석을 실시

나. 세부 분석 결과

- 6차 산업화 정책을 2차와 3차로 나눠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육성할지에 대해서는 3개 부문 모두 특정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전체 산업을 고르게 육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차 순위 응답으로는 2차 가공산업을 3차 서비스업보다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이에 따라,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의 방향을 1·2·3차 산업을 고르게 육성하되 2차 가공산업에 상대적으로 더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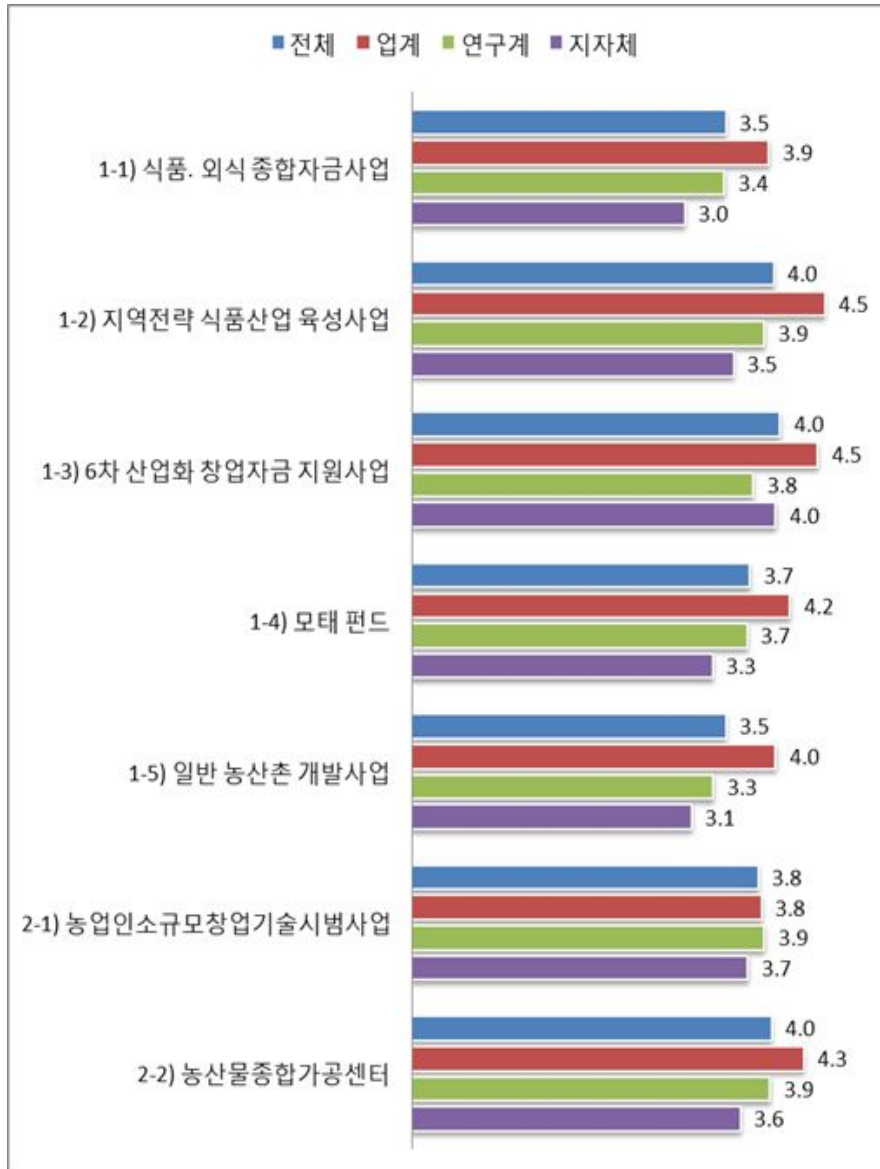
표 3-67. 사업추진 대상의 우선순위

	2차 가공산업 우선 육성	3차 서비스업 우선 육성	1·2·3차 산업 고르게 육성
업계	0.397	0.147	0.457
연구계	0.365	0.156	0.479
지자체	0.256	0.235	0.509

-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의 세부 사업별 필요성을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분석한 결과가 다음 3개의 <그림 3-5>, <그림 3-6>, <그림 3-7>에 제시되어 있음.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모든 정책 사업들이 보통(3점)

- ~ 매우필요(5점) 구간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사업별 상대적 필요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세부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는 매우 불필요(1점), 불필요(2점), 보통(3점), 필요(4점), 매우 필요(5점)로 구성
 - 전체 기준으로 필요(4점)이상에 해당되는 2차 산업 중점 지원 사업들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사업과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 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 사업이 해당
 - 필요(4점)이상에 해당되는 3차 산업 중점 지원 사업들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6차 산업화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사업이 해당
 - 필요(4점)이상에 해당되는 복합 지원 사업들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특성화사업과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이 해당
- 먼저 2차 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사업과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 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제기되었음.
- 부문별로 보면, 업계가 농촌진흥청의 농업인소규모 업기술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연구계나 지자체보다 높은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사업과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 사업에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시
 - 연구계는 농촌진흥청의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을 업계나 지자체보다 높은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과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에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
 -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 사업에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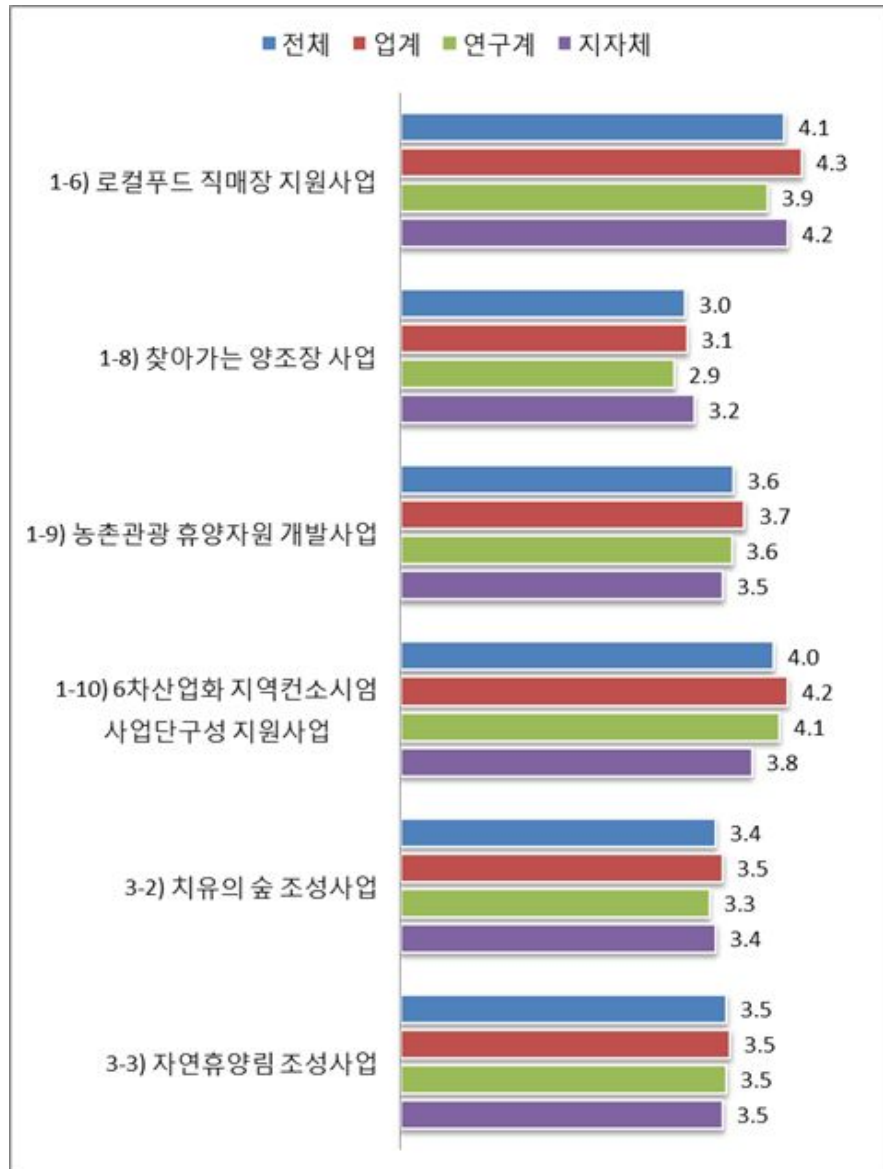
그림 3-5. 세부 사업별 필요성: 2차 산업



주: 사업 명의 앞 숫자 중 1은 농식품부, 2는 농진청, 3은 산림청의 사업을 지칭하고, 뒤의 숫자는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일련번호임.

- 3차 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과 6차 산업화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제기되었음.
- 부문별로 보면, 업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과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 사업, 6차 산업화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사업, 산림청의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서 연구계나 지자체에 비해 높은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에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
- 연구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 산업화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사업에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
-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서 업계나 연구계보다 높은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에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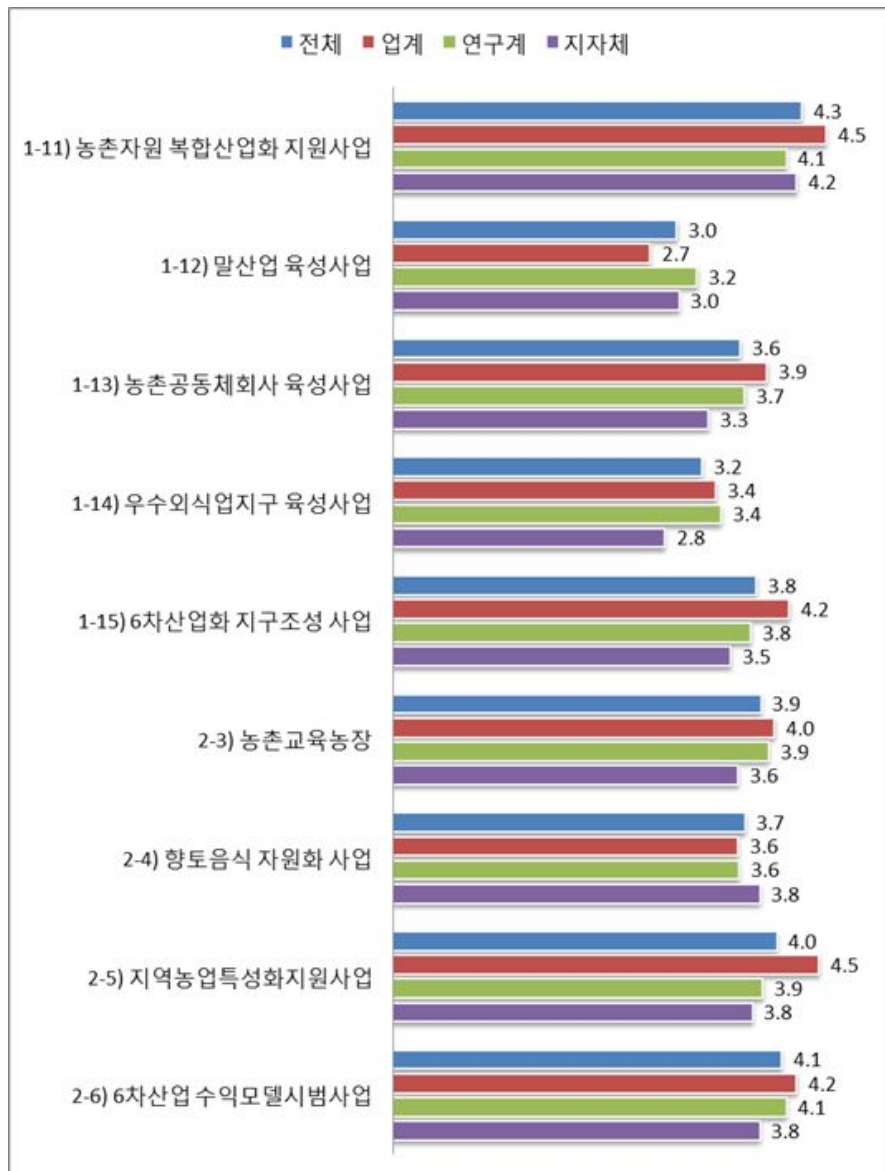
그림 3-6. 세부 사업별 필요성: 3차 산업



주: 사업 명의 앞 숫자 중 1은 농식품부, 2는 농진청, 3은 산림청의 사업을 지칭하고, 뒤의 숫자는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일련번호임.

- 복합 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농촌진흥청의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제기되었음.
- 부문별로 보면, 업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촌교육농장 사업, 지역농업특성화사업,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에서 연구계나 지자체보다 높은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
- 연구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 육성사업이 업계나 지자체보다 높은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농촌진흥청의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에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
- 지자체는 농촌진흥청의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에서 업계나 연구계보다 높은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

그림 3-7. 세부 사업별 필요성: 복합 산업



주: 사업 명의 앞 숫자 중 1은 농식품부, 2는 농진청, 3은 산림청의 사업을 지칭하고, 뒤의 숫자는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일련번호임.

-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들을 시행하는 주체들 중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분석 결과, 업계는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가 개별 사업을 시행하거나 농식품부의 사업 기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행 방식이 가장 적절한 것(0.447)으로 응답하였음.
- 반면, 연구계는 농식품부가 농식품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 기획하여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가 사업 시행만 담당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나(0.286),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은 감독만 하고, 지자체가 사업 기획 및 시행을 주도하는 방식도 차순위로 적절한 것(0.274)으로 응답함.
- 지자체는 농식품부는 감독만하고, 농진청, 산림청이 사업을 기획하여 지자체는 사업 시행만 담당하거나(0.300),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은 감독만 하고, 지자체가 사업 기획 및 시행을 주도하는 것(0.292)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 이러한 차이는 분석 대상들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표 3-68. 사업 시행 주체의 적절성

	현행방식	농식품 총괄	농식품 감독	지자체사업기획
업계	0.447	0.275	0.147	0.132
연구계	0.231	0.286	0.209	0.274
지자체	0.197	0.211	0.300	0.292

- 6차 산업화 정책 사업의 세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음. 먼저 지원 대상 업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업계와 연구계가 모두 대상 업체를 선정한 다음 이를 집중 지원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6차 산업화를 위한 업체

지원이 목표한 성과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반면, 지자체는 가능한 많은 업체를 고르게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는 관할내의 모든 관련 업체들을 관리하여야하는 여건이 반영될 결과로 보여짐.

- 지원 기간은 업계, 연구계, 지자체 모두 다년도 지원을 통한 장기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들을 다년차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지원 사업을 시장 확대와 산업의 생산 부문 경쟁력 제고 중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하는 지를 분석한 결과, 업계, 연구계, 지자체 모두 상품의 소비 확대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이 연구개발(R&D) 사업에 우선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결과는 농업의 6차 산업화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접목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쉽게 적용되는 기술을 가지고 소비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현실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성격과 자부담 비중에 대해서는 업계와 연구계 및 지자체의 의견이 대조를 보였음. 즉, 업계는 보조사업과 자부담 비중 축소를 선호한 반면, 연구계와 지자체는 융자사업과 자부담 비중 확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업계의 응답 결과는 업체들의 여건에 따른 것이기에,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들이 융자 사업과 자부담 비중 확대 중심으로 추진되어 업체의 책임감을 높이고, 한정된 사업 예산의 지원 가능 범위를 넓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표 3-69. 정책 추진 방향

구분	세부 내용		
	대상 업체 선택 후 집중지원 중심	고르게 많은 업체 지원 중심	
업체 선정	업계	0.801	0.199
	연구계	0.624	0.376
	지자체	0.415	0.585
지원 기간	1년 이하 단기 지원 중심	0.163	2년 이상 다년도 지원 중심
	업계	0.163	0.837
	연구계	0.188	0.812
	지자체	0.216	0.784
지원 부문	상품의 소비 확대 중심	0.559	생산부문 경쟁력 제고 중심
	업계	0.559	0.441
	연구계	0.641	0.359
	지자체	0.659	0.341
지원 대상	현장 애로해결 중심	0.572	연구개발 중심
	업계	0.572	0.428
	연구계	0.821	0.179
	지자체	0.725	0.275
사업 성격	보조사업 중심	0.808	융자사업 중심
	업계	0.808	0.192
	연구계	0.422	0.578
	지자체	0.361	0.639
자부담 비중	자부담 비중 축소	0.672	자부담 비중 확대
	업계	0.672	0.328
	연구계	0.357	0.643
	지자체	0.440	0.560

○ 사업의 향후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분석 결과, 6차 산업화 정책의 경우 업계, 연구계, 지자체 모두 기존의 사업들을 4 ~ 6 개 중형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음. 이는 기존의 사

업 수가 너무 많아 일선에서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지자체 등 일선 기관들에서 진행되는 정책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임.

- 일례로 지자체장의 6차 산업화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은 경우, 소형 규모의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들은 농식품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

-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의 규모가 적지 않고 개수도 5개로 많지 않기에 기존의 5개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업계와 지자체에서 제기되었음. 다만, 연구계는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도 일부 통합을 하여 2~3개 중형 사업으로 묶어서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표 3-70. 사업의 구조 조정 방향

구분		세부 내용		
6차 산업화 정책		기존 23개 사업 유지	4~6개 중형사업으로 통합	1~3개 대형사업으로 통합
	업계	0.210	0.527	0.262
	연구계	0.175	0.605	0.221
	지자체	0.247	0.505	0.248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기존 5개 사업 유지	2~3개 중형사업으로 통합	사업 재수립
	업계	0.490	0.194	0.316
	연구계	0.268	0.535	0.197
	지자체	0.414	0.333	0.253

4.2.2.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가. 샘플 현황

-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의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 표와 같음. 소속 기관별로는 기초지자체가 전체의 87.2%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는데, 이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의 사업 추진 일선이 기초 지자체인 점이 반영된 결과임. 직급과 연령은 각각 주무관과 4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3-71.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의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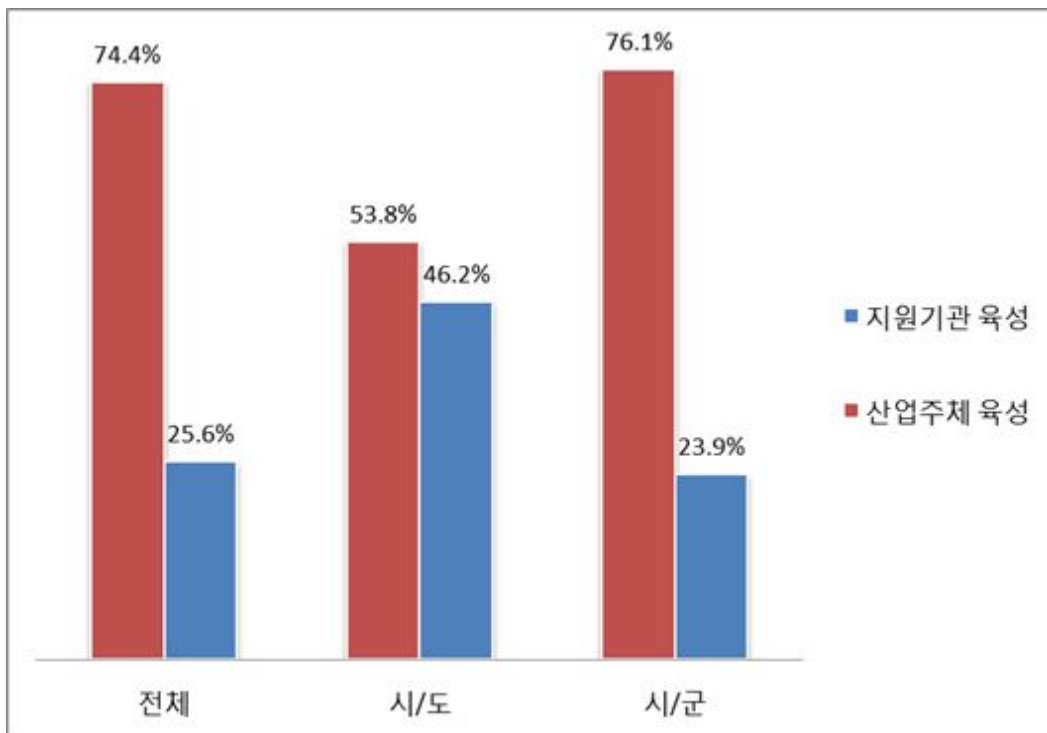
항목	현황	빈도(%)
소속 기관	기초 지자체	87.2
	광역 지자체	12.8
	계	100.0
직급	사무관	2.5
	주무관	87.5
	기타	10.0
	계	100.0
연령	30대 이하	35.7
	40대	40.3
	50대 이상	24.0
	계	100.0

나. 세부 분석 결과

-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육성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 결과, 지원기관보다는 산업 주체를 직접 육성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부문별로 보면 기초 지자체나 광역 지자체 소속 업무 담당자 모두 산업 주체 육성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나, 기초 지자체 소속의 담당자들이 보다 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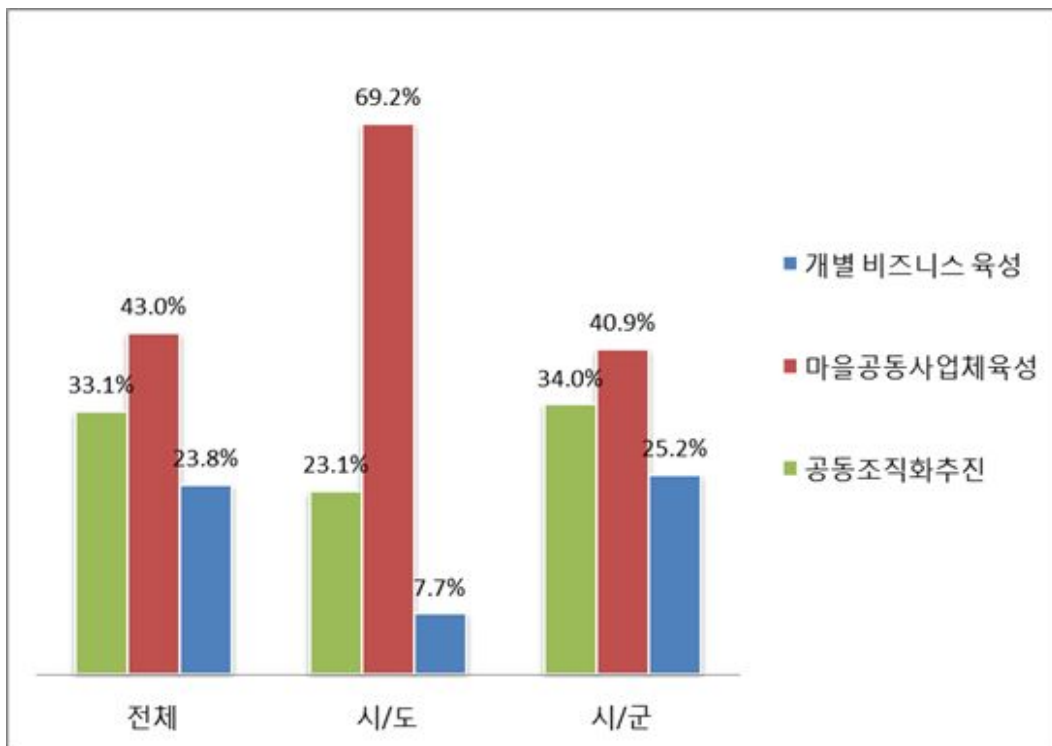
그림 3-8. 사업 육성 대상



-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통한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 주체로는 마을 공동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육성하여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광역 지자체 소속 담당자들의 경우 마을 공동사업체 육성에 대한 의견이 69.2%로 압도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였음.
- 반면, 개별 비즈니스 주체 육성에 대한 의견은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6차 산업화 사업 현장에서 개별 업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의 실패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6차 산업화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따른 것으로 생각됨.

그림 3-9. 육성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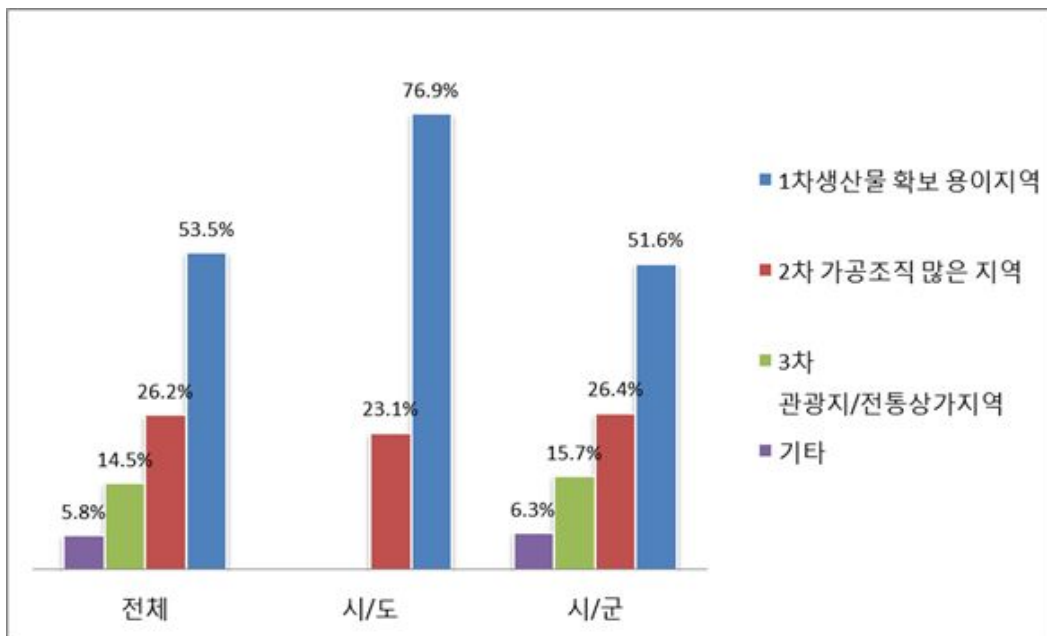


-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예산을 1차 생산물(농림축산물 등)을 확보하기가 수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기초 및 광역 지자체 담당자 모두 비슷한 모습이었음. 이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사업이 1차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 다음으로 2차 가공조직이 많은 지역이 3차 관광지/전통상가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사업 예산이 지원되어야한다는 의견도 두 번째로 많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앞서 AHP 분석 결과에서 제시되었던 내용과 서로 부합되는 모습

을 보임. 따라서, 6차 산업화 정책 사업 중의 하나인 복합산업화 지원사업도 3차 서비스업보다는 2차 가공업에 대한 비중이 보다 높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 AHP 분석 결과에서 2차 가공산업을 3차 서비스업보다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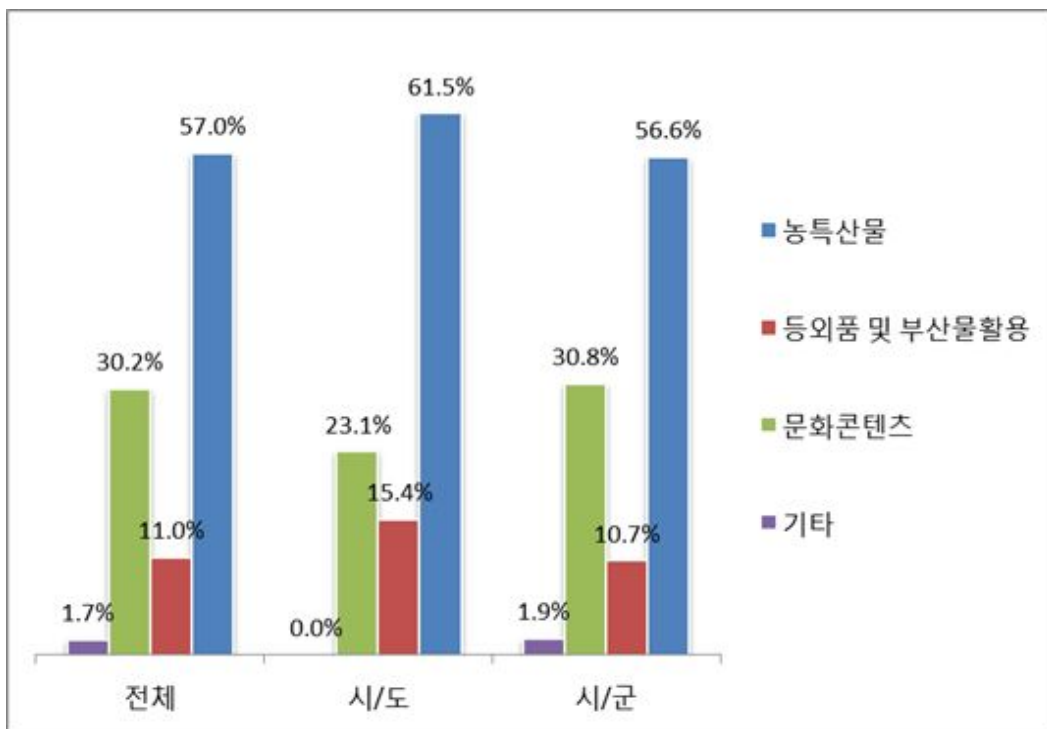
그림 3-10. 예산 우선 투입 지역



-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주요 자원으로는 농특산물과 문화 콘텐츠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따라서,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인 하드웨어(hardware)에 문화적인 소프트웨어(software) 아이템을 결합하여야만,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에, 등외품이나 부산물을 활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기초 및 광역 지자체 담당자들이 시장에 팔 수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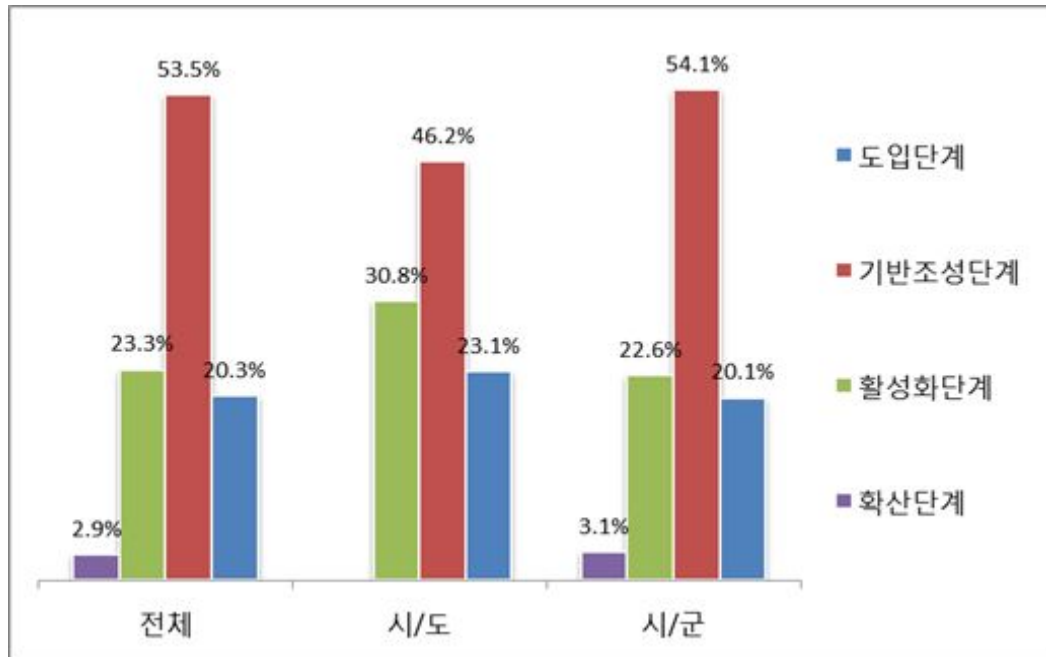
등외품이나 부산물을 가지고 안일하게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시도하여서는 성공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결과로 판단됨.

그림 3-11. 주요 자원



- 농업의 6차 산업화의 성공적인 확대를 위해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예산을 어느 단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야하는 지에 대해서 지자체 담당자들은 기반 조성단계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음.
- 다음으로 활성화 단계와 도입단계에 집중 투입을 제시한 응답자들이 있는 반면, 확산 단계에서는 예산 투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이를 통해,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예산을 기반 조성 단계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그림 3-12. 예산 투입 단계



다. 선행 분석 비교

- 본 조사 결과를 2012년에 농어촌자원개발원 관련 업무 심사·평가단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복합산업화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¹⁷과 비교하였음.¹⁸ 먼저, 복합산업의 육성 대상에서는 기존 선행조사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현격하게 산업추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이는 그간 6차산업이 화두로 전개되면서 6차산업의 핵심적 주체가 산업주체임을 자각한 결과로 판단됨.

17 한국농어촌공사(2012) 참고.

18 다만, 선행 조사와 본 조사와의 조사대상 샘플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임.

- 육성 대상 산업주체의 유형은 선행 조사와 본 조사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았음. 여전히 마을공동사업 및 공동조직화를 통한 추진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비즈니스 주체에 대한 의견은 2014년에 다소 높아진 것이 특징임.
- 향후 고려해야 할 예산 우선 투입 지역의 특징으로는 선행 조사의 1차 생산물확보지역이라는 응답에 비해 본 조사에는 가공조직이 많은 지역, 관광지 및 전통상가지역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6차 산업을 위해서는 2차 가공기업과 3차 서비스산업이 농촌지역에 취약하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현상은 주요 활용자원에 대한 의견에서도 나타나는데, 선행 조사에서는 농수특산물이 91%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본 조사에서는 문화콘텐츠 등이 32%대로 높아진 차이를 보임. 이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지자체에서 점차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예산 투입 지원 단계도 선행조사와 본 조사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반조성단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많아졌음.

표 3-72.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설문조사 결과 비교

단위: %

내용	결과		
		2012년	2014년
사업 육성 대상	지원기관 육성	46.0	25.6
	산업주체 육성	54.0	74.4
육성 주체	개별 비즈니스주체 육성	17.0	23.8
	마을공동사업체 육성	50.0	43.0
	공동조직화 추진	33.0	33.1
예산 우선 투입 지역	1차 생산물확보지역	73.0	53.5
	2차 가공조직이 많은 지역	9.0	26.2
	3차 관광지 및 전통 상가지역	9.0	14.5
	기타	9.0	5.8
주요 자원	농수특산물	91.0	57.0
	등외품 및 부산물 활용	0.0	11.0
	문화콘텐츠	9.0	31.9
예산 투입 단계	도입단계	27.0	20.3
	기반조성단계	9.0	53.5
	활성화단계	46.0	23.3
	확산단계	18.0	2.9

주: 2012년 조사 결과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분석 결과임.

4.3. 시사점

4.3.1. 우선 육성 대상 사업

- 6차 산업화 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 산업에 대한 AHP 분석 결과 특정 산업을 먼저 육성하는 것보다 전 분야에 걸쳐서 고르게 육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는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더라도 균형 잡힌 산업간 발전이 6차 산업화의 기본 방향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생각됨.
 - 이를 통해, 특정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사업들보다 복합 지원 사업들에 정책적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 다만, 각 산업 중에서 2차 가공산업을 3차 서비스 산업에 우선하여 육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세부 사업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사업과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 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이 해당됨.

4.3.2. 사업 추진 체계 및 방향

- 6차 산업화 정책 사업의 추진 체계는 분석 샘플별로 차이를 보여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하였음. 다만,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가 개별 사업을 시행하거나 농식품부의 사업 기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행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세부 사업 추진 방향은 대상 업체를 선정한 다음 이를 집중 지원하되, 다년도 장기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정책 사업들은 상품의 소비 확대, 현장 애로 사항 해결, 용자 사업 및 자부담 비중 강화 등에 보다 초점을 두어서 추진되어야 함.
- 6차 산업화 사업들의 통합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23개 사업을 4 ~ 6개의 중형 사업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이 강하게 제기되어 향후 해당 사업들의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사업의 통합은 개별 사업(군)의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6차 산업화 정책 사업의 일선에 있는 지자체 참여 열의를 높이는 효과도 발생 가능
 - 다만, 사업 규모가 확대될 경우 사업 대상자의 조직화와 능력 제고에 보다 신중한 사전 준비가 필요

4.3.3.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은 산업 주체를 직접 육성하되, 마을 공동사업체를 우선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됨. 사업 예산 집중 투입 지역은 1차 생산물(농림축산물 등)을 확보하기가 수월한 지역이어야 하고, 농특산물과 문화 콘텐츠를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농림축수산물은 일반 가공 원료와 같은 등외품이나 비상품이 아닌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이 되어야 함이 강조되어 참고가 필요
-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예산의 투입단계는 기반 조성단계인 것으로 분석되어, 도입단계나 활성화 단계에 비해 차별적인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예산을 기반 조성 단계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제 4 장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분석

1. 사업 개요

1.1. 목적과 관련 법령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 농촌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 (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농업 및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농촌형 제조업 육성과 기업투자 유치, 농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등 포함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제52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 농어촌정비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 78조
 - *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인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1.2. 사업시행 주요내용

1.2.1. 사업 대상자 및 시행 기관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대상자로는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이 해당됨.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은 시·도지사가 하며, 시행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임.

- 농공단지 조성은 특별·광역시, 수도권 지역 시·군·구 제외(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함)

1.2.2.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함.
 - 단, 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은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가능

1.2.3. 지원 대상 및 사업 유형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세부 부문별로 규정되어 있는데, 농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해당됨.
 - 농촌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농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보육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해당함.
 - 농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농촌 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해당함.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농어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수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해당함.
- 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 및 노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농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해당함.
-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농촌테마공원·복합낚시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농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2013년과 2014년에 진행되었던 사업의 유형과 내용은 <표 4-1>과 <표 4-2>에 각각 정리되어 제시됨.

표 4-1. 2013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유형 및 내용

사업유형	사 업 내 용
① 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구 축 지원	<p>생산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전단계 필요한 공동생산·보관·유통시설지원으로 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p> <p>-생산·유통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구축운영, 지역리더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및 유통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표시 등록 등 지원</p>
② 농수산물 제조·가공지원	<p>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 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시설 및 설비지원으로 농어촌 지역 제조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p> <p>-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적표시, 상품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제외)</p>
③ 농수산물 체험·전시지원	<p>생산된 농수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원 미만)체험·전시시설,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군 관내에 설치하는 경우 지원)</p> <p>※ 공동판매장은 농수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p> <p>-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참가 등 홍보전시 및 컨설팅, 상품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지원 등 농수산물 판매제고 기대</p>
	<p>테마공원, 관광개발 복합납시공원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지역단위 체험·휴양 교류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농어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p>

④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농어촌에 농어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 사회향토 자원을 토대로 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어촌으로 유도,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어촌 어항 관광개발	-어촌·어항법 제4조에 의거마련한 “어촌 어항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된 계획으로 어촌체험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복합시원 조성	-어촌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해양레저활동과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⑤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역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업 집적화 및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주민 소득 및 고용기회 증대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에 인구유입은 물론 산업간,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기존 노후화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표 4-2. 2014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유형 및 내용

사업유형	사업내용
①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구축	시도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 다음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연구·용역비, 인적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비, 심사·평가·컨설팅·모니터링 비용 등
②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제조·가공 등 전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지원(제조·가공등과 연계하여 지원)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및 유통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등을 지원
③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지원 -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적표시, 상품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제외)
④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 원미만)체험·전시시설, 공동판매장 시설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등과 연계하여 지원)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참가 등 홍보전시 및 컨설팅, 상품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제외)
⑤ 농 촌 체험 ·관 광 지원	농촌 테마 공원 조성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체험·휴양시설 지원 -경관시설·진입도로·상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학습전시관·산책로·탐방로·주말농원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⑥ 특화농공 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농공단지부지조성비 : 용지취득, 단지시공비, 진입로·전력·통신·용수 등 부대시설비
⑦ 생산· 유통·제조· 가공·체험· 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를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관련시설 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등 지원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 사업이 복합화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2.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지원자금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지원 제외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 개별 농어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지정,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등)은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등 사업시행관련 법령), 사전환경성 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

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은 동 포괄 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1.2.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의 재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고, 지원기준은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임.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을 결정
 -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사업(농공단지조성사업)은 정액지원

1.2.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름.

1.2.7. 포괄보조 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포괄보조사업 시행 전 계속사업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시행지침을 적용하게 됨.
 - 단, 계속사업(지구별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은 차이가 발생

1.3. 담당기관별 역할

1.3.1. 사업신청단계

가. 사업신청자

-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을 신청하게 됨.

나.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상의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신청함. 단, 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하여야 함.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 필요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
- 시·도지사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5월 31일까지 예산을 신청하게 됨.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 신청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 제외

1.3.2.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산조정위원회」 등 자체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게 되어 있음.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가급적 공모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시설설치 지원대상자로 가공업체 등을 선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및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

1.3.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세부내역 사업별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시·군별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고, 시·도별 내역사업(붙임 유형별 가이드라인상의 6개 사업유형) 금액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시·도 자체

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지사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하게 됨. 이 때,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1.3.4. 자금배정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을 배정함.
 - 시·도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세부내역사업별 자금 소요 집계표와 같이 자금배정 요구, 서식 별도 통보

나.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과 정산을 하게 됨. 이 때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조건 부여사항을 포함하여 수급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 조건을 부여

1.3.5.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가.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또한,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하고,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함.

표 4-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점검하여야 함. 세부 점검 사항으로는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이 해당됨. 또한,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을 실시함.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 필요시 제재 및 처벌을 하게 되는데,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등이 해당됨. 이 경우,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함.

1.3.6. 성과측정단계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농어촌기업 매출액·참여농어가 소득증가 등 경제성과와 주민교육이수실적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할 수 있음.

1.3.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가.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부처 자체평가를 실시함.

나.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의 평가 자료를 REDIS(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REDIS에 제출한 평가자료에 기초하여 부처 자체평가평가를 실시함.

〈 환 류 〉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로 인센티브(예산 추가지원) 및 패널티(예산 삭감) 등을 부여함. 또한,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함.

1.4. 포괄보조사업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보조사업은 광특회계 개편으로 도입된 포괄보조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자체별 예산편성

한도를 부여하고 지자체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임.

- 포괄보조금 제도는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시·도별 재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부내역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기존의 특정보조금과 교부금의 중간 또는 특정 정율보조금(specific matching grant)과 일반 정액보조금(lump sum general grant)의 중간 성격으로 볼 수 있음.
 - 일반정액보조금은 보통의 교부세가 이에 해당하며,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등 재정자원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을 받는 반면, 특정정율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사전에 용도가 결정됨으로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장점이 있으나 시·군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비판
 - 포괄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신장시킨다는 목적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이 그룹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
 - 즉, 포괄보조금은 보통교부세와 같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결코 아니며, 국고보조금에서 출발하되 용도 제한에 따른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목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사업선택권을 확대한 보조금

- 지역개발계정은 시도 자율편성과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획재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출한도액을 산정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사업별 내역사업에 한정하여 포괄보조사업을 기획,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메뉴 선택권을 갖고 재정당국이 승인권을 보유하는 제한적인 자율성을 부여

- 광특회계의 예산 규모는 2009년 명칭 및 비중 변경에 따라 광역발전계정과 지역개발계정의 예산비중이 역전되었으며, 광역발전계정은 예산이 소폭증가하고 지역개발계정은 예산이 소폭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광특회계는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증액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 2015년부터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을 신설할 것으로 보임.
 - 지역개발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 광역발전계정을 경제발전계정으로 명칭 변경

2. 추진실태 분석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시·도에서 복합산업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그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사업을 관리하고 성과를 도출하면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2013년과 2014년의 기간 동안 추진되었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의 현황을 별도의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에 사용된 기본 자료로 관리카드를 주로 활용

2.1. 사업 유형 및 지원대상

- 사업 유형은 크게 단순지원과 기획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단순 지원은 시·군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타당성 검토 후 배정한 것을 의미하고, 기획지원은 시·도에서 기획을 하여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배분을 수행한 것을 의미함.
 - 단순지원은 시·도에서 자율편성을 가장 편리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배정한 것으로 시·도에서는 사업의 성과 등을 관리하기 어렵고, 시·군의 집행 현황을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 지원대상은 6개 부문으로 구분을 하였음. 먼저, 시·군/시·도/ 사업단의 경우, 사업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거나 시청·군청에서 사업단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함. 마을지원은 마을의 6차산업화를 위하여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한 형태이고, 농민지원은 작목반 등 농민 및 농민단체에 지원한 경우에 해당함. 기업지원은 가공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경우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주류를 이룰 것이며, 부분적으로 농장, 개인회사, 식당, 판매점 등과 같은 업체에 가공시설 관련하여 지원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시킴. 농협 및 조공법인은 농업시설을 지원하고, 가공을 지원하고, 나아가 농업인조직화를 지원하는 등 편차가 다양하나, 별도로 산출하여 현황을 분석하기로 함. 미선정은 사업대상자를 아직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시켰고, 개인에게 지원한 사례도 여기에 포함시켰음
 - 농민지원 중 개별농민(개인)에게 지원하는 경우는 전라북도에 사례가 존재하여 이 경우는 미선정으로 처리

○ 이상의 기준에 의해 사업의 사업 유형 및 지원대상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음.

- 사업 유형에서 기획지원은 전라북도의 개별건수를 모두 카운트한 것으로 대략 120여개가 허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으로 단순지원이 많은 상태
- 지원대상에는 기업지원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농협·조공법인 등도 많은 수를 차지하며, 지원금액도 기업지원보다 대체로 큰 실정

표 4-4.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분석: 사업 유형 및 지원대상

시·도	사업 유형			지원대상						
	단순 지원	기획 지원	소계	시·군/시·도/사업단	마을 지원	농민 지원	기업 지원	농협/조공법인	미선정(개인)	소계
부산광역시	1	-	1	-	-	1	-	-	-	1
대구광역시	4	-	4	-	-	-	2	2	-	4
인천광역시	2	-	2	-	-	-	2	-	-	2
광주광역시	2	-	2	1	-	-	-	-	1	2
울산광역시	5	-	5	-	-	-	2	3	-	5
경기도	4	5	9	2	-	2	4	-	1	9
강원도	8	-	8	1	-	-	5	2	-	8
충청북도	11	-	11	-	-	-	9	2	-	11
충청남도	29	10	39	8	5	5	14	7	-	39
전라북도	15	169	184	26	35	32	38	29	24(개)	184
전라남도	3	34	37	2	-	-	32	2	1	37
경상북도	26	-	26	3	1	2	18	2	-	26
경상남도	29	-	29	3	-	6	14	5	1	29
제주도	13	27	40	2	1	-	30	1	6	40
계	152	245	397	48	42	48	170	55	34	397

자료: 농식품부 및 지자체 자료 재정리

2.2. 사업기간 및 지원방식

- 사업기간은 1년, 2년, 3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사업의 지원 방식은 기본적으로 시도/시군에서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시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배정하고 시군에서 지원대상자를 공모 이외의 나름의 방식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거나, 농협과 같은 경우는 공모없이 계획서에 기초해서 교부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기에 이 분포를 5 부문으로 나눠서 분석함.
 - 부분적으로 관리카드에서 공모절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공모 없이 교부로 처리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서 다시 점검해 볼 필요는 상존
 -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모와 미공모의 차이를 기획과 미기획 및 투명성과 폐쇄성이라는 점에서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획에 의한 지원과 투명한 지원을 강조하는 자료로 활용
 - 전북의 경우는 향토마을육성사업을 기획하고, 그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를 기타로 분류
- 이상의 기준에 의해 사업의 사업기간 및 지원방식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음.
 - 사업기간은 1년 사업이 대부분
 - 대부분 시군공모로 지원

표 4-5.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분석: 사업기간 및 지원방식

시·도	사업기간				지원방식					
	1년	2년	3년 이상	소계	공모 없이 교부	시도 공모	시군 공모	시도, 시군 직접 시행	기 타	소계
부산광역시	-	-	1	1	-	-	1	-	-	1
대구광역시	4	-	-	4	4	-	-	-	-	4
인천광역시	2	-	-	2	-	-	2	-	-	2
광주광역시	-	2	-	2	1	-	1	-	-	2
울산광역시	4	1	-	5	1	-	4	-	-	5
경기도	4	3	2	9	1	4	1	1	2	9
강원도	3	3	2	8	3	2	-	2	1	8
충청북도	10	-	1	11	6	5	-	-	-	11
충청남도	19	9	11	39	23	5	6	5	-	39
전라북도	147	13	24	184	63	31	55	35	-	184
전라남도	36	1	-	37	7	-	28	2	-	37
경상북도	25	1	-	26	15	-	8	3	-	26
경상남도	16	8	5	29	8	-	18	3	-	29
제주도	33	2	5	40	9	31	-	-	-	40
계	303	43	51	397	141	78	124	51	3	397

자료: 농식품부 및 지자체 자료 재정리

2.3. 지원규모

- 지원규모는 5천만원 미만부터 100억 원 이상까지 구간을 나눠서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음.
- 3억 원 ~ 10억 원 미만 사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억 원 ~ 3억원 미만

- 다만, 개별농가 및 수혜대상자별로 지원하는 규모는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데, 이는 관리카드가 개별 수혜대상자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군별 지원사업별 혹은 시·도별 지원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 일례로, 충남은 학교급식센터지원·지역단위 6차산업지원(두레기업)·권역단위 6차산업지원(우량기업·기업조합)·공동가공센터·생산자직판장 등으로 묶여 있으나, 사업대상자별로 보면 30여건에 달하는데, 관리카드는 5개에 불과

표 4-6.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분석: 지원규모

시·도	지원규모													소계
	5천미만	5천~1억	1억~2억	2억~3억	3억~5억	5억~8억	8억~10억	10억~15억	15억~20억	20억~25억	25억~30억	30억~100억	100억이상	
부산	-	-	-	-	-	-	-	-	-	-	1	-	-	1
대구	-	-	-	2	-	2	-	-	-	-	-	-	-	4
인천	-	-	-	-	1	1	-	-	-	-	-	-	-	2
광주	-	-	-	-	1	-	-	-	-	-	1	-	-	2
울산	-	-	-	-	2	2	1	-	-	-	-	-	-	5
경기도	3	-	1	1	1	-	-	-	-	-	1	2	-	9
강원도	-	-	-	1	-	1	1	1	1	1	2	-	-	8
충북	-	-	1	3	5	2	-	-	-	-	-	-	-	11
충남	-	-	3	3	3	5	2	6	2	2	3	8	2	39
전북	21	20	29	10	21	31	3	20	3	3	3	20	-	184
전남	-	1	5	1	3	20	4	1	-	1	-	1	-	37
경북	-	-	-	1	-	4	10	5	2	3	1	-	-	26
경남	-	-	2	-	3	7	7	4	1	1	3	1	-	29
제주	-	10	13	1	10	3	-	1	1	-	-	-	1	40
계	24	31	54	23	50	78	28	38	10	11	15	32	3	397

자료: 농식품부 및 지자체 자료 재정리

2.4. 예산지원 방식

- 예산지원 방식은 시설 등의 하드웨어 지원,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지원, 양자가 동일 목적으로 결합된 패키지 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가 다음 표와 같음.
 - 대부분 하드웨어사업만 지원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도 준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부분
 - 이처럼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대부분이 하드웨어만 지원하는 것은 사업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시설·설비지원과 관련 법적인 조치(지상권설정 등)만 끝내고 나면, 그 이후 그 시설과 설비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성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에 등에 대한 점검이 미비하기 때문
 - 패키지 지원은 전라북도 사업이 개별사업으로 나열되면서 늘어난 상태로 추정

표 4-7.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분석: 예산지원 방식

시·도	예산지원방식			
	하드웨어만지원	소프트웨어만지원	패키지지원	계
부산광역시	1	-	-	1
대구광역시	4	-	-	4
인천광역시	2	-	-	2
광주광역시	2	-	-	2
울산광역시	5	-	-	5
경기도	3	2	4	9
강원도	3	-	5	8
충청북도	9	-	2	11
충청남도	21	2	16	39
전라북도	90	15	79	184
전라남도	36	-	1	37
경상북도	20	-	6	26
경상남도	18	1	10	29
제주도	35	1	4	40
계	249	21	127	397

자료: 농식품부 및 지자체 자료 재정리

2.5. 분석 한계

- 충남도의 경우 마을단위 6차산업지원은 1개 사업으로 관리카드에 게재한 반면, 전북의 경우는 도 기획사업을 지원 사업별로 게재되어 있음. 이에 따라, 도에서 직접공모하는 사업과 도에서 기획하고 시군에 실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차이가 날 수도 있음.

- 테마공원, 복합낚시공원, 농공단지 사업은 통계에서 제외함. 이들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복합산업을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전락한 측면이 강함.
- 일본의 테마공원은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축구·야구 등), 농업체험과 연계한 생태체험시설, 농가레스토랑, 생산자직판장, 도농교류센터, 지역활성화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마련되어 농촌테마공원이 비즈니스와 연계되는 유형으로 구성
- 농공단지는 개보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농공단지 내 식품기업 중 지역의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한해 견학로와 판매장·체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 제기 (예, 충남의 경우도 20여개의 사업이 늘어날 것임)

3. 개선 사항

3.1. 포괄보조금 제도의 설계 · 운영 미흡¹⁹

- 포괄보조금 제도 설계와 관련해서 주로 예산 배분 및 지방비 매칭과 관련한 문제와 계정 간 유사·중복사업의 조정 문제가 나타남.
-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재원 배분 적합성, 특히 소관 부처가 승인하는 신규사업 예산 배분 방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
-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인해 지자체의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19) 송미령, 권인혜(2011)의 관련 내용을 적용하였음.

- 있으며,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
- 타 회계와 광특회계 간,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 자율편성사업 간 유사·중복성이나 사업 배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상존
-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도 추진 절차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계획단계에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데, 비법정계획으로서 실질적 이행 수단을 보장하기 어렵고, 형식적 계획으로 세워지면서 지역의 계획수립 피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에서 지방의 자율적·창의적 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미흡하고, 부처별 공간 분할로 인한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비효과성 문제도 발생하며, 부처별 가이드라인이 불일치하는 문제도 존재
 - 모니터링 및 평가단계에서 모니터링 과정이 시·군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내역사업별 평가체계로 광특회계 전체나 지역 전반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며, 다층적 평가로 인해 책임성·신뢰성 확보가 어렵고, 상대평가의 획일적 적용으로 정밀한 평가결과 도출에 한계가 발생
 - 또한, 평가의 구체적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막연한 인센티브 연동으로 시·도, 시·군의 발전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문제도 제기
-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도 추진 절차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계획단계에서 관련 계획의 수립 의지가 낮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포괄보조사업계획 간 연계가 미흡한데, 기존 단위사업 원형이 그대로 존재하며, 전반적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획역량과 거버넌스 구축이 미흡한 실정
 -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에서 지자체 내 총괄기획·조정 기능이 부재하거나 미흡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제도의 취지인 통합적·창

의적·자율적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포괄적 예산편성이 아닌 내역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여전히 유사사업의 통합이나 관련 사업의 연계 추진 등에는 한계가 존재

-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에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비하고, 부처 및 지역발전위원회 평가방식 등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광역지자체는 중간자 역할이 미확립된 상태에서 예산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러 포괄보조금 제도 틀 속에서 한정된 역할만을 수행하는 상황

3.2. 광역지자체(시·도)의 기획 기능 미흡

- 시·도 자율편성사업²⁰인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시·도가 광역차원에서 지역의 복합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차원의 자체 기획에 의해 시·군별 지원예산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절차와 운용방법, 성과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책임지도록 하는 것에 취지를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대부분 시·군에서 요청한 예산을 배정하는 역할만하고 있는 상황임.
 - 일부 자체적인 부분 기획이 보이나, 시·군에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기획 수준에 불과
- 이는 중앙부처의 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원인도 작용하고 있는데, 시·도별로 자율기획에 의해 사업관리를 목적에 맞게 추진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주어야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 전체 평가가 개별사업내용 중심으로 판단되고 있어, 시·도에서는 예산운

²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특화품목육성,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13개 사업을 통합)과 농어업기반정비사업, 농진청 소관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산림청 소관 산림경영자원육성,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 등이 해당됨.

- 영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보통교부금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
- 그 결과, 시·도간 경쟁은 사라지고, 시·도의 예산담당자는 부서별로 예산 신청을 받고, 부서에서는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 온 사업을 기초로 예산을 취합하여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악순환이 반복 중
- 추가적으로 목표설정, 성과관리, 자체평가, 피드백 등이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음. 복합산업(6차 산업) 육성과 관련한 목표설정과 성과관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복합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가가치의 농업부문 환원 여부, 복합산업(6차산업)의 기반 강화를 통한 창업보육에 대한 목표 및 성과관리 등이 진행되고 있지 못함.
- 모니터링-컨설팅-평가가 상호 연계되지 못한 채 1회성·단발성에 그치며, 모니터링-컨설팅-평가가 거의 감사수준으로만 진행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모니터링-컨설팅 자료가 바탕이 되어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체계가 미흡

3.3. 현장의 비정상적인 사업 집행 발생

-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지자체가 사업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음. 예를 들어, “복합산업화, 즉 식품가공을 위해 우수한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라는 것을 근거로 비닐하우스 개보수, 수확의자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이력을 통한 지원도 진행되고 있음.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과거 13개 사업을 통합하여 5개 분야 7개사업군으로 구성한 것인데, 과거 통합된 사업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단순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됨.

- 시·도에서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취지·지원분야·지원대상·지원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혹은 교육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혼선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명회·교육·워크숍을 혼합해서 진행하고는 있으나 한계

- 예산 쪼개기를 통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례도 많은데, 시·도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임의배정하거나, 시·도에서 큰 범주를 정해서 시·군별로 예산을 임의 배정하는 유형이 해당됨. 이는 시·도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임의배정하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사례라 할 수 있음.

- 시·군 또는 시·도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덤 또는 여분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임. 실제 일선 시·군, 시·도 담당공무원의 고유사업, 즉 지자체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관련 전담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인식, 민간보조사업으로 민원 등 복잡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 특히 소프트웨어사업이나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는 인식이 팽배함.
 - 열심히 하는 지역의 공통점은 담당계장(팀장)이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시장·군수가 이 사업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서 지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 이는 매년 사업신청 예산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데,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

3.4. 성과 측정의 미흡한 운용

-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 농어촌기업 매출액, 참여 농가의 소득 증가 등의 경제 성과와 주민교육이수실적 등의 지역 역량 강화 성과에 대한 측정과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의적인 성과 도출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됨.
 - 사업 대상자가 어떤 형태이든지 성과 입증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대부분 인정이 되는 상황으로 성과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저해
 - 주민교육이수 실적 등의 자료도 사업 대상자가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상호 확인(double check)이 필요
- 특히, 재무제표 등을 통한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함에도 현장에서는 세금 자료 생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매출 규모가 2,400만 원 미만일 경우 기장의무가 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 현행 기준을 악용하여 개인사업자들이 매출이 1억 원이더라도 2,400만원만 신고하고 기장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재무제표 자료가 제출되면, 매출액, 일자리, 원료사용 규모 등의 성과를 직간접적으로 측정 가능
- 또한,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다양한 세부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별로 적합한 성과 지표가 맞춤형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성과 측정과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을 주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음.
 - 세부 사업으로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농축산물 생

- 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농촌체험·관광 지원(농촌테마공원조성),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이 해당
- 특히,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등의 사업은 단순 성과 측정보다는 향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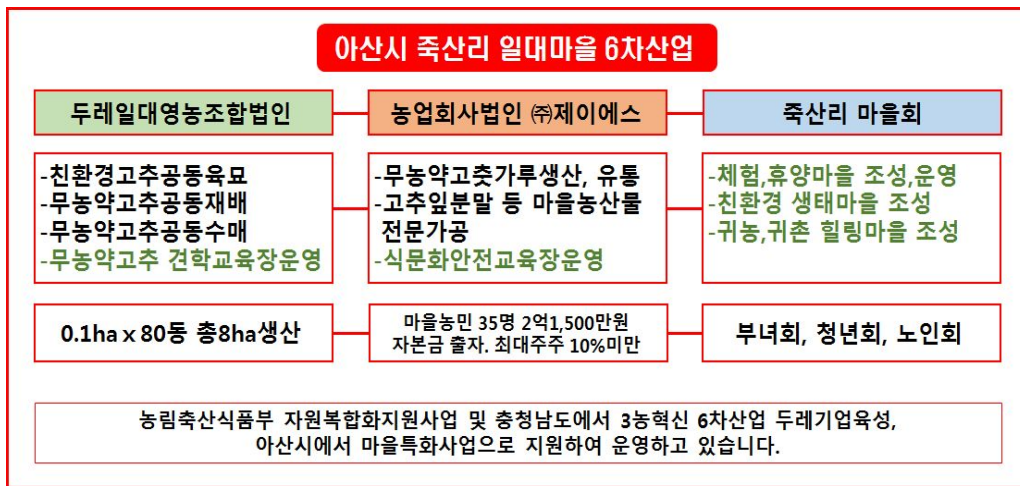
4. 우수사례

4.1. 시·도 기획사업

- 광역지자체인 시·도가 기획한 우수 사업으로는 충청남도의 마을단위 6차 산업을 통한 두레기업육성 사업과 전라북도의 6차산업화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음. 먼저 충남의 두레기업육성 사업은 단순마을지원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주주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구성하도록 하여 사업 주체를 명확히 하고 책임 의식을 부여하였음.
- 충남도는 체험프로그램 등 기본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마을의 농업 등 자원의 경쟁력, 둘째, 마을주민들의 추진의지, 셋째, 마을공동체형 기업육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함. 따라서 충남의 6차산업 두레기업은 창업수준의 지원체계이며, 기본적으로 마을의 영농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지역의 원료를 수급할 수 있는 체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육성하여 창업단계에서 3~5년간 시장진입을 통해 그 후 안정적인 조건을 창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임.

- 충남 6차산업 두레기업에서 체험은 가공기업의 판매제품을 직거래 통신 판매할 수 있는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지원형태

그림 4-1. 충남의 두레기업 육성 사업 개요



자료: 충남도청

- 한편, 전북의 6차산업화지원 사업은 신규조성은 불가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중인 지구 등 기존 사업지구와 연계하여 추진함. 기존 사업지구 중 6차산업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족한 분야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 형태를 지님.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14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는데, 개소당 사업비는 10억~30억으로 개소당 3년간 지원하였음. 또한, 마을 만들기 협력센터를 조직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음.
 - (사)지역활력센터 내에 전라북도 마을 만들기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매년 4억(국비50%, 도비50%)씩 현재까지 5년 20억 지원

표 4-8. 전북 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마을 지원 사례

마을명	운영현황		사업성과		수익배분
	대표상품	운영조직	고용	매출액	
구량마을 (정읍)	즙류(복분자, 오디, 칙여주)	(영)햇빛즐거는마을 · 조합원: 40명 · 출자금: 13백만원	5명	'11) 50백만원 '12) 100백만원 '13) 500백만원	마을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를 시중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입(간접배분)
달오름마을 (남원)	야콘한과, 야콘즙, 민박 농촌체험	(영)남원달오름마을 · 조합원: 64명 · 출자금: 58백만원	7명	'11) 580백만원 '12) 630백만원 '13) 480백만원	출자배당, 일자리제공, 마을기금조성 및 법인 기금 적립
당월마을 (김제)	메주, 된장, 간장, 농촌체험	(영)산성메 · 조합원: 40명 · 출자금: 30백만원	20명	'11) 50백만원 '12) 100백만원 '13) 500백만원	마을주민 일자리제공, 마을기금조성 및 법인 기금적립
마전난산 (김제)	회원제 농산물 꾸러미, 공관장 운영	(협)초록나래로컬푸드 · 조합원: 58명 · 출자금: 30백만원	4명	'12) 600백만원 '13) 850백만원	출자좌수에 따라 배당채투자(포장박스 홍보비)
안덕마을 (완주)	죽염된장, 간장, 위크숍, 교육시설, 농촌체험	(영)안덕과워 · 조합원: 72명 · 출자금: 197백만원	12명	'11) 50백만원 '12) 100백만원 '13) 500백만원	출자좌수에 따라 배당, 마을기금조성 및 시설 재투자
학정마을 (임실)	엿, 조청, 배즙	(영)학정마을 · 조합원: 36명 · 출자금: 73백만원	13명	'11) 91백만원 '12) 118백만원 '13) 126백만원	조합원배당, 마을기금조성, 마을주민 일자리 제공
중산마을 (무주)	더덕농축액, 깎더덕	(영)중산마을더덕 · 조합원: 27명 · 출자금: 3백만원	9명	'12) 36백만원 '13) 45백만원	마을기금조성, 마을주민 일자리제공

자료: 전라북도

4.2. 시·군 기획 사업

- 기초지자체인 시·군이 기획한 우수 사업으로는 서천군의 모시식품산업화 사업이 대표적임. 서천군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한산모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섬유, 문화, 관광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함. 이에, 영광 모싯잎떡처럼 가공식품을 통한 6차산업화를 추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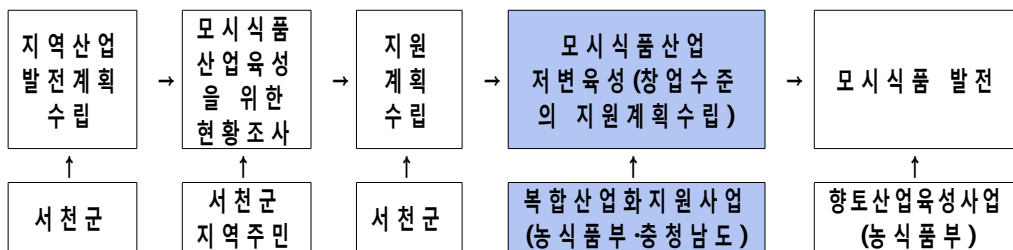
그림 4-2. 모시떡과 제조업체



- 모시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을 활용하여 2단계에 걸쳐 설비를 지원하고, 나아가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연계하여 홍보·마케팅 예산을 통해 창업수준의 지역업체를 안정적인 단계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였음.
 - 현재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2~3배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축제 등에서 모싯잎떡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면서 서천 모시떡, 한산 모시떡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 중

- 서천군 사례는 담당 조직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기존 업체조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설비(반죽기, 성형기, 찌기, 냉동·냉장고 등)를 지원하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를 거둔 사례임.

그림 4-3. 서천군의 모시식품산업화 사업의 추진 단계



제 5 장

6차 산업 관련 정책의 발전 방안

1. 기본 방향

1.1. 사업간 조정을 통한 효율성·효과성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주요 농정 목표로 제시하고, 30여 개의 다양한 정책 사업들(농식품부 14개, 농진청 6개, 산림청 2개, 지자체 8개 등)을 진행하고 있음. 그 결과, 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가 시현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창출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농식품부의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과 농진청의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가공업체의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 유사성이 제기

- 가공업체의 시설 지원 사업도 농식품부와 지자체들이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고, 3차 산업 지원사업에서도 농식품부의 농촌 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과 산림청의 치유의 숲 조성사업, 자연휴양림이 서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
 - 또한, 복합산업 지원사업 중 지구(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사업들의 통합을 거친 단위사업의 규모화도 고려되어야 함. 지자체의 경우 6차 산업화 정책사업에 대한 호응 정도가 지자체장이나 일선 담당자의 관심과 열의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어 지역별로 고른 사업의 효과가 발생하지 못함. 이에 대한 반성은 AHP 분석 결과에서도 제시되었는데, 사업의 향후 구조를 대규모로 통합하여 사업 추진과 운영의 유인을 강화시켜야함이 제시되었음.
-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들은 4 ~ 6 개 중형 사업으로 통합하고,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세부 사업들을 2 ~ 3개 중형 사업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이 제기
 - 이는 기존의 사업 수가 너무 많아 일선에서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지자체 등 일선 기관들에서 진행되는 정책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빈번한 것에 대한 결과
- 무엇보다도 모든 사업들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과거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내로 통합된 특화품목 육성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최근 농진청을 통해서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을 부활하여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그림 5-1. 6차 산업화 정책사업간 비교



- 이상의 내용들은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들을 상호 조정하여 종합적인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1.2. 하드웨어 단순 사업 지양 및 맞춤형 사업 강화

- 6차 산업화 정책사업들은 고유의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들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장에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포함한 상당수의 사업들이 사업 추진이나 사후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하드웨어 지원사업들로 진행되고 있어, 1·2·3차 산업의 주체간, 지원조직간, 시장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에 걸림돌이 됨. 이에 대한 우려는 AHP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사업추진대상의 우선순위 조사에서 업계·연구계·지자체 모두 1·2·3차 산업을 고르게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하드웨어 중심 사업들은 지자체 추진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

- 하드웨어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 목적에 집중하여 다양한 사업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집단이 결합된 형태의 사업단 구성, 둘째, 사업 지원기간이 최소 2 ~ 3년 이상의 다년차 지원사업으로 진행, 셋째, 사업들을 통합하여 대규모 사업으로 운용 등의 기준을 가지고 사업들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특히, 기존의 단일사업들을 단순하게 묶는 것 가지고는 이러한 패키지형 지원사업을 구성하기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함.

- 다음으로, 정책이 실제 집행되는 현장 맞춤형 사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6차 산업화 정책사업의 현장 시행 주체인 지자체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추진주체의 조건과 특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한 프로그램으로 현장에 대응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도입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사업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일례로,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의 기획과 예산편성의 권한을 시·도로 이관하였으나, 이 역시 단발적인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주고 끝나는 문제가 다수 발생

- 지자체의 사업 시행에 초점을 둔 맞춤형 사업 운용을 위해서는 지속성·전문성·현장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여기서 지속성은 6차 산업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최소한 1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전문성이란 다양한 주체와 대상과 품목 등을 고려해서 지원대상자를 가이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턴트 혹은 6차산업 플래너, 혹은 6차산업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있어야 함이며,²¹ 현장성은 이러한 조직과 사람과 예산이 농촌의 현장에 위치하고 농촌의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어야 함을 뜻함.

21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추가 기술함.

- 또한, 지자체의 사업들은 전북의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원 대상별 5억 원 미만의 소형 사업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 규모에 제약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관내 민원을 해결해야하는 지자체 사업의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되나 사업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의 대응도 필요

1.3. 사업의 성과지표 및 사후관리 개선

- 6차 산업화 지원 정책사업들은 다양한 성과 지표들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지표의 경우 현실적인 성과 반영 정도가 떨어지거나 과도하게 많은 지표가 요구되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사업지원 대상수와 창업자금지원실적 지표는 사업의 실제 성과보다는 사업 추진 결과에 치중한 지표라는 우려가 있고, 만족도와 이용자수 지표는 조사과정에서의 객관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연차별 누계자담확보 비율과 인구증가 지표는 사업 성과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많아지면 관련 근거 자료 준비 등에 따른 사업 대상자의 부담이 커지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업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다수의 사업들이 매출액(소득액) 증가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자리 증가율을 성과지표로 병행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 중
- 사후 관리 시스템 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결과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규제 중심의 방식들이 더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다행히 농식품부의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과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농진청의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사업,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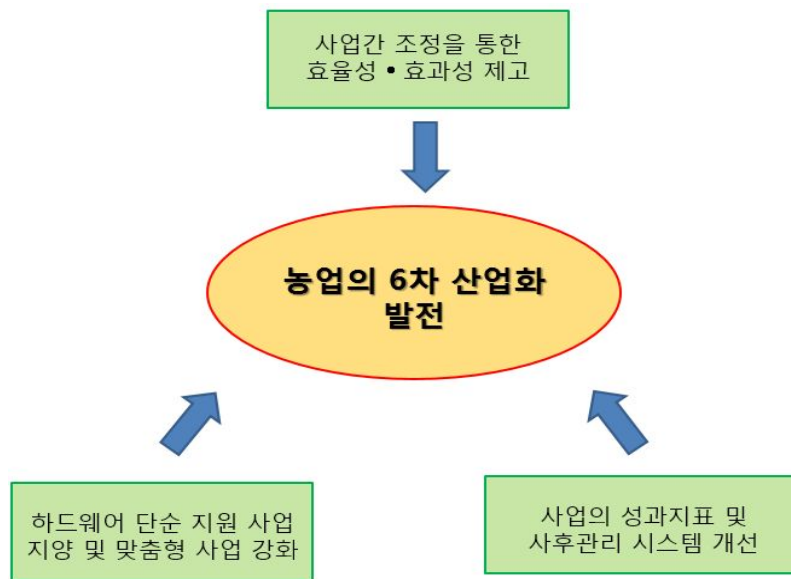
범사업,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등은 자체적인 워크샵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타 사업에서도 벤치마킹이 필요

- 한편,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 농어촌기업 매출액, 참여 농가의 소득 증가 등의 경제 성과와 주민교육이수실적 등의 지역 역량 강화 성과에 대한 측정과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의적인 성과 도출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됨. 특히, 재무제표 등을 통한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함에도 현장에서는 세금 자료 생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있음.
 - 재무제표 자료가 제출되면, 매출액, 일자리, 원료사용 규모 등의 성과를 직간접적으로 측정 가능
- 또한,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다양한 세부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별로 적합한 성과 지표가 맞춤형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성과 측정과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을 주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등의 사업은 단순 성과 측정보다는 향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
 -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제도²²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전문가들이 연구기관의 사업 평가와 개선 방향 제안을 병행하도록 하여 생산적인 사후 관리가 진행 중

22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제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의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이 제시한 성과 계획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평가단이 제시하는 제도임.

- 이러한 현장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성과 지표와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별 성과 목표 협약을 체결하고 모니터링-컨설팅-평가가 연계되어 시스템적인 성과 및 사후 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

그림 5-2. 6차 산업화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



2. 부문별 세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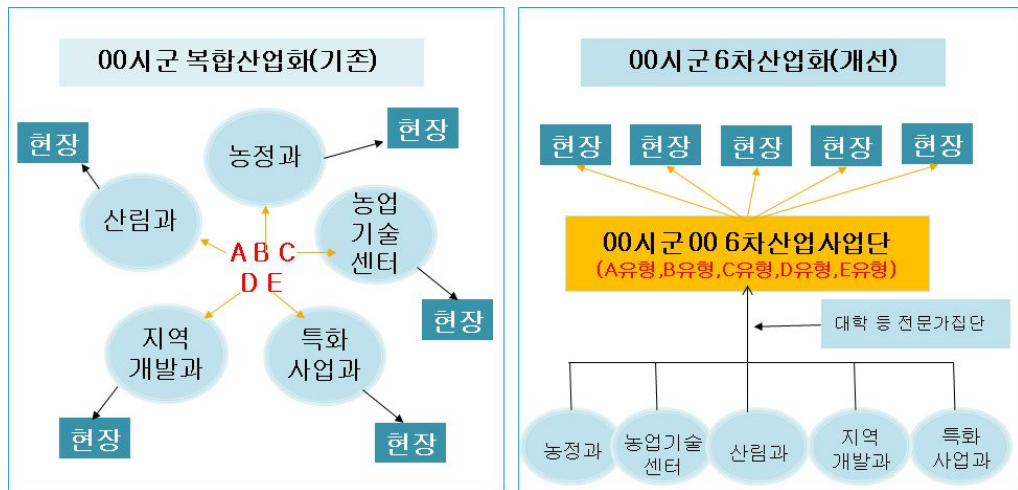
2.1. 시·군 단위 사업단 중심의 장기 사업 운영

- 기존의 6차 산업화 정책사업들은 사업 유형을 생산-가공-유통-체험마을-농공단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지자체에서의 담당부서가 광범위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부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해석과 성과·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받아오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림.

- 생산은 농정과 혹은 농업기술센터, 가공은 농정과 혹은 농업기술센터 혹은 특화부서, 체험마을은 지역개발과 혹은 농정과 혹은 농업기술센터 혹은 특화부서, 농공단지 지역개발과 혹은 농정과 혹은 경제산업과 등으로 구분

그림 5-3.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기존과 개선안 비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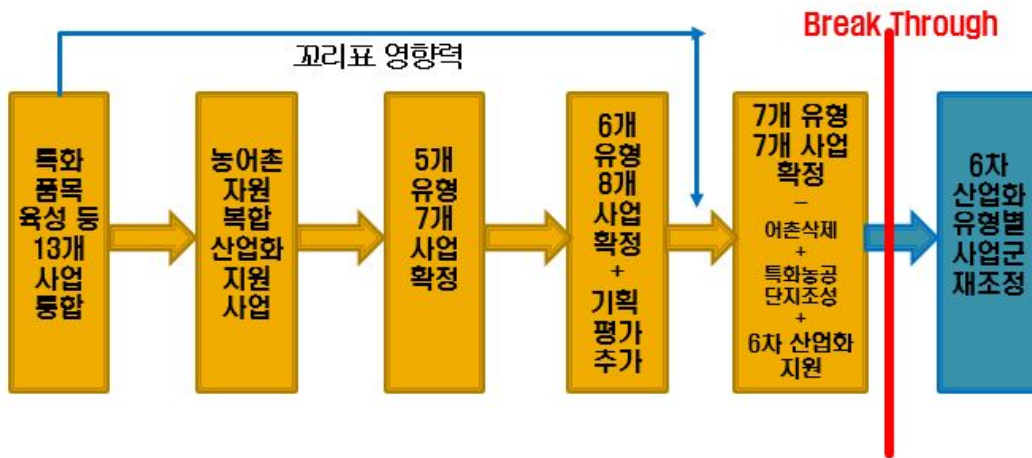


○ 특히,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과 같이 많은 예산을 한 곳에 투입하는 경우는 지자체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현장 공무원의 기획으로는 집행하기 어렵기에, 대부분 농민, 작목반, 마을 등에 2천만 원 ~ 2억 원 범위에서 나눠주고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치가 되어버린 상황임.

-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포괄보조사업으로 묶이기 이전의 14개 사업이 통합됨으로 인해 이들 사업에 대한 꼬리표가 아직도 남아있어 자의적 해석에 의한 예산편성이 상당부분 발생 중

- 따라서 현재의 사업유형을 전면 재조정하여 6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

그림 5-4.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꼬리표 문제



- 지자체가 6차 산업화 정책 사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군을 시·군별 6차 산업 사업단 운영으로 묶어서 규모 있게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사업단 내에서 사업 내용 기획, 예산 편성, 조직 구성, 집행 및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평가 등이 자체적으로 진행되도록 함.
- 사업단 내에서 6차 산업 5개년 계획 혹은 3개년 계획을 수립(법정계획) 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이 계획을 검토·평가하여 시·군별 예산을 차등배정하거나 탈락시켜 농식품부로 제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기존의 부문들이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문 간 연계에 의한 사업추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

표 5-1. 사업단 단위 운영 예

00시군 00 6차산업 사업단	
1. 6차산업기업육성	1. 사업단운영
2. 6차산업마을육성	2. 6차산업 코디네이터 양성·운영 (창업에서 시장진입까지)
3. 공동가공지원센터	3. 창업사무실 운영·지원
4. 6차산업지구조성	4. 6차산업 창업아카데미
5. 6차산업특화단지조성	5. 6차산업 R&D아카데미
6. 6차산업 생산자직관장조성	6. 6차산업 마케팅아카데미
7. 학교급식지원센터	7. 6차산업 기업생태계구축 및 운영
8. 6차산업기업인증제	8. 6차산업 마케팅·홍보 품평회
9. 6차산업협회	9. 6차산업 수출지원단 운영
10. 6차산업 유통네트워크 구축	

- 또한, 사업의 추진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장기계획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도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함. 이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기존의 사업을 묶어서 규모 있게 기획하고, 법정계획인 6차산업 5개년계획(혹은 3개년 계획) 수립의 효율적 집행방식을 채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포괄보조사업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음.²³
- 사업의 추진기간을 장기로 하는 것은 6차 산업화로 창출되는 농촌기업이 최소 3~5년이 걸려야 시장에 정착하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5~10년을 내다봐야 하는 상황 때문²⁴
 - AHP 분석에서도 대상업체를 선정 후 집중 지원하되, 2년 이상의 다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

23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구조 조정 내용은 부록 3을 참고할 것.

24 일본의 성공적인 6차산업 기업은 대부분 5 ~ 10년 꾸준히 사업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역연고산업(RIC)의 경우도 최장 4단계(3년 1단계)까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2.2. 지자체 허브(Hub)를 중심으로 한 연계 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에서 기획·추진되고 있는 6차 산업화 정책 사업들은 최종 시행 단계인 지자체 차원에서 상호 연계를 통한 안정적 가치사슬(value-chain)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이 실제 집행되는 지자체를 허브로 하고, 관련 정책들이 상호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자체 허브를 중심으로 한 연계를 통해 사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통합으로 6차산업의 성과가 지자체 내에서 전개되도록 유도

- 특히,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시·도를 거쳐 지자체로 가면 서,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시·군과 수혜자들에게 고루 나눠져서 집행되고 있기에 사업 대상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음. 이에 따라,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예산을 6차 산업 지자체 허브의 중심예산으로 규모 있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그림 5-5>에 제시되어 있는데, 지자체는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의 기본사업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중앙정부(농식품부와 양 청)의 사업을 지역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지자체 허브의 중심은 지역의 6차 산업화 전략의 출발점이 2차 가공산업 또는 3차 서비스 산업인지의 따라 공동가공 지원센터로 지칭되는 플랫폼이나 로컬푸드 직판장으로 선정이 가능

그림 5-5. 지자체 허브를 중심으로 한 연계 시스템



2.2.1. 플랫폼(Platform) 중심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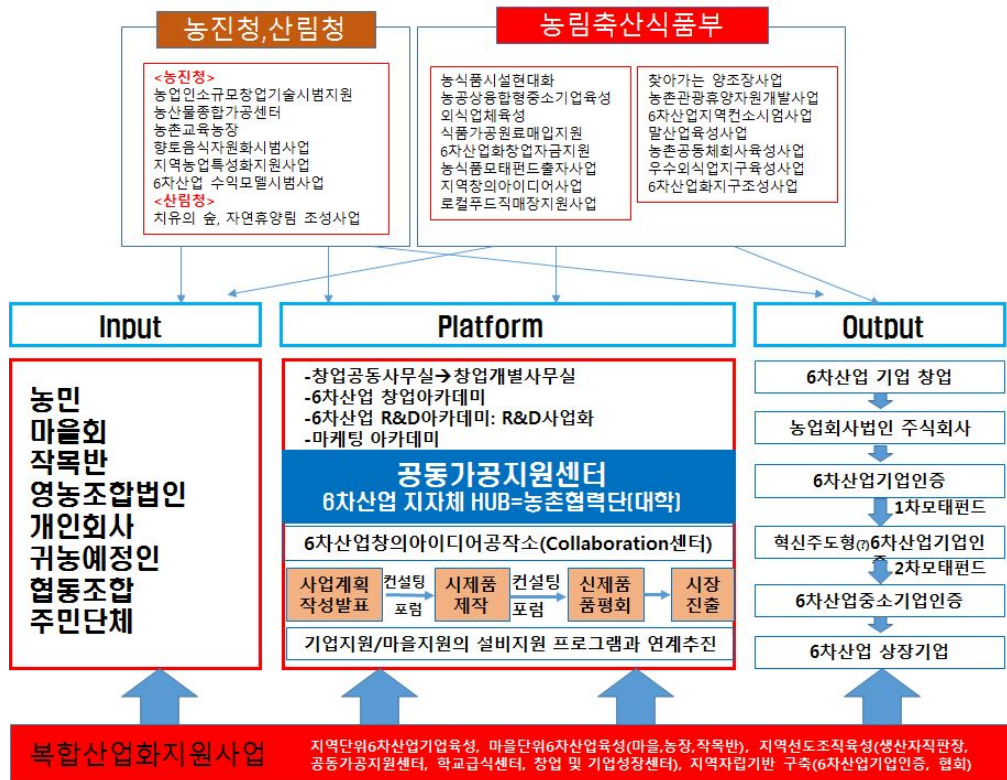
- 2차 가공산업을 6차 산업 중심산업으로 지향하는 지자체는 6차 산업 허브 중심으로 공동가공 지원센터를 선정하고,²⁵ 6차 산업의 다양한 테크놀로지, 문화, 농업이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기 조성된 공동가공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지자체는 보다 빠르게 6차 산업의 플랫폼을 가동 가능
 - 공동가공 지원센터를 신규로 조성해야 하는 지자체는 조성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등 인적·물적 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을 병행하면서 플랫폼을 구축
 - 한편, 이와 관련하여 기존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식품가공기업의 6차 산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도 병행 가능²⁶

²⁵ 공동가공 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4를 참고할 것.

²⁶ 6차산업형 농공단지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5를 참고할 것.

-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6차 산업 융합 플랫폼은 전문성·지속성·현장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지역 대학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이 경우, 지역 대학은 캠퍼스가 아닌 6차 산업 현장에 플랫폼·창업보육센터 등과 함께 농촌 협력단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²⁷
 - 현장의 농촌 협력단에 교수와 연구원들이 상근
 -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6차 산업 학과 및 개방학과, 계약학과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대학의 우수한 자원이 농촌의 현장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지역의 브레인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유도

그림 5-6. 플랫폼 중심 사업 운영 개념도



27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추가 기술함.

2.2.2. 로컬푸드 직판장 중심 허브

- 3차 서비스업이 우선되는 지자체는 6차 산업형 생산자 직판장 혹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6차 산업의 허브로 구축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함.²⁸ 특히, 6차 산업의 기본육성 주체인 지역의 가공기업이나 마을의 가공기업 등이 마케팅을 통한 시장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3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허브 시스템 운영이 중요함.
 - 인구 3만 명 가량인 일본의 오이타현 아소시에는 6차 산업형 로컬푸드 매장이 대략 10여개가 성업 중인 점을 감안하면,²⁹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도 궁극적으로 대략 1지자체당 5개 가량의 6차산업형 로컬푸드매장 운영이 이론적으로 가능
- 직판장은 초기에는 로컬푸드 직거래에 집중한 다음, 가공품 판매, 가공시설 도입, 외식업 확장 등의 단계로 발전되면서 명실상부한 6차 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대표 사례로 일본의 규슈 히타시 코노하나 가르텐이 될 수 있는데, 미찌노에끼가 20여 년 동안 단순 직판에서 가공 및 외식으로 확장해왔음.

²⁸ 6차 산업형 생산자 직판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6을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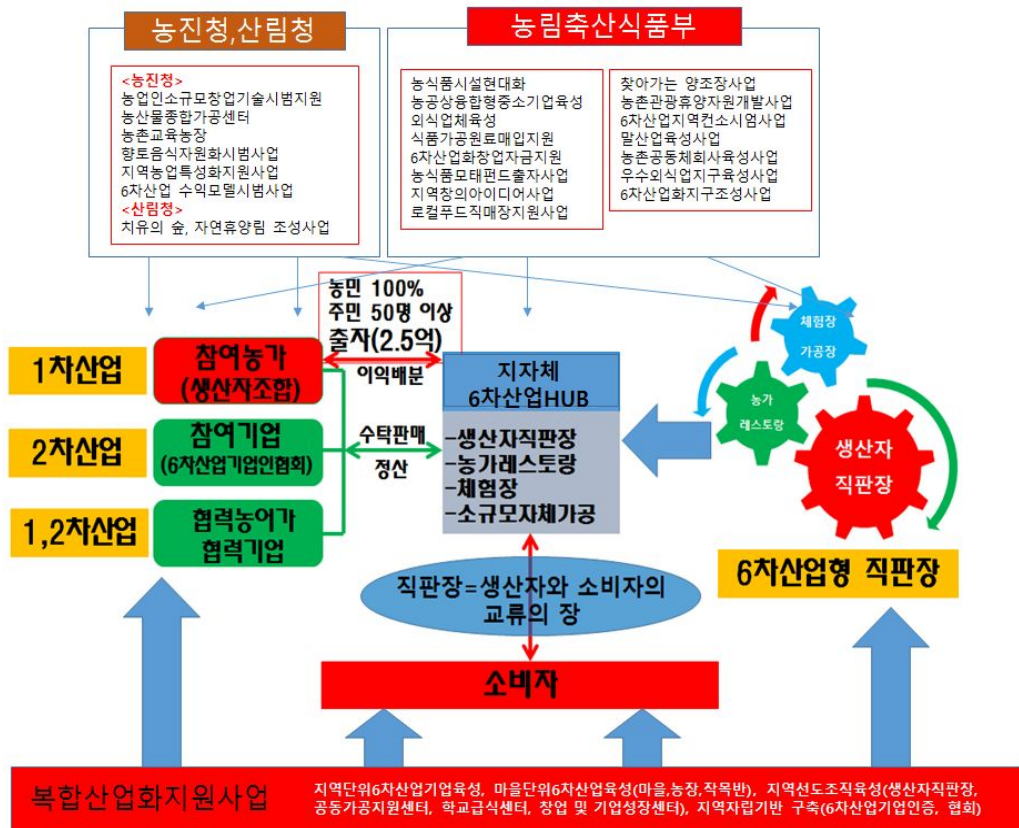
²⁹ 일본은 전국에 17,000여개의 생산자직판장 운영 중인데, 매출규모는 1조 엔을 넘어서고 있고 식품 소비시장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니혼게이자이신문(2013년 10월)은 일본의 이마트격인 이온몰이 직영농장 5,000개 조성 및 계약재배 5만 농가 계획 발표를 보도하였는데, 이를 통해 일본의 생산자직판장에서 일본산 농산물이 판매되는 추세가 증가하여 소매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반영함. 또한, NHK특집방송(2014년 10월)은 일본의 쌀재배농가 중 상당수의 수입이 150만 엔 증가해서 이를 추적 조사한 결과, 소포장을 통해 생산자직판장에서 꾸준히 판매한 농가들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도하였음.

그림 5-7. 규슈 히타시 코노하나가르텐의 활성화단계



○ 로컬푸드 직판장 중심 사업 개념이 <그림 5-8>에 제시되었는데, 지자체의 로컬푸드 직판장이 중앙정부 등과 연계하여 6차 산업화의 허브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그림 5-8. 로컬푸드 직판장 중심 사업 운영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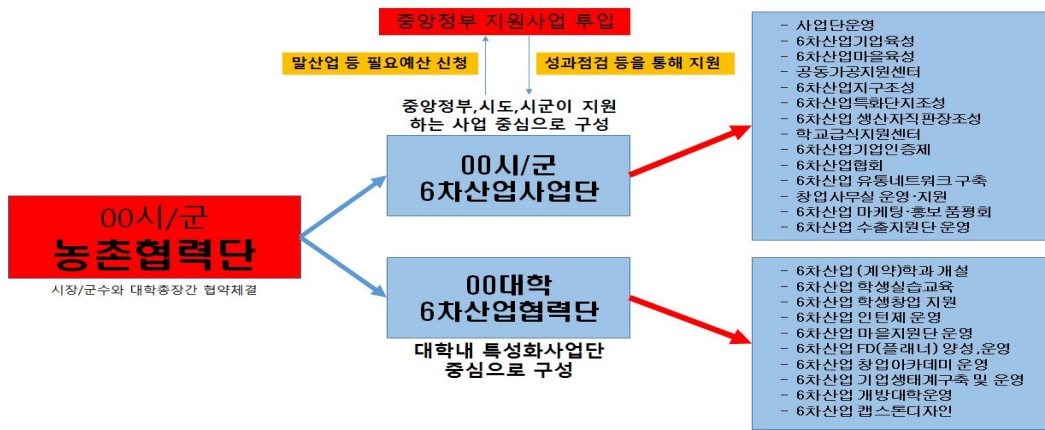


2.3. 대학 연계를 통한 현장 지원 기능 강화

2.3.1. 시·군 농촌협력단의 현장지원 기능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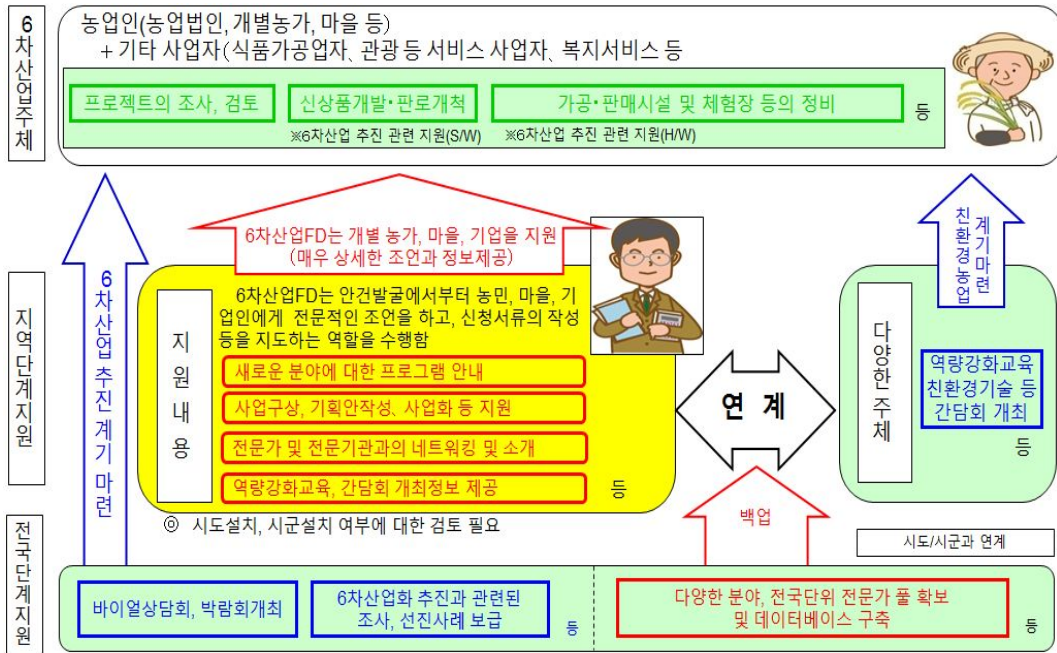
- 6차 산업화 진행되는 시·군에 위치한 대학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농대 중심에서 벗어나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열의 전문가들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특히, 산업부와 중기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지역연고 산업육성사업,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야 함.
- 대학 자원의 활용은 농촌협력단을 통해 진행될 수 있는데, 특정 시·군과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시·군의 현장에 농촌협력단을 설치하여 6차 산업추진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게 됨. 농촌협력단은 6차산업사업단과 6차산업협력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6차산업사업단은 시·군 6차산업육성의 허브를 구성하는 사업단·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6차산업협력단은 대학의 특성화사업을 6차산업으로 구성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로 활용함.

그림 5-9. 대학 농촌협력단의 구조



- 시·군 6차산업사업단 및 시·도 중간지원조직에는 6차산업 사업 전반을 조율하기 위한 6차산업 코디네이터(coordinator)(또는 6차산업 FD(family doctor), 6차산업 플래너)가 필요한데, 이를 대학에서 양성하여 공급하여 함. 6차산업 코디네이터는 개별 농가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6차 산업화의 현장 전반을 담당하는 기능을 함.
 - 일반적으로 6차산업 코디네이터는 시·군 6차산업사업단 및 시·도 중간지원조직 내에 전문위원 형태로 4~5명 정도씩 필요
 - 6차산업 코디네이터의 주요 업무로는 6차 산업화를 위한 현장 아이템 발굴, 농가·마을에 전문 어드바이스, 각종 신청서류의 작성 보조, 신규 관련 정책 프로그램의 정보 제공, 6차산업화 사업의 구상·기획안 작성·사업화의 종합 지원, 관계 전문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현장 사업 참여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기술 관련 프로그램·간담회 등의 개최정보 제공 등이 포함

그림 5-10. 6차산업에서의 6차산업 코디네이터 역할



2.3.2. 특성화 사업을 통한 6차 산업 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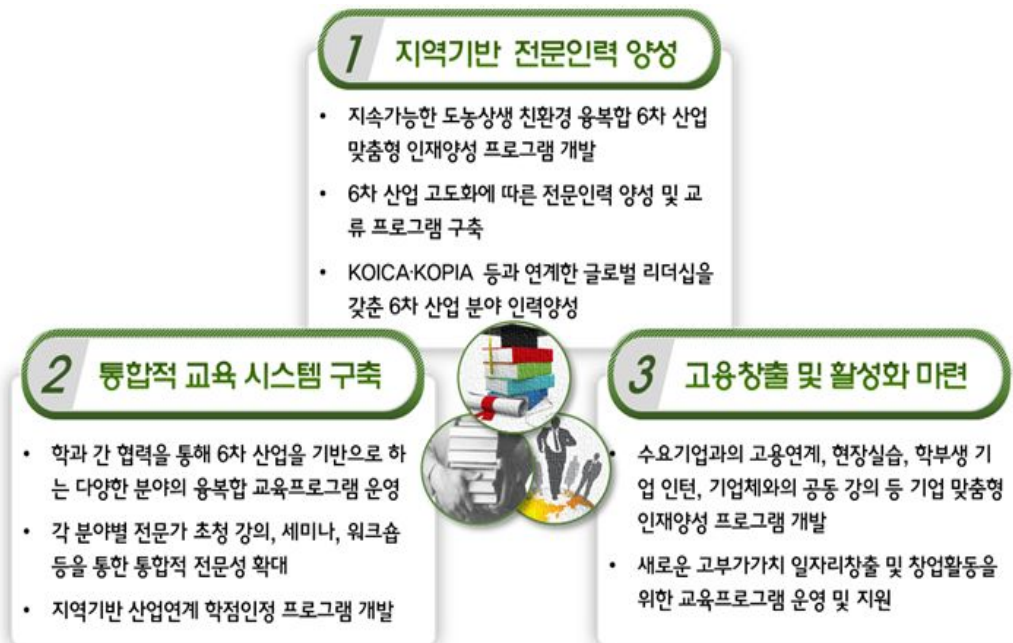
- 6차산업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농업의 6차 산업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최근 일부 대학에서 대학 특성화사업을 통해 6차 산업화 인재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시켜서 풍부한 인재 풀(pool)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학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등이 해당
- 충남대학교의 경우 2014년부터 도농상생 친환경 6차 산업 인재양성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는데, 환경생태 기반조성을 통해 도시·농촌이 상생하는 지역행복생활권 구축을 위해 농업과 임업을 융합하여 6차 산업화를 달성

하기 위한 사업임. 본 사업의 목적은 학제 간 및 1·2·3차 지역산업들과 통합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도농상생의 환경생태 경제시스템 및 관련 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충남대학교 사업단은 5개 학과(농업경제학과, 지역환경토목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원예학과,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가 참여 중

- 보다 구체적으로는 6차 산업관련 학과 공통 교과목을 개설하고, 세부 전문분야별 6차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여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임. 또한, 6차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워크숍 등을 통해 학생들의 6차 산업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있음. 그 밖에도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6차 산업화에 관심을 가진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민 재취업 가능성 제고 및 6차 산업화 기여하도록 함.

그림 5-11. 충남대학교 특성화 사업단의 학부생 양성 계획



2.4. 성과관리 시스템 개선

2.4.1. 성과 지표 보완

- 6차산업화 정책사업의 성과 지표 중 현실적인 성과 반영 정도가 떨어지거나 과도하게 많은 지표가 요구되는 등에 대한 문제 보완이 필요함. 예를 들어, 사업지원 대상수와 창업자금 지원실적 지표는 사업의 실제 성과보다는 사업 추진 결과에 치중한 지표라는 우려가 있고, 만족도와 이용자수 지표는 조사과정에서의 객관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연차별 누계자담확보 비율과 인구증가 지표는 사업 성과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이 검토되어야 함.
- 또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많아지면 관련 근거 자료 준비 등에 따른 사업 대상자의 부담이 커지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업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기에 개선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다수의 사업들이 매출액(소득액) 증가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자리 증가율은 둘 중 하나만 사용해도 무방
-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성과지표 도출이 필요한데, 6차 산업화 대상 업체들이 사용하게 되는 재무제표를 통한 지표 도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먼저, 매출액·일자리·원료사용은 재무제표만을 성과 근거자료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매출액은 재무제표 합산금액만으로 확정하나,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시점이 매년 2월 말에 끝나는 점을 감안하여, 매년 11월말 기준 재무제표 기장내용을 제출받아 임시로 활용
 - 매입원가는 원료매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여기에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원료매입만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조사 등으로 진행

- 일자리창출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은 4대 보험으로 가능하나, 일용직은 정확한 통계적 숫자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
- 따라서, 대부분 일용직은 증빙자료(근로확인명부, 무통장입금증 등)를 기초로 해서 다음과 같은 산출식에 의해 산정^{30, 31}

[$(\text{근로자수} \times \text{근로일수}) \div 250 = \text{연간 고용인원}$]

예) $(20\text{명} \times 25\text{일}) \div 250 = 2\text{명}$

30 다만, 이 경우는 증빙자료가 부실하거나 목표에 성과를 맞추기 위해 과장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 단점이 있음.

31 재무제표를 활용할 경우, 총급여 지출금액을 최저임금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연간1인 급여액으로 나누어 고용인원을 측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기초하는 바, 어떠한 논란의 여지도 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자칫 미신고로 인한 일자리창출의 통계수치가 지나치게 낮게 나올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음.

[재무제표상 급여총액 ÷ 2014년표준(최저)임금액 = 연간 고용인원]

예) $[47,965,000\text{원} \div 25,000,000\text{원} = 1.9\text{명}]$

그림 5-12. 재무제표 예

[별지 제3호의3 서식(1)] (2007. 7. 31. 개정) (양쪽)

2013년 01월 01일	표준손익계산서 (일반법인용)		법 인 명	안동아부용농산영농조합법인	
2013년 12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508-81-23938	
(단위: 원)					
계정명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I. 매출액	01	: 2:777:740:173	4. 유가증권처분이익	41	: : : : :
1. 상품매출	02	: 2:777:942:992	5. 유가증권평가이익	42	: : : : :
2. 제품매출	03	: : : : :	6. 외환차익	43	: : : : :
3. 공사수입	04	: : : : :	7. 외화환산이익	44	: : : : :
4. 운송수입	05	: : : : :	8. 지분평가이익	45	: : : : :
5. 부동산임대수입	06	: : : : :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46	: : : : :
6. 분양수입	07	: : : : :	10. 투자자산처분이익	47	: : : : :
7. 기타매출	08	: : : : :	11. 유무형자산처분이익	48	: : : : :
II. 매출원가	09	: 2:116:351:030	12. 사채상환이익	49	: : : : :
(1) 상품매출원가	10	: 2:116:351:030	13. 법인세환급액	50	: : : : :
1. 기초재고액	11	: 2:05:887:218	4. 송당금·준비금환입	51	: : : : :
2. 당기매입원가	12	: 2:405:775:612	5. 전기오류수정이익	86	: : : : :
3. 기말재고액	13	: 2:05:944:000	6. 자산수증이익	73	: : : : :
4. 타계정대체액	91	: : : : :	17. 재무연체이익	74	: : : : :
(2)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원가	14	: : : : :	18. 보험차익	75	: : : : :
1. 기초재고액	15	: : : : :	19. 기타영업외수익	52	: : : 102:629:073
2. 당기총원가(명세별정)	16	: : : : :	가. 국고보조금	211	: : : 102:482:000
3. 기말재고액	17	: : : : :	나. 잡이익	212	: : : : 147:073
4. 타계정대체액	18	: : : : :	다.	213	: : : : :
III. 매출총손익	19	: : 661:389:143	라. 기타	214	: : : : :
IV. 영업외수익	20	: : 378:441:048	영입외비용	53	: : : 14:379:584
1. 급여	21	: : : 47:950:640	. 이자비용	54	: : : 14:379:584
2. 퇴직급여충당금회계손익	22	: : : : :	. 기타 대손상각비	55	: : : : :
3. 보험료	83	: : : 10:283:130	3. 유가증권처분손실	56	: : : : :
4. 복리후생비	23	: : : 14:626:790	4. 유가증권평가손실	57	: : : : :
5. 어비용비	84	: : : : 891:900	5. 재고자산감모손실	58	: : : : :
6. 임차료	24	: : : 8:512:835	6. 외환차손	59	: : : : :
7. 접대비	25	: : : 10:092:690	7. 외화환산손실	60	: : : : :
8. 감가상각비	26	: : : 60:633:470	8. 지분법손실	61	: : : : :
9. 무형(이연)자산상각비	27	: : : : :	9.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62	: : : : :
10. 세금과공과	28	: : : 42:681:243	10. 투자자산처분손실	63	: : : : :
11. 광고선전비	29	: : : 111:909:803	11. 유무형자산처분손실	64	: : : : :
12. 차량유지비	85	: : : 20:364:258	12. 기부금	65	: : : : :
13. 연구비	30	: : : : :	13. 사채상환손실	66	: : : : :
14. 경영상개발비	31	: : : : :	14. 보상비(건설업)	67	: : : : :
15. 대손상각비(충당금전입액포함)	32	: : : : :	15. 법인세추납액	68	: : : : :
16. 미분양주택관리비	33	: : : : :	16. 준비금 등 전입액	69	: : : : :
17. 수수료	34	: : : : :	17. 전기오류수정손실	87	: : : : :
18. 기타판매비와관리비	35	: : : 250:494:887	18. 재해손실	78	: : : : :
가. 운반비	201	: : : 128:012:093	19. 기타영업외비용	70	: : : : :
나. 지급수수료	202	: : : 65:726:381	가.	221	: : : : :
다. 소모품비	203	: : : 34:970:187	나.	222	: : : : :
라. 기타	204	: : : 21:786:226	다.	223	: : : : :
V. 영업손익	36	: : : 82:947:497	라. 기타	224	: : : : :
VI. 영업외수익	37	: : : 102:638:669			
1. 이자수익	38	: : : : 9:596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80	: : : 171:206:582
2. 배당금수익	39	: : : : :	IX. 법인세비용	81	: : : : :
3. 임대료	40	: : : : :	X. 당기순손익	82	: : : 171:206:582

210mm×297mm(신용용지 54g/㎡(재활용품))

- 다음으로, 지역의 농산물 원료소비 현황은 연 1회(혹은 연2회) 6차산업 등록기업(참여기업) 혹은 6차산업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현황 및 원료소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임. 구체적으로는 식품분류표 및 원재료목록을 통해서 면접조사를 통해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데, 주요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회사 기본사항
 - 주요 생산제품의 매출액 및 출하량, 생산제품별 이익률
 - 매출액 기준 주요 생산제품 원가 구성 비중
 - 매출액 기준 주요 생산제품 판매처
 - 매출액 기준 주요 생산제품 판매방식 및 등록상표(브랜드) 보유여부
 - 원재료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 원재료 소비규모 및 형태: 원재료별, 사용량, 톤당구매금액, 원재료투입 비중, 인증 원재료 사용 시 인증유형, 인증원재료 사용이유
 - 원재료 이용형태: 원재료별, 원산지별 이용률, 주요 생산제품별 국산 및 수입원재료 사용 비중, 수입원재료 구매이유, 국산원재료 구매이유, 가공식품소재의 원재료 원산지별 비중
 - 원재료 조달형태: 원재료별, 국산원재료의 원료조달 경로별 비중, 해당 원재료 조달경로 이용이유(국산), 계약거래, 직접생산 불필요한 이유, 계약거래 지원 필요사항, 수입원재료의 원료조달 경로별 비중, 해당원재료 조달 경로 이유(수입)

-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측정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³² 산업연관분석은 구조적 측면에서 산업간 연관관계(산업간 생

32 한국은행은 1960년 산업연관표를 최초로 작성한 이래 매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음.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국가 경제에서 각 산업들이 생산활동을 위해 상호간에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맺는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임.

- 산물 순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생산, 고용, 소득 등 각종의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수립, 정책효과의 측정 등에 활용됨.
- 6차 산업기업의 총지출을 28개 산업유형별로 도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를 추정하는 방안 모색이 가능

그림 5-13. 산업연관분석의 개념

※ 산업유형A총지출×해당 산업유형A 생산유발계수=생산유발효과	
B	B
C	C
※ 산업유형A총지출×해당 산업유형A 부가가치유발계수=부가가치유발효과	
B	B
C	C
※ 지역경제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	

산업연관분석은 20세기에 레온티에프(W.Leontief)가 개발한 것으로 각 산업들이 투입·산출의 관계를 통해 각각의 경제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고,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방법론임.

<예시>

- ※ (가)지역 A식품기업의 총지출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당기매입원가 매출총손익으로 계상되어 200,000천원이라고 가정
- (가)지역 B유통업체의 총지출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당기매입원가 매출총손익으로 계상되어 500,000천원이라고 가정
- ※ 한국은행이 발표한 28부문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중 제조업은 1.983
- ※ 한국은행이 발표한 28부문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중 도소매는 1.678
- ※ 직전년도 생산유발효과는, 1,289,600천원(1)
 - 200,000천원×1.983=396,600천원
 - 500,000천원×1.678=893,000천원
- ※ 직전년도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95,500천원(2)
 - 200,000천원×0.815=163,000천원
 - 500,000천원×0.865=432,500천원
- ※ (가)지역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6차산업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역 경제파급효과는=생산유발효과총액(1)+부가가치유발효과총액(2)=1,885,100천원
- ※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지역의 A기업과 B기업에 지원한 예산총액은 국비와 지방비 총액 300,000천원으로 예산투입 후 1년이 지난현재 지역경제파급효과는 6배 이상으로 나타남

2.4.2. 성과목표 협약제를 통한 자율적인 성과 관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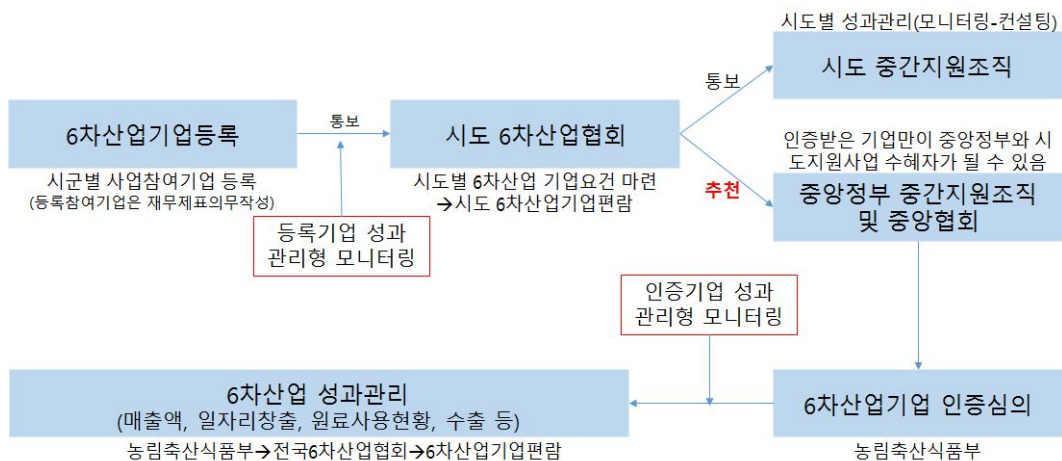
- 6차 산업화 정책 사업의 성과 목표를 보다 현실적인 내용으로 결정하고, 성과 관리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과목표 협약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농식품부와 시·도가 성과목표를 협의하여 정한 다음 이행을 협약하는 방식이 가능함.
 - 시·도에서 시·군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도 총괄적 및 시·군 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제출
 - 농식품부는 중간지원조직(농어촌공사 등) 및 전문가 그룹의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시·도와 조정 협의
 - 시·도와 농식품부 담당자간 조정협의를 끝나면, 농식품부장관과 도지사가 공개적으로 협약에 서명하고 이행절차에 진입
 -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시·도자율편성사업이므로 시·군에 대한 사업평가 및 사업관리의 권한을 시·도에게 맡길 필요 제기

- 성과목표 협약 체결 이후 이를 관리할 시스템 운영이 필요한데,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컨설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즉, 6차산업 기업등록과 6차산업 기업인증제를 통해 참여 기업에 대한 필요 자료를 모니터링하여 매출액, 일자리창출, 참여농가소득증대, 수출 등의 성과지표 기초 자료들을 수집함.
 - 성과는 분기별 혹은 반기별 혹은 연차별로 측정하되, 현행 모니터링-컨설팅의 제도 속에서 진행³³

33 다만, 현행 모니터링은 참여기업이나, 사업단의 모니터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을 연계시키는 연결고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행정에서의 조사내지는 감사로 연결되는 정도로 그치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함.

-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5-14>를 참고
- 모니터링은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 사업성과 모니터링, 애로사항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함.
 - 시·군 및 시·도 담당공무원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의 사업성과 모니터링을 추진하기 위한 면접설문지를 배포하고, 시·도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 설문지에 대한 교육과 함께 설문자료를 취합·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및 자체적인 성과관리 진행
 - 애로사항 모니터링은 시·도에서 사업단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포럼형식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취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그림 5-14. 6차 산업화 정책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 한편, 컨설팅은 사업단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함. 사업단에 대한 컨설팅은 시·도 담당공무원이 진행하고,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매출액 부진 등의 현격한 사업성과 부진 기업을 대상으로 1차 현황파악 컨설팅, 2차 관련 전문가 집중컨설팅을 추진함.

시·도와 농식품부는 관련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를 토론하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통해 정리 및 향후 진행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2.5. 사업간 조정을 통한 효과 극대화

2.5.1. 6차산업 기업인증제(6차산업 사업자인증제)와 6차산업협회 운영

- 6차산업화 사업의 현장 시행 실태를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시행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6차산업기업 등록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6차산업 관련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작목반, 마을(기업), 가공·서비스기업 등이 시·군 6차산업협회에 가입하여, 등록을 하도록 함. 나아가 6차산업 기업인증제의 정착을 위해 6차산업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자본 보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시·군 6차산업협회는 회원사 정보를 분기별로 시·군에 통보하고,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회원사를 시·군에 추천
 - 시·군에서는 해당 6차산업 인증기업을 시·도에 추천
 - 시·도 6차산업협회는 시·도의 중간지원조직과 협력하여 자체적인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할 시·도 6차산업인증 대상기업을 시·도에 추천
 - 6차산업 중앙협회는 중앙정부 중간지원조직과 협력하여 심의(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단계별 6차산업인증 기업을 추천
- 또한, 기존의 규모·기술력 등과 상관없는 인증제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단계별 인증제를 도입하여 6차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상장기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매출액,

종업원수, 기술력, 수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6차산업 기업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창업단계 6차산업 기업인증
- 벤처단계 6차산업 기업인증(중기청과 협력) : 모태펀드 투입 가능
- 중소기업단계 6차산업 기업인증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단계 6차산업 기업인증

- 6차산업 기업인증제는 코스닥과 같은 6차산업 자본시장의 형성이라는 거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자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2.5.2. 6차산업 집적화지구 육성을 위한 딸산업특구, 우수외식업지구,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

-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과거 특화품목육성사업(현재는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포함된 사업)과 유사하며, 작목반 등을 중심으로 6차산업 창업 등을 유도하고 있으나, 대부분 농업기반(비닐하우스) 및 체험장 구축 등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적화지구까지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임.
-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 집적화지구육성까지 이어지려면, 사업종료 후 후속사업으로 6차산업 창업지원사업 등으로 활발한 창업을 이루어내고 특화품목 관련 기업유치 등으로 집적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현재 농민의 기반에서 출발하여 최소한의 규모있는 집적화가 이루어지려면 오랜 시간 동안 단계별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지역농업특성화사업(1단계, 2단계, 3단계 3년) → 6차산업창업지원사업(1단계, 2단계, 3단계 3년) → 6차산업수익모델사업(2년) → 6차산업 설비지원사업(1년) → 향토산업육성사업(4년) → 6차산업집적화지구

- 지정(1년) → 말산업특구/우수외식업지구(6차산업집적화지구의 특성화 추가사업, 3년): 총14년+3년
- 이 경우, 한 지자체의 특정한 작목반을 중심으로 15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결론적으로, 6차산업집적화지구는 6차산업특화단지, 6차산업특화농공단지 부문에서 특성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앞에서 제안하였음. 이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로 필요한 경우, 말산업특구나 우수외식산업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2.5.3.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간 연계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지역 내에서 동일직군의 이해당사자들을 육성하거나 하나의 기업을 설립하고 육성하는 사업이고, 지역전략식품산업은 지역 간 연계해서 지역 내 동일직군의 이해당사자들이 투자하여 하나의 기업을 설립하고 육성하는 사업임.
- 이러한 두 사업이 연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전략식품산업의 규모 있는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정립하고, 향토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협력기업으로 구성하여 기업 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 지역에 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농업품목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농업품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연계 고리를 형성하기 어려움.
- 따라서, 시장에의 접근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강제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임. 박람회 참가 시 공동으로 규모 있게 참여하여 소비자에 대응하고, 수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저비용·고효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특히, 공동사업단 구성, 공동마케팅, 공동홍보, 공동역

량강화, 공동R&D,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등은 비용을 줄이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개별 사업단구성은 각 사업별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총4명)이 소요되거나 공동사업단 구성은 사무국장 1명, 사무원 4명(총5명)이 소요되어, 인건비 예산은 동일하나 맨파워는 훨씬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기대 가능

2.5.4. 농촌교육농장, 농가맛집 사업의 본 사업화 유도

- 농촌교육농장은 6차산업농장으로 육성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농촌교육농장이 개인사업자라는 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짐.
 - 안성의 서일농원이나 세종시 뒤웅박고을 등은 기본적으로 교육농장과 같은 개념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규모가 큰 6차산업 농장으로 발전
- 농촌교육장은 6차산업마을 육성, 6차산업농장 육성, 6차산업작목반 육성이라는 틀 속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림청의 경우, 밤줍기 체험을 하는 밤생산 농장을 농촌교육농장으로 육성하는데 매우 적합한 품목업종이며, 곳감생산농장도 곳감을 말리지 않는 시기에 넓은 하우스 시설을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 등으로 6차산업으로 접근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 농가맛집은 현재와 같이 마을에 맛집을 세우는 형식으로는 6차산업으로의 발전에서 고전을 면키 어려움. 가능하다면, 로컬푸드 매장 개설시 농가맛집을 지원하여 함께 개설하도록 지원하면, 특색 있는 음식서비스와 로컬푸드매장이 어우러져서 6차산업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5.5.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창업 관련 사업의 체계화

-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조·가공분야 창업을 담당하는 것은 성과 내기 어려운 사업인 것이 사실임. 창업지원의 핵심적인 요체는 전문성·지속성·현장성인데, 농업기술센터는 현장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이를 확보할 수 있지만, 전문성·지속성 부문에서는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고 몇몇 공무원이 전담조직을 꾸려서 수많은 품목의 농민들을 창업 지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임.
- 농업기술센터의 창업지원은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창업 지원이지 예산과 상관없는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상당 수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창업지원은 전문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조직 등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중기청의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6차산업으로 돌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³⁴

2.5.6. 산촌생태마을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활성화

- 산촌생태마을은 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 암암리에 외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 마을의 특징인이 펜션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³⁴ 이에 관련하여 앞부분의 농촌협력단, 6차산업사업단, 6차산업협력단 및 공동가공지원센터 등에서 이미 논의하였음.

- 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체험프로그램 등의 보급을 통해서 농촌 체험휴양마을로의 전환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마을회는 복잡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힘들게 운영하지 않으려는 추세임. 따라서 이러한 마을을 대상으로 6차산업 역량강화 → 휴양·숙박시설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개발 → 소규모 제조·가공 → 농촌체험·휴양마을 신청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전문가로 6차산업 코디네이터가 필요함.
- 일례로 양평의 신론리 체험마을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농촌체험마을이며,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체험학습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이 마을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산촌생태마을과 연계해서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2.5.7. 자본보조를 6차산업 경영체의 자본금으로 출자

- 현행 자본보조를 통해 지원하는 공장건축이나 설비지원은 사실상 정부가 사업자에게 기부채납하는 형식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부담까지도 사실상 정부가 해당 업체에게 기부채납하는 형식이라는 것임.
- 또한 자본보조 지원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현재 자산등록 등에 있어 귀속 방법 등의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특히 마을에 지원하는 1~2억 원 규모의 시설지원은 자산귀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설관리의 책임이 모호하게 됨.
- 6차산업의 자본보조 지원은 법인사업을 구성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방식도 자본금으로 출연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자본금이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 향후 기업성장 과정에서 모태펀드 등의 출연을 받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음.
 - 현재 대부분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은 자본금을 1억으로 등록하

게 되는데, 자본보조로 5억을 지원받을 경우 해당 법인체의 자본금은 6억이 되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을 다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

-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자본보조 집행에 대한 통제의 문제이나, 이는 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현행 방식과 동일하게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사외이사형태로 담당공무원이 이사로 들어가 사업에 대한 관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 현행 건물에 대한 지상권설정 10년, 설비에 대한 지상권설정 5년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진행 가능
- 현재의 자본보조는 지금까지 농민 개인 혹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이 비사업적인 개인이나 단체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6차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1차와 3차를 가교적으로 연결시키는 2차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인 바, 2차 산업육성의 핵심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임. 즉, 기업육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자본보조 제도는 기업육성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쪽짜리 지원사업형태가 될 것임.
- 일본의 사례로는 주식회사 오오야마유메공방(大山夢工房)을 들 수 있음. (주)오오야마유메공방을 설립한 이유는, “농업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농업개혁이 아니라 산업구조를 바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다는 점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함. 이를 위해서는 산업 간의 연계고리를 관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시·군간, 시·도간, 국가간 경계를 초월한 제휴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지역만들기 주식회사 [오오야마유메공방]이 설립되었다”고 전함.
 - (주)오오야마유메공방은 주식회사(제3섹터형)의 설립형태를 가지고, 1997년 4월 1일에 설립

- 자본금은 1억 8,000만 엔인데, 출자단체 및 출자비중은 오이타현 히타시 (구오오야마쵸) 72%, 닛카위스키주식회사 단체 등 10%, 오오야마쵸 내 외의 개인 18%으로 구성
- ㈜오오야마유메공방은, 2011년 매출 6억6천만 엔, 2012년 매출 7억8천만 엔을 달성하고 있음. 이를 기반으로 하여, ㈜오오야마유메공방이 자리하고 있는 오오야마타운(마을) 전체는 2013년에 17억 엔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농가 30% 이상이 1,000만 엔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매출액 기준으로 환산한 연간 방문객 수는 65만 명으로 산출되고 있고, 마을주민들의 추계에 의하면 연간 24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림 5-15. 오오야마유메공방의 사업효과



자료: 오오야마유메공방

부록 1.

설문 조사표 (6차 산업)

「농업 6차 산업화 정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설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농업경제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6차 산업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 간 연계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결과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관련 정책 개발 등에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에 의거 귀하의 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조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메일(lg6678@naver.com)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본 조사와 관련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관리자: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부교수 김성훈

연락처: 042-821-6746, 010-0000-000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사무관 김재형

연락처: 044-201-1589

조사 대상 기관(업체)명: _____

분류 기준	해당 부분에 O표 할 것
정책 시행기관	
관련 업계	
학계 및 연구계	

조사 응답자 성함: _____

조사 응답자 연락처: _____

□ 설문지 작성안내

- 「농업 6차 산업화 정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는 계층화분석법(AHP)을 적용하여 상대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의 중요성 정도 등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 AHP(계층화 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는 정책시행 타당성과 중요도 등을 판별하기 위해 쓰이는 분석기법으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설문함으로서 정책과정에 우선순위 및 가중치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본 설문에서 사용되는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평가척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척도	1	3	5	7	9
용어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설명	동등하게 중요 (equal)	약간 더 중요 (weak)	더욱 더 중요 (strong)	대단히 더 중요 (very strong)	절대적으로 중요 (absolute)

주: 2, 4, 6, 8은 근접해 있는 두개의 척도들 사이의 중간정도의 중요도를 나타냄

<예시>

예를 들어 「자동차의 구입」이라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다음의 두 가지 평가요소 ‘디자인’과 ‘승차감’을 비교할 때, ‘승차감’이 ‘디자인’에 비해 「자동차의 구입」이라는 목표에 대단히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척도 ‘7’ 란에 V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동등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디자인																	V		승차감

주: 2, 4, 6, 8의 척도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접한 가장 가까운 숫자들의 중간에 V 표시하면 됩니다. 예컨대 ‘승차감’이 ‘디자인’ 보다 비해 대단히 더 중요와 절대적으로 중요한 중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오른쪽 척도 7과 척도 9 사이의 작은 괄호 속에 V 표시하면 됩니다.

1. 다음은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질문을 자세히 보시고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대상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세부 평가항목별로 좌측에 기재된 평가항목이 우측에 기재된 평가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해당하는 숫자에 V표 하십시오.

[표] 사업추진 대상의 우선순위 세부 평가 항목

- | |
|--------------------------------|
| a. 2차 가공산업을 우선 육성 후 3차 산업으로 확산 |
| b. 3차 서비스업을 우선 육성 후 2차 산업으로 확산 |
| c. 시간이 소요되나 1·2·3차 산업을 고르게 육성 |

세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동등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세부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차 가공산업 우선 육성																		3차 서비스업 우선 육성
2차 가공산업 우선 육성																		1·2·3차 산업 고르게 육성
3차 서비스업 우선 육성																		1·2·3차 산업 고르게 육성

2. 다음은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에 있어 2차, 3차, 복합 산업별로 우선 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사업별로 필요한 정도를 해당 칸에 V표 하십시오.

사업 주체	사업명	매 우 필 요	필 요	보 통	불 필 요	매 우 불 필 요
2차	1-1) 식품·외식 종합자금사업					
	1-2)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1-3)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1-4) 모태 펀드					
	1-5) 일반 농산촌 개발사업					
	2-1)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시범지원					
	2-2)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시범사업					
3차	1-6)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1-8)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1-9)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사업					
	1-10)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단구성 지원사업					
	3-2) 치유의 숲 조성사업					
	3-3)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복합	1-11)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1-12) 말산업 육성사업					
	1-13)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1-14)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1-15)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2-3) 농촌교육농장					
	2-4)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2-5) 지역농업특성화사업					
2-6)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3. 다음은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에 있어 시행 주체의 적절성을 모색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질문을 자세히 보시고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시행 주체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세부 평가항목별로 좌측에 기재된 평가항목이 우측에 기재된 평가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해당하는 숫자에 V표 하십시오.

[표] 사업시행주체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

- | |
|---|
| a. 현행 방식 유지(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가 개별 사업을 시행하거나 농식품부의 사업 기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 |
| b. 농식품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 기획하여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가 사업 시행만 담당 |
| c. 농식품부는 감독만하고, 농진청, 산림청이 사업을 기획하여 지자체는 사업 시행만 담당 |
| d.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은 감독만 하고, 지자체가 사업 기획 및 시행을 주도 |

세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동등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세부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a. 현행 방식 유지																			b. 농식품부 전체 사업 총괄
a. 현행 방식 유지																			c. 농식품부 감독
a. 현행 방식 유지																			d.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감독
b. 농식품부 전체 사업 총괄																			c. 농식품부 감독
b. 농식품부 전체 사업 총괄																			d.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감독
c. 농식품부 감독																			d.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감독

4. 다음은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질문을 자세히 보시고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방향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세부 평가항목별로 좌측에 기재된 평가항목이 우측에 기재된 평가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해당하는 숫자에 V표 하십시오.

[표] 정책 추진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

- 대상 업체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 vs. 가급적 많은 업체들에게 고르게 지원
- 1년 이하의 단기 지원 사업 중심 vs. 2년 이상의 다년도 지원 사업 중심
- 6차 산업화 상품의 소비 확대 중심 vs. 6차 산업화 생산 부문의 경쟁력 제고 중심
- 현장 애로 해결 중심 vs. R&D(연구·개발) 중심
- 보조 사업 중심 vs. 융자 사업 중심
- 자부담 비중 축소 vs. 자부담 비중 확대

세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동등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세부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대상업체 선택 집중지원																		고르게 많은 업체 지원

세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동등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세부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년 이하 단기 지원 중심																		2년 이상 다년도 지원 중심

세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9)	(8)	매 우 중 요 (7)	(6)	중 요 (5)	(4)	약 간 중 요 (3)	(2)	동 등 (1)	(2)	약 간 중 요 (3)	(4)	중 요 (5)	(6)	매 우 중 요 (7)	(8)	절 대 중 요 (9)	세부 평가항목
상품의 소비확대 중심																		생산부문 경쟁력제 고 중심
세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9)	(8)	매 우 중 요 (7)	(6)	중 요 (5)	(4)	약 간 중 요 (3)	(2)	동 등 (1)	(2)	약 간 중 요 (3)	(4)	중 요 (5)	(6)	매 우 중 요 (7)	(8)	절 대 중 요 (9)	세부 평가항목
현 장 애 로 해 결 중 심																		연구개발 중심
세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9)	(8)	매 우 중 요 (7)	(6)	중 요 (5)	(4)	약 간 중 요 (3)	(2)	동 등 (1)	(2)	약 간 중 요 (3)	(4)	중 요 (5)	(6)	매 우 중 요 (7)	(8)	절 대 중 요 (9)	세부 평가항목
보조사업 중심																		융자사업 중심
세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9)	(8)	매 우 중 요 (7)	(6)	중 요 (5)	(4)	약 간 중 요 (3)	(2)	동 등 (1)	(2)	약 간 중 요 (3)	(4)	중 요 (5)	(6)	매 우 중 요 (7)	(8)	절 대 중 요 (9)	세부 평가항목
자부담 비중 축소																		자부담 비중 확대

5. 다음은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사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질문을 자세히 보시고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방향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세부 평가항목별로 좌측에 기재된 평가항목이 우측에 기재된 평가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해당하는 숫자에 V 표 하십시오.

[표] 구조조정 방향의 세부 평가 항목

a. 기존 23개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
b. 유사 사업별로 묶어서 4 ~ 6개 중형 사업으로 통합하여 진행
c. 보다 크게 묶어서 1 ~ 3개 대형 사업으로 통합하여 진행

세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동등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세부 평가항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a. 기존 23개 사업 유지																		b. 4~6개 중형사업으로 통합
a. 기존 23개 사업 유지																		c. 1~3개 대형사업으로 통합
b. 4~6개 중형사업으로 통합																		c. 1~3개 대형사업으로 통합

[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요약

사업유형(=내역사업명)		사업내용
① 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전(前)단계에 필요한 공동생산·보관·유통시설지원으로 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및 지역경제활성화 - 생산·유통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 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및 유통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표시 등록 등 지원
② 농수산물 제조·가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지원으로 농어촌 지역 제조·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 - 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 네트워크구축, 지리적표시, 상품개발 및 마케팅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③ 농수산물 체험·전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된 농수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 원 미만)체험·전시시설, 공동판매장 시설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군 관내에 설치하는 경우 지원) * 공동 판매장은 농수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참가 등 홍보·전시 및 컨설팅, 상품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지원 등 농수산물 판매제고 기대
④ 농어촌 체험·관광지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공원, 관광개발, 복합남시공원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지역단위 체험·휴양 교류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농어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교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농어촌에 농어촌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 사화향토 자원을 토대로 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어촌으로 유도, 도농교류 및 지역 경제활성화
	어촌·어항 관광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어항법 제4조에 의거마련한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된 계획으로 어촌·어항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복합남시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해양 레저활동과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⑤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업 집적화 및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주민 소득 및 고용기회증대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에 인구유입은 물론 산업간,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기존 노후화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 긴 시간동안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설문 조사표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농업 6차 산업화 정책 발전」을 위한 설문 조사 (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부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농업경제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6차 산업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 간 연계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결과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관련 정책 개발 등에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에 의거 귀 업체의 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조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 본 조사와 관련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관리자: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부교수 김성훈

연락처: 042-821-6746 이메일: sounghunkim@hotmail.com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사무관 김재형

연락처: 044-201-1589

조사 대상 기본현황

분류 기준	해당 부분에 O표
성별	남성 () 여성()
연령	30대() 40대() 50대()
직급	사무관() 주사() 주무관() 기타()
근무지역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소속기관	시·도 소속() 시·군 소속() 기타()

<농촌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향후 육성방향은 다음 중 어떤 유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원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산업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주체는 다음 중 어떤 유형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개별 비즈니스주체육성 () ② 마을공동사업체육성 ()
 ③ 공동조직화추진 ()

3.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지역의 특성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차 생산물(농림축산물 등)을 확보하기가 수월한 지역 ()
 ② 2차 가공조직이 많은 지역 ()
 ③ 3차 관광지 및 전통상가지역 ()
 ④ 기타 (구체적으로 :)

4.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향후 고려하고 있는 주요 자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농특산물 () ② 등외품 및 부산물 활용 ()
 ③ 문화콘텐츠 () ④ 기타 (구체적으로 :)

5.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 예산투입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단계는 다음 중 어느 단계입니까?

- ①도입단계() ②기반조성단계() ③활성화단계() ④확산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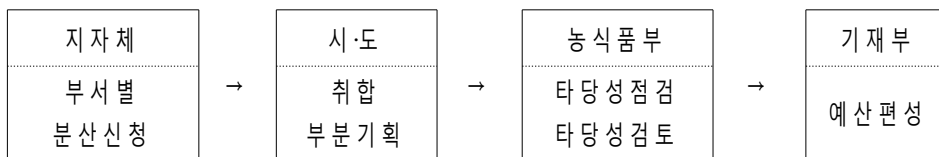
▶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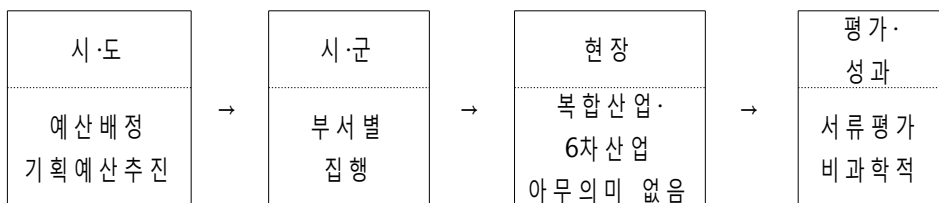
사업단 중심 6차 산업화 장기사업의 구조 조정

1. 기존 구조

<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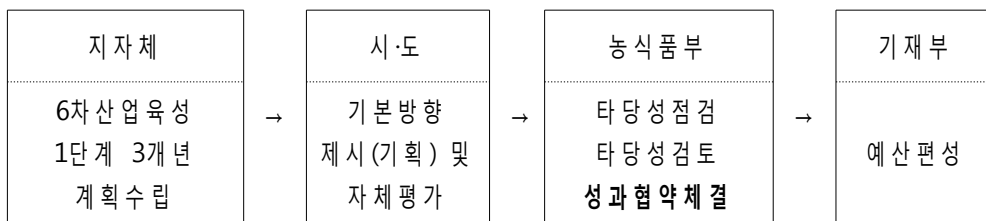


<집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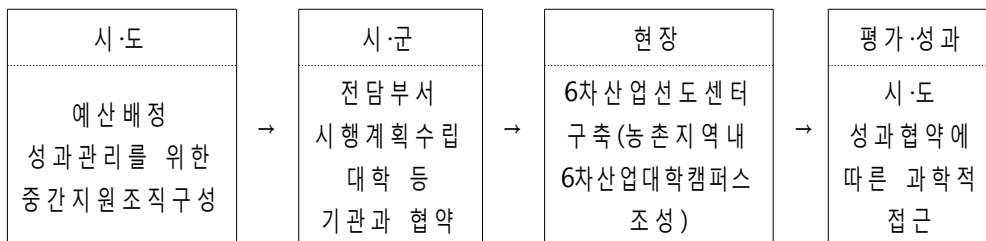


2.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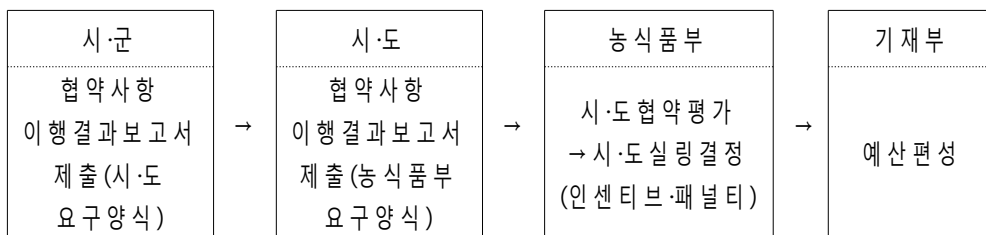
<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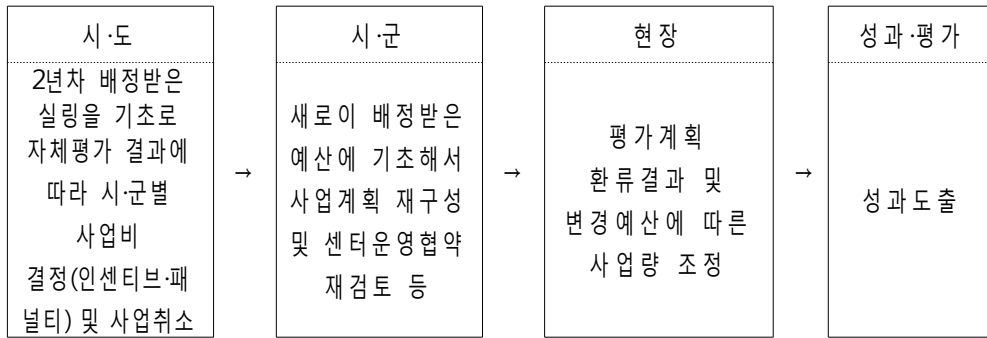
<1단계 1년차 집행>



<1단계 2년차 예산신청>



<1단계 2년차 예산집행>



- 3년 1단계 종료 후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패널티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속해서 받은 시·군은 6차산업선도센터를 2개소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형성되는 반면, 패널티를 지속적으로 받은 시·군은 2단계 진입을 하지 못하고 사업단을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임.
- 사업단은 총 3단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1단계에서 자립하게 되면, 신규사업단을 중심으로 새로이 1단계를 시작하고, 1단계에서 성과가 우수하나 자립적 기반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2단계를 연장하고, 3단계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자립화가 이루어져 더 이상 예산지원 없이도 6차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품목 혹은 해당 6차산업선도사업단은 자립사업단으로 유지하고, 해당 시·군은 새로이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규로 1단계를 또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센티브를 동반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함.

3. 사업관리체계

○ 시·군

- 품목별·기능별 6차산업사업단 구성

<2013년도 전라북도 사업예산 분석>		
- 생산유통분야	국비 216억	14개 시·군 평균 15.4억
- 제조·가공분야	국비 100억	14개 시·군 평균 13.4억
- 체험·전시	국비 7.5억	14개 시·군 평균 0.5억
<시·군에서 사업단 구성시>		14개 시·군 평균 국비 30억 규모

- 사업단의 전문성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팀을 구성하여 위탁운영(농촌협력단 : 산학협력단의 농촌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 및 중기청의 경우,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 데 대학의 자원을 지역 기업으로 돌리기 위해 산학협력단을 구성하고, 산학협력단 내에 창업보육센터, 지역혁신센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산학협력단은 법정 기구이며, 대학 내에 본부를 두고 있음 - 농촌협력단은 산학협력단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농촌협력단의 위치는 대학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협약을 맺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해당 지자체 내에 두며, 공동가공지원센터 혹은 생산자직판장과 같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설비와 창업설비 등을 직접 관리·운영·증설하고, 6차산업 FD를 양성하거나 네트워크화 하여 관리 운영하는 등 현장조직으로 구성함. 나아가 이곳에는 농촌협력단 관련 교수 및 연구원들이 지자체와의 협약한 숫자 만큼 상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성하고 선정함 - 농촌협력단은 농촌의 맨파워를 보강하여 사업관리, 기업육성, 마을육성, 네트워크형성, 마케팅지원 등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학의 유용한 자원이 농촌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표를 둬 - 사업단 위탁운영에 대한 대학기여금은 시·군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 시장·군수는 시장·도지사와 성과목표협약제를 체결한 후, 사업단의 관리하에 성과를 도출해야 함

○ 시·도

- 6차산업팀 등 기획·관리부서 구성을 통해 사업 관리
- 시·도의 성과목표를 정리하여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친 후, 시도지사와 농식품부장관 간에 성과목표협약제를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에 대응하고, 나아가 인센티브·패널티 등을 통해 실령제의 기본 취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시·도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과목표협약제가 추진되면, 시·도에서는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할 것임
- 시·도와 시·군의 성과목표협약은 자연스럽게 자체적인 사업계획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며,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과학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사업의 승인여부를 시·도가 책임지게 될 것임
-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은 실제 사업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추진될 것임
- 특히 중요한 것은 시·군의 인센티브·패널티가 시·도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군 사업단의 긴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농림축산식품부

- 규모있는 사업단이 현장에서 작동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간지원조직이 반드시 필요하게 됨
- 특히 성과목표협약제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과학적인 검토 및 협의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현장행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6차산업의 붐을 조성하고, 마케팅 기반을 넓히는 등의 일들을 추진할 조직은 필수적임

부록 4.

공동가공 지원센터의 모델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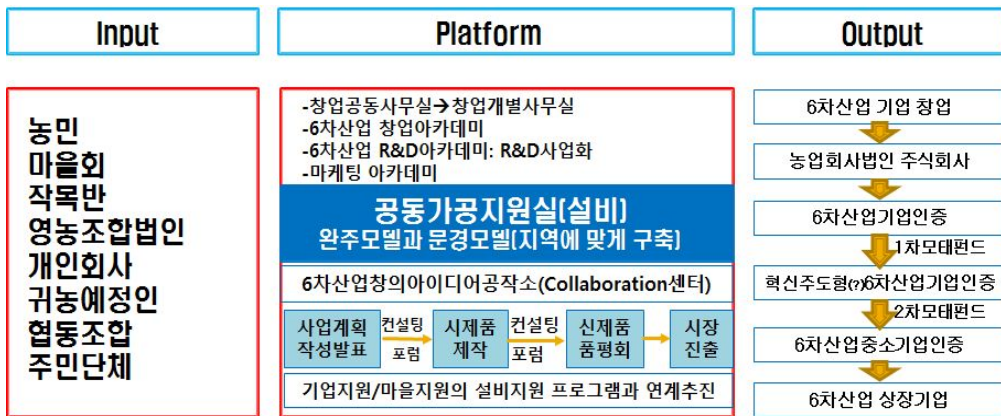
1. 공동가공 지원센터 모델

- 공동가공 지원센터는 6차산업을 추진할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자 지역의 조직임. 공동가공 지원센터의 모델은 문경모델, 완주모델, 농진청 모델로 구분할 수 있음.
- 문경모델은 오미자라는 특수한 작물과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표고와 사과를 중심으로 가공센터를 운영하여 성공적인 6차산업 기반을 형성한 모델임. 그러나 이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6년간 국비 30억씩 총 180억 원에 지방비가 가세되면서 공동가공센터에서 창업한 기업들이 시설비를 지원받고 창업할 수 있었다는 데 있음. 결과적으로 그러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문경모델은 반쪽짜리 공동가공 지원센터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고 있음.
- 농진청모델은 국비 5억에 지방비 5억으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바, 시설을 갖추기에도 버거운 예산이고, 시설이 갖추어진 이후에도 이 시설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시설비 지원 등과 같은 메리트 결여 혹은 미래에 대한 비전의 결여로 동력을 상실하며,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바, “해답찾기식” 운영이 아닌 “정답제시하기식” 운영으로 한계

를 보이고 있음.

- 완주모델은 지자체 내에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지역의 소규모 가공품을 공급하는 기지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또한 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마을조직, 작목반, 연구회,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화하여 테마별로 설비를 운영함으로써 활성화된 사례라 할 수 있음.
- 범용적으로 가능한 공동가공 지원센터의 모델은 아래의 도식과 같음

그림 1. 6차산업육성형 공동가공 지원센터의 모델



2. 주요 기능

- 공동가공 지원센터는 사업계획 수립(역량강화)에서부터 창업 및 창업 이후 시장개척 그리고 시장을 확보한 이후 기업성장까지 지원할 수 있는 one stop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플랫폼이 구축되고 나면, 지금까지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예산으로 지자체에 쪼개서 산발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한 곳에서 관리·운영·지원하면서 한편으로 역량강화, 연구개발, 포장디자인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제품을 제작하도록 지원하며, 창업농민 및 지역민이 직접 시제품을 마케팅하고, 여기서 확보된 수익을 검토하여 독립적인 설비지원 가능, 즉 자립화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설비를 지원하고, 기업성장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공공가공 지원센터는 6차산업 수요자 발굴, 6차산업 창업 및 창업 기업육성지원, 6차산업 기업생태계 구축 운영 등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센터에는 6차산업 전문가(일본: 6차산업 플래너, 과거신활력사업 6차산업 FD: family doctor) 풀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대학과 협약하여 00대학 00시·군 6차산업협력단을 구성하고, 대학의 본교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농촌현장에 시설과 센터를 설치하고 대학의 교수 및 연구원 등이 상주하면서 운영하는 것을 필수적인 옵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은 필요에 따라 6차산업 개방학과 혹은 시민대학을 지자체 현장에 소재한 공동가공 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기업 등을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6차산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함.

부록 5.

6차 산업형 농공단지 리모델링

-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존 식품가공 기업의 6차 산업 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의 전환임.
 - 농공단지 내에 입주기업 중 HACCP인증을 받고,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공장을 대상으로 6차 산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 충남도의 경우, 두레기업 중 우량기업으로 기업을 지원하나, 모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6차 산업으로의 추진동력은 그다지 높다고 평가할 수 없는 상황

- 현재 식품가공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한다는 조건에 따라 공장견학로+교육장+체험장+판매장 등을 조정하도록 지원하고, 이 시설을 활용하여 1단계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식문화안전교육장으로 운영하고, 2단계는 대학생의 실습장(인턴제 등)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가족단위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식문화안전교육장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함.
 - 사례 : “하카다 식과 문화의 박물관”으로 명란젓 공장의 견학로를 개설하고, 이를 식과 문화의 박물관으로 명명하였음, 공장견학(박물관견학) 이후 명란젓 만들기체험, 명란젓 도시락먹기, 판매장을 거쳐 귀가하는 프로그램

그림 1. 하카다 식과 문화의 박물관



부록 6.

6차 산업형 생산자 직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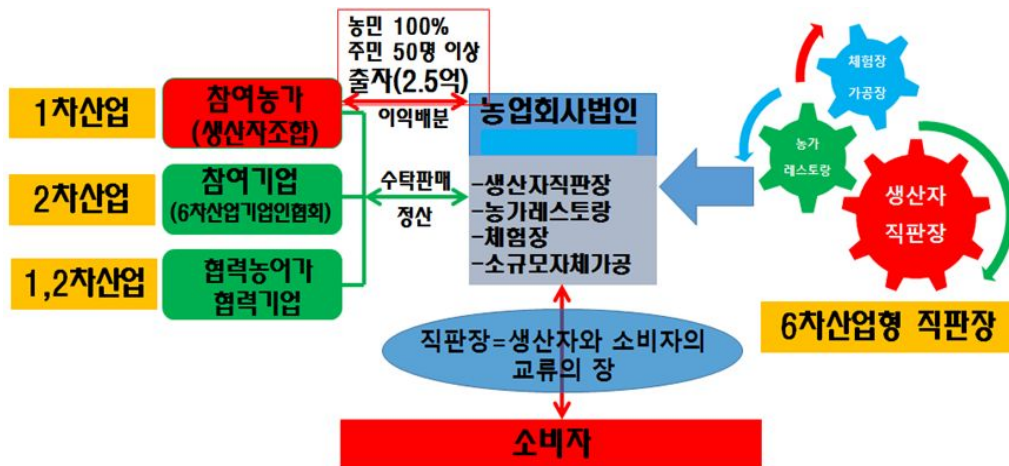
- 현재 충남에서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1개소당 12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4년 1개소 선정·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2개소를 선정·지원할 계획임.
- 현재 유통부문에서 지원하여 설립 붐이 일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과는 차이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주로 농산물이 중심이 되다보니, 전국 60여개의 로컬푸드 직매장 중 수익성이 있는 매장은 수도권 2~3곳(김포, 여주, 안성)과 완주매장에 불과함. 완주매장은 최근 들어 매장-가공(공동가공지원센터-농민가공공장)-농가레스토랑으로 구성되면서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6차산업 생산자 직판장은 처음부터 6차산업 가공기업의 가공품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농민의 조직화를 통해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차이임.
- 초록마을 등 유기농매장도 부분적으로 고전하는 이유는 무농약, 유기농 등 친환경제품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 가공품이 상대적으로 적어 매장에 구색을 맞출 수 없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세대 매니아층의 소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임.
- 일본의 미찌노에끼가 흑자로 전환하는 터닝포인트는 가공품 70%, 농산물

30%로 매장을 전환하여 구색을 맞추면서부터라고 함(규슈 히타시 코노하 나가르텐 미찌노에끼 JA조합장 인터뷰 중). 또한 유통기간이 짧거나 지역의 특산물을 갖고 가공하여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가공품은 직접 가공해서 판매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고 함.

- 나아가 매장의 농산물 중 그날 팔고 남은 농산물은 농가레스토랑에서 구매하여 익일의 식재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야채뷔페식당”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미찌노에끼 전체의 수익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함. 이 레스토랑의 전략은 안전먹거리(농민으로 구성된 셰프)+건강식(지역산 야채 뷔페)+모임공간(지나가는 뜨내기 손님대상이 아니라, 지역민·단체관광객 대상)에 있음.

-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본 농산물직매소 1조 엔대 산업으로 약진
 - 2005년 농림업센서스. 직판소 수는 전국 13,538개소.
 - 2010년 농림업센서스. 직판소 수는 전국 16,824개소.
 - 마찌무라 교류기구 연구결과 직판소 연간 매출고는 1조 엔을 넘을 전망

그림 1. 충남 6차산업생산자직판장 모델



참고 문헌

- 권오성 외. 2011. 「농어업 2, 3차 및 6차 산업화 시설 실태조사」. 충남발전연구원
- 김성훈 외. 2013. 충남 농업6차 산업화 정책의 현황 및 발전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김용렬. 2011. “농상공연대(6차 산업화)의 개념 및 추진 방향.” 「충남농어업 6차산업화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 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 김용렬 외. 2011. 「일본 농산어촌 6차 산업화 제도 안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외. 2013. “농업의 6차 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 「KREI 농정포커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송미령, 권인혜. 2011.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형원. 2010. 「제조업성장의 묘수: 서비스화」. SERI. 이동필 외. 2001. 「식료의 안정적 공급 및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학열. 2011. “일본의 6차 산업화 및 농상공 연대 정책 동향.” 「충남농어업 6차산업화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 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 유학열, 이영옥. 2014.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6차 산업화.” 「농업전망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원진, 전찬익. 2009.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NHERI 리포트」. 농협경제연구소.
- 임영모 외. 2004. 「국내산업의 재도약 방안 - 0.5차 더하기」. SERI. 장현동 외. 2011. 「농업과 2·3차 산업융합 경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 정명운. 2009.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최지현 외. 2007.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어촌공사. 2012.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모델개발 연구용역」.
- Woods, M. 2005. 「Rural Geography」. SAGE Publications.
-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財) 都市農山漁村交流活性化機構. 2010. 「農産物直賣所經營改善マニュアル」.
- 室屋 有宏. 2014. 地域からの六次産業化～つながりが創る食と農の地域保障. 創森社.
- 後久博. 2013. 6次産業化實踐ハンドブック—成功の秘訣はプロデュース力—. ぎょうせい.
- 關 滿博. 2014. 6次産業化と中山間地域: 日本の未來を先取る高知地域産業の挑戦. 新評論.

- 後久博. 2011. 賣れる商品はこうして創る-6次産業化・農商工等連携というビジネスモデル. ぎょうせい.
- 経済法令研究会. 2011. 6次産業化とJAの新たな役割—農業の未来のために. 経済法令研究会.
- 齋藤修. 2012. 地域再生とフードシステム—6次産業、直賣所、チェーン構築による革新. 農林統計出版.
- イカロス偏執局. 2013. 「成功する6次化、失敗する6次化」, 【農業ビジネスマガジン】vol.3 (“強い農業”を実現するためのビジュアル情報誌). イカロス出版.
- 高橋信正. 2013. 「農」の付加価値を高める六次産業化の實踐. 筑波書房.
- 曾根原/久司. 2012. 農村起業家になる—地域資源を宝に変える6つの鐵則. 日本經濟新聞出版社.
- 岡本雅美, 西俊一, 井上 眞, 山下英俊. 2014. 自立と連携の農村再生論. 東京大學出版會.
- 鳥巢研二. 2010. よくわかる 加工特産品のつくり方、賣り方. 出版文化社.